

내용

제1장 교도소.....	5
§ 1-01 비차별적 대우.....	5
§ 1-02 보호 대상자 의 분류.....	5
§ 1-03 개인 위생.....	6
§ 1-04 과밀.....	8
§ 1-05 잠금.....	8
§ 1-06 레크리에이션.....	9
§ 1-07 종교.....	9
§ 1-08 법원 및 법률 서비스 이용.....	10
§ 1-09 방문.....	11
§ 1-10 전화 통화.....	13
§ 1-11 통신.....	14
§ 1-12 패키지.....	15
§ 1-13 간행물.....	16
§ 1-14 미디어 액세스.....	16
§ 1-15 차이.....	16
§ 1-16 강화된 감독 주택.....	17
§ 1-17 징벌적 분리 사용에 대한 제한.....	19
2장: 정신 건강 최소 기준.....	22
§ 2-01 서비스 요청.....	22
§ 2-02 식별 및 탐지.....	22
§ 2-03 진단 및 의뢰.....	22
§ 2-04 치료.....	23
§ 2-05 약물.....	24
§ 2-06 제한 및 격리.....	24
§ 2-07 기밀성.....	25
§ 2-08 조정.....	25
§ 2-09 차이.....	25
3장: 의료 최소 기준.....	28
§ 3-01 서비스 목표 및 목적.....	28
§ 3-02 의료 서비스 이용.....	28
§ 3-03 훈련 및 평생 교육.....	30
§ 3-04 심사.....	31
§ 3-05 제약 서비스.....	32
§ 3-06 치료.....	32
§ 3-07 기록.....	36
§ 3-08 개인 정보 및 기밀 유지.....	37
§ 3-09 품질 보증.....	38
§ 3-10 수감자 사망.....	39
§ 3-11 재해 계획.....	39
§ 3-12 수감자의 족쇄.....	39

§ 3-13 차이.....	40
§ 3-14 발효일.....	41
§ 3-15 시행 날짜.....	41
§ 3-16 부상 대응.....	41
제4장 [시정위원회에 제출된 규칙제정 청원의 심의 절차].....	43
§ 4-01 정의.....	43
§ 4-02 범위.....	43
§ 4-03 청원 제출 절차	43
§ 4-04 청원 응답 절차	43
제5장 교도소 내 성희롱 및 성희롱 근절	44
하위 챕터 A: 정의	44
§ 5-01 일반 정의.....	44
§ 5-02 성적 학대와 관련된 정의.....	44
B장: 예방 계획	45
§ 5-03 성적 학대 및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PREA 코디네이터.....	45
§ 5-04 감독 및 모니터링.....	45
§ 5-05 청소년 수감자.....	46
§ 5-07 장애가 있는 수감자 및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수감자.....	46
§ 5-08 고용 및 승진 결정.....	46
§ 5-09 시설 및 기술 업그레이드.....	47
하위 챕터 C: 대응 계획.....	47
§ 5-11 조사를 위한 혐의 회부 보장 정책.....	47
하위 장 D: 훈련 및 교육.....	47
§ 5-13 자원 봉사 및 계약자 교육.....	48
§ 5-14 수감자 교육.....	48
§ 5-15 전문 교육: 조사.....	48
§ 5-16 전문 교육: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49
하위 챕터 E: 성희롱 및 학대의 위험에 대한 선별	49
§ 5-17 피해자 및 학대 위험에 대한 심사.....	49
§ 5-18 스크리닝 정보의 사용.....	49
§ 5-19 보호 보호.....	50
서브챕터 F: 보고.....	50
§ 5-21 외부 기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감자의 액세스.....	51
§ 5-22 제3자 보고	51
Subchapter G: 재소자 보고에 따른 공식 대응	51
§ 5-23 직원 및 기관 보고 의무.....	51
§ 5-24 기관 보호 의무.....	51
§ 5-25 기타 격리 시설에 보고.....	51
§ 5-26 직원 최초 대응 의무.....	51
§ 5-27 조정된 응답.....	52
§ 5-28 보복에 대한 기관 보호.....	52
§ 5-29 주장 후 보호 양육권.....	52
서브챕터 H: 조사	52
§ 5-31 행정 조사에 대한 증거 기준.....	53

§ 5-32 재소자에 대한 보고.....	53
제1장: 규율.....	53
§ 5-34 계약자 및 자원 봉사자에 대한 시정 조치.....	54
§ 5-35 재소자에 대한 징계 제재.....	54
Subchapter J: 의료 및 정신 치료.....	54
§ 5-36 의료 및 정신 건강 검진; 성적 학대의 역사.....	54
§ 5-37 응급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	54
§ 5-38 성적 학대 피해자를 위한 지속적인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54
하위 챕터 K: 데이터 수집 및 검토 감사.....	54
§ 5-39 성적 학대 사건 검토.....	54
§ 5-40 데이터 수집 및 검토.....	55
§ 5-41 감사.....	56
하위 챕터 L: 분산.....	56
제6장 교도소 내 주거 제한.....	57
하위 챕터 A: 핵심 원칙.....	57
하위 장 B: 정의.....	57
§ 6-02 일반 정의.....	57
§ 6-03 주택 제한 및 관련 용어의 정의.....	57
하위 챕터 C: 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배치 대응.....	58
§ 6-04 청문회 전 구금.*.....	58
§ 6-05 단계적 축소를 위한 감금.*.....	58
§ 6-06 비상 잠금.*.....	59
하위 챕터 D: 징벌적 분리 사용 금지.....	60
하위 챕터 E: 위험 관리 및 책임 시스템(RMAS).....	61
§ 6-08 목적.....	61
§ 6-09 제외.....	61
§ 6-10 배치 기준.*.....	61
§ 6-11 사례 관리.....	62
§ 6-12 개별 행동 지원 계획.....	62
§ 6-13 진행.....	62
§ 6-14 개별 행동 지원 계획의 정기 검토.....	62
§ 6-15 확장.*.....	63
§ 6-16 필수 셀 외부 시간.....	63
§ 6-17 기타 조건.....	63
§ 6-18 인력 충원.*.....	64
§ 6-19 교육.*.....	64
§ 6-20 프로그래밍.*.....	64
§ 6-21 의료 서비스 이용.*.....	65
§ 6-22 벌금.....	66
§ 6-23 징계 시스템 계획.*.....	66
§ 6-24 적법 절차 및 절차적 정의.*.....	66
§ 6-25 RMAS 데이터 수집 및 검토.*.....	68
§ 6-26 전환.*.....	69
하위 챕터 F: RMAS에서 퇴출.....	70

Subchapter G: 구속과 견치..... 71

§ 6-29 송곳니..... 73

하위 챕터 H: 분산..... 73

제1장 교도소

§ 1-01 비차별적 대우.

(a) **정책.** 구금된 사람은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취향, 성별, 장애, 연령 또는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구금된 사람"이라는 용어는 뉴욕시 교정국("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감자"와 "수감자"는 모두 이 제목 전체에서 "구금된 사람"을 의미하며 위원회는 "수감자"와 "죄수"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해 규칙을 공포할 때 사람을 전달하는 언어로 현대화할 것입니다. "구금자"는 형사 고발의 처리를 기다리는 구금자를 의미한다. "선고된 수감자"는 부서에서 최대 1년의 형을 선고받는 구금자를 의미합니다.

(b) **평등한 보호.**

(1) 피구금자는 노동 및 주거 배정, 분류 및 징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결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2) 피구금자는 교육, 종교, 직업, 레크리에이션 또는 임시 석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고려될 때 평등한 보호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3) 각 시설은 흑인 및 히스패닉 수감자를 포함하여 수감자 인구에서 상당한 대표성을 갖는 인종 및 민족 그룹에 적합한 프로그램, 문화 활동 및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이 섹션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부서가 특정 프로그램 또는 기회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c) **히스패닉 수감자와 직원.**

(1) 각 시설에는 히스패닉 수감자들이 법률 도서관 이용 및 가석방 신청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설 프로그램 및 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스페인어에 능통한 충분한 수의 직원과 자원 봉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2) 각 주택 단위의 이중 언어 수감자는 해당 단위 및 법률 도서관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수감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3) 오리엔테이션, 법률 연구, 시설 프로그램, 의료 절차, 최소 기준 및 징계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정 요원에서 수용자에게 이르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 소통은 스페인어와 영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교도소 직원이 뉴욕시 수감자들과 정기적으로 관련된 외부 개인 또는 조직으로 보내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통신은 스페인어와 영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피구금자는 스페인어로 인쇄된 간행물 및 신문을 읽고 스페인어로 방송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들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시설 도서관에는 스페인어 책과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d) **다른 언어.**

(1) 피구금자는 우편,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다른 피구금자 및 시설 외부의 사람과 모든 언어로 의사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언어로 작성된 자료를 읽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영어권 수용자를 위한 번역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3) 오리엔테이션 절차, 의료 서비스 절차, 시설 규칙 및 징계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설 직원의 모든 서면 및 구두 의사 소통을 비영어권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가 채택되어야 합니다.

(수정된 시 기록 2019년 7월 22일, 발효일 2019년 8월 21일)

§ 1-02 보호 대상자 의 분류.

(a) **정책.** 이 섹션의 요구 사항에 따라 부서는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분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b) **카테고리.**

(1)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이나 심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수용되어야 합니다.

(i) 40 RCNY § 6-03 (b)(16)에 정의된 RMAS 주택 ;

(ii) 40 RCNY § 6-03 (b)(17) 에 정의된 특수 의료 주택 ;

(iii) 40 RCNY § 6-03 (b)(18) 에 정의된 전문 정신 건강 주택 ;

(iv) 임산부 주택 및 부서 보육원; 그리고

(v)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사람들을 위해 지정된 주택 지역(포함).

(2) 수형자가 이 호 (1)항의 (i)부터 (v)에 열거된 주거 지역에 재판 또는 심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수용되어 있는 경우, 수형자는 재판 또는 심문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취급된다. 주거 이외의 모든 목적.

(3) 단락 (1)에 명시된 범주 내에서, 그리고 40 RCNY § 1-02 (b)(4)에 명시된 예외에 따라 다음 그룹은 별도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i) 22세 이상의 성인 남성;

(ii) 18세에서 21세까지의 남성 청년 성인;

(iii) 22세 이상의 여성 성인;

(iv)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젊은 여성 성인.

(4)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성인과 별도로 분리하여 수용해야 합니다.

(i) 40 RCNY § 6-03 (b)(17) 에 정의된 전문 의료 주택 단위 ;

(ii) 40 RCNY § 6-03 (b)(18) 에 정의된 전문 정신 건강 주택 ;

(iii) 임산부 주택 및 부서 보육원.

(c) **18세에서 21세까지의 수감자.**

(1) 18세에서 21세 사이의 구금된 사람들을 위한 주택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데이터 수집 및 검토.*

(i) 부서는 18세 및 19-21세를 수용하는 주택 단위 및 시설을 보여주는 월별 공공 인구 조사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인구 조사는 각 유닛에 몇 명의 젊은 성인이 있는 지, 각 유닛의 주택 범주(예: 일반 인구, 보호 양육, 전문 의료, 전문 정신 건강, 임산부, 보육원 등) 및 해당 유닛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성인 전용 유닛 또는 혼합 주택 유닛.

(ii) 부서는 각 시설이 청소년 전용 주택으로 운영을 시작한 날짜와 각 시설이 운영을 중단한 날짜를 포함하여 각 시설에서 청소년 전용 주택으로 운영되는 모든 시설의 위치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청소년 전용 유닛(해당되는 경우).

(iii) 부서는 수용소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 및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계획(즉, 청년 성인 계획)에 대한 월별 공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월간 보고서에는 보고 월의 1일 기준으로 다음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성별, 양육권 상태(구금자, 수형), M으로 분류된 총 청년 수와 총 청년 인구 및 DOC 중 범주별 청년 비율 전체 인구;

(B) 시설 및 청년 전용 대 복합 주택 단위별로 세분화된 총 청년 수 및 구금 중인 총 청년 인구 중 각 범주의 청년 인구 비율

(C) 청년 성인 전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성인의 총 수 및 분류 수준 및 양육 상태에 따라 분류됨.

(D) 분류 수준 및 양육 상태에 따라 세분화된 복합 주택 단위의 청년 성인 수;

(E) 의료 및 정신 건강 주택 단위에 있는 청년 성인의 총 수 및 단위 유형(예: CAPS, PACE, Detox 및 Mental Observation)으로 분류됨.

(F) 제한된 주택 단위에 거주하는 청년 성인의 총 수 및 주택 유형 및 수준에 따라 분류됨.

(G) 보고 월의 시설별 활성 청년 전용 주택 수

(H) 부서에서 제공하는 젊은 성인 인구와 협력하는 데 중점을 둔 직원 교육 목록 및 설명(예: 안전 위기 관리, 직접 감독)

(I) 제공되는 각 교육에 대해, 청년 성인과 함께 일하는 직원의 총 수와 비율(부서 전체) 및 시설 및 받은 청년 교육 상태(자격을 갖춘, 교육을 받았지만 만료됨,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J) 외부 제공자가 제공하는 부서 주도 프로그래밍 및 프로그램을 명시한 시설, 주택 유형(청소년 전용, 혼성) 및 제공자별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목록 및 설명;

(K) 개별 행동 지원 계획에 따라 구금 중인 젊은 성인의 수와 비율; 그리고

(L) 부서 또는 위원회가 청년 성인 계획의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정보.

(M) 위원회와 부서는 위원회 승인을 위해 40 RCNY § 1-02 (c)(2)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보고 템플릿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d) *민사 범죄로 구금된 사람들.* 형사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민사 절차, 민사 모욕 또는 물질적 증인을 포함한 다른 이유로 구금된 사람들은 나머지 교도소 인구와 별도로 수용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다른 구조 또는 다른 건물에 위치해야 합니다. 날개. 그들에게는 최소한 구금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권 및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이 범주 내에서 다음 그룹은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됩니다.

(i) 22세 이상의 성인 남성;

(ii) 18세에서 21세까지의 남성 청년 성인;

(ii) 22세 이상의 여성 성인;

(iv)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젊은 여성 성인.

(e) *제한된 혼합.* 이 섹션에 포함된 어떤 내용도 접대, 수업, 접촉 방문 또는 의학적 필요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범주 또는 그룹으로 구금된 사람들이 동일한 구역에 있는 것을 방지하지 않습니다.

(f) *보안 분류.*

(1) 부서는 요구되는 최소한의 감시 및 보안 수준에 따라 구금된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 분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2) 분류 시스템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i)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본 목적, 분류 범주, 사용된 변수 및 기준, 사용된 절차 및 각 범주에 배치된 구금자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명시해야 합니다.

(ii) 적어도 2개의 분류 범주를 포함해야 합니다.

(iii) 교정 시스템에 들어갈 때 초기 분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분류는 확인이 가능한 구금자에 대한 관련 사실 정보만을 고려합니다.

(iv) 적절한 적법 절차에 따라 모든 단계에서 구금자의 참여를 규정해야 합니다.

(v) 가장 엄격한 보안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그들의 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구금된 다른 개인에게 제공되는 시간이나 장소와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서 제공될 수 없는 권리, 특권 및 기회만 거부되어야 합니다.

(vi) 재판을 기다리는 개인의 경우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수형자의 경우 8주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가장 엄격한 보안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검토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 기록 2015년 12월 24일 수정, 2016년 1월 23일 수정, 2021년 6월 9일 수정 시 기록, 2021년 7월 9일 수정)

§ 1-03 개인 위생.

(a) *정책.* 각 시설은 피구금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제공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b) *샤워.*

(1) 모든 피구금자에게 매일 냉온수 샤워기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 공중 보건 협회의 온수 온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시설 건강 요건에 따라 수감자들은 주기적으로 샤워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샤워 구역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야 합니다.

(2) 이 호의 (1)항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분리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샤워를 하는 도중, 샤워를 하는 도중, 샤워를 하는 도중 또는 샤워하는 동안 위법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샤워 시설에 매일 접근하는 것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소나기는 연속 2주 동안 주당 5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징벌적 분리 감금 기간 동안 후속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연속 3주 동안 샤워 시설 이용이 주당 3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최대 연속 4주 동안 주당 3일; 네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현재 징벌적 분리 감금 기간 동안 일주일에 3일까지. 이 항 (2)의 규정은 법정에 출석하는 죄수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 *면도.*

(1) 모든 피구금자는 매일 면도가 허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가 조심하고 편안하게 면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온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요청 시 필요한 면도 용품은 부서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이 호의 (1)항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격리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다음 규정에 따라 샤워를 하는 도중, 샤워를 하는 도중, 샤워를 하는 도중 또는 도중에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 출두를 제외하고 매일 면도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단락 (b)(2)에 있는 일정.

(d) *이발.*

(1) 머리카락은 이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잘라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i) 면허가 있는 이발사;
- (ii) 시설 직원; 그리고
- (iii) 죄수.

(2) 이발 도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e) *헤어 스타일.*

(1) 이 호의 요건에 따라, 수감자는 앞머리 스타일을 포함한 모든 길이의 머리 스타일을 채택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 (i) 식품을 저장, 준비, 제공 또는 취급하는 구역에서 작업하도록 배정된 수감자는 머리망이나 기타 머리 덮개를 착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ii) 부서는 특정 작업 할당이 긴 머리 또는 수염을 가진 수용자에게 안전 위험을 구성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 할당의 안전 요건에 따르기를 꺼리거나 따르지 못하는 수감자는 다른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 (iii) 피구금자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해충의 존재가 밝혀지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의 서면 지시와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수용자의 머리를 자르는 것이 허용됩니다.

(2) 얼굴 털을 포함하여 피구금자의 머리카락이 자라거나 제거되어 식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구금자의 새로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f) *개인 건강 관리 품목.*

(1) 시설에 입원하면 모든 수감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건강 관리 품목 문제와 함께 부서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i) 비누
- (ii) 칫솔
- (iii) 치약 또는 치약;
- (iv) 마시는 컵;
- (v) 화장지;
- (vi) 수건; 그리고
- (vii)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거울(하우징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외).

(2) 이 호의 (1)항에 열거된 품목에 추가하여, 모든 여성 피구금자에게는 부서 비용으로 필요한 위생 품목이 제공되어야 한다.

(3) 타월은 최소한 주 1회 부서 비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호의 단락 (1) 및 (2)에 따라 발행된 기타 모든 개인 건강 관리 품목은 필요에 따라 부서 비용으로 보충되거나 교체됩니다.

(g) *의류.*

(1) 피구금자는 필요에 따라 부서에서 제공하는 의복을 입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의류는 부서 비용으로 세탁 및 수리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i) 셔츠 한 벌
- (ii) 한 쌍의 바지;
- (iii) 두 세트의 속옷;
- (iv) 양말 두 켤레
- (v) 적절한 신발 한 켤레; 그리고
- (vi) 추운 날씨에 발행되는 스웨터 또는 스웨트셔츠 1벌.

(2) 부서는 수형자에게 시설복을 입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섹션의 단락 (h)(2)에 설명된 의복 서비스의 설치 및 운영 시, 부서는 모든 수감자들에게 계절에 따라 적절한 시설 의복을 입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 출두를 위해 수감자들은 단락 (3)에 설명된 의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세분의.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시설복은 수형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 의류는 부서 비용으로 제공, 세탁 및 수리해야 합니다.

(3) 부서에서 이 섹션의 단락 (h)(2)에 설명된 의류 서비스를 구축 및 운영할 때까지 구금자는 비시설 의류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i) 수용자가 시설에 입장할 때 착용하는 것; 그리고
- (ii) 모든 출처에서 승인 후 받은 것. 신발을 포함한 이 의복은 새 것이거나 중고일 수 있습니다.
- (iii) 수용자는 일반적으로 공공 장소에서 허용되고 시설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모든 의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4) 작업 할당 또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종사하는 피구금자에게는 특수 의복이 필요한 의복이 부서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 이 섹션의 단락 (h)(2)에 설명된 의복 서비스의 설립 및 운영 시 모든 피구금자에게 시설 의복을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부서는 입원 시 모든 피구금자에게 최소한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i) 셔츠 2벌
- (ii) 한 쌍의 바지;
- (iii) 속옷 4세트;
- (iv) 네 켤레의 양말;
- (v) 적절한 신발 한 켤레; 그리고

(vi) 추운 날씨에 발행되는 스웨터 또는 스웨트셔츠 1벌.

(6) 모든 피구금자에게 시설복을 착용하도록 요구할 때, 부서는 4일마다 그러한 복장을 깨끗한 교환으로 수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h) *의류 서비스.*

(1) 피구금자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개인 또는 시설의 의복을 깨끗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충분한 세탁 서비스가 부서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수용자에게 시설복을 착용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부서는 다음을 설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i) 부서 비용으로 이 섹션의 단락 (g)(5) 및 (6)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세탁 서비스, 그리고

(ii) 피구금자의 개인 의복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고 재판 법원 출두를 위해 청소할 수 있는 안전한 보관 시설, 그리고 수감자가 구금에서 석방되면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i) *침구.*

(1) 시설에 입원하면 모든 수감자들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침구 문제와 함께 부서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i) 두 장

(ii) 베개 하나;

(iii) 베개 케이스 1개;

(iv) 매트리스 1개

(v) 매트리스 커버 1개; 그리고

(vi) 편안함과 따뜻함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담요.

(2) 모든 침구류는 지급되기 전에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

(3) 베갯잇과 시트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야 합니다. 담요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청소해야 합니다. 매트리스는 6개월에 한 번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4) 매트리스는 난연성 재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매트리스 커버는 방수 및 살균이 쉬운 재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 시설 내에 보관된 모든 의복 및 침구류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j) *주거 지역.*

(1) 수감자들은 의료 직원이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지역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유지하기에 충분한 빗자루, 대걸레, 비누 가루, 소독제 및 기타 재료를 부서 비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서는 이 구역을 청소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부서는 감방, 층, 다락방, 창문을 포함한 모든 주거 지역의 정기적인 청소를 제공하고 모든 주거 지역의 설치류와 해충을 박멸합니다.

(3) 모든 주거 구역에는 피구금자의 개인 위생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한 최소한 다음의 비품이 있어야 한다.

(i) 뜨거운 물과 찬물로 싱크대;

(ii) 수세식 변기; 그리고

(iii) 뜨거운 물과 찬물로 샤워하기.

§ 1-04 과밀.

(a) *정책.* 수용자는 적절한 공간과 가구가 제공되지 않는 한 감방, 방 또는 기숙사에 수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b) *1인실.*

(1) 1인용으로 설계 또는 등급이 지정된 감방 또는 방에는 한 명의 수감자만 수용해야 합니다.

(2) 각 셀에는 수세식 변기, 식수가 있는 세면대, 싱글 침대 및 개인 소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폐쇄형 보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일 셀 주택 구역에는 하루 최소 1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각 거주자를 위한 테이블 또는 책상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c) *다중 거주.*

(1) 다중 거주 구역에는 각 거주자에 대해 싱글 침대, 개인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폐쇄형 보관 용기 및 하루에 최소 1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또는 책상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2) 다중 거주 구역은 수면 구역에서 1인당 최소 60평방피트의 바닥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다인실 구역에는 수감자 8명당 최소 1개의 작동 가능한 화장실과 샤워 시설, 10명의 수감자당 작동 가능한 세면대 1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화장실은 직원의 도움 없이 하루 24시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다중 거주 구역은 물리적, 음향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침실 공간에 바로 인접하고 접근할 수 있는 데이를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문을 연 2명 이상의 거주자를 위해 설계 또는 등급이 지정된 셀은 예외입니다. 2000.

(5) 다중 거주 구역은 다음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i) 50명의 구금자

(ii) 60명의 수형자. 이 항은 1985년 7월 1일 이후에 개설된 모든 다중 거주 구역에 적용됩니다.

§ 1-05 잠금.

(a) *정책.* 격리된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이 섹션의 조항은 RMAS 주택에 수감된 사람이나 전염병 병동에 의학적 이유로 수감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비자발적 폐쇄.* 사람들은 다음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감방에 갇힌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1) 카운트 또는 수면을 위한 밤에는 24시간 동안 8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24시간 중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갇힌 상태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계수 또는 필수 시설 업무를 위한 주간. 이 시간은 오프 카운트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c) *선택적 잠금.*

(1) 사람들은 폐쇄 기간 동안 자신의 감방에 가둘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2시간 이상의 잠금 기간이 시작될 때 잠금을 선택하는 개인은 요청 시 해당 기간의 절반이 지난 후 잠금 처리됩니다. 이 때, 잠겨 있던 사람들은 요청에 따라 잠겨 있습니다.

(2)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가 선택적 잠금이 그 사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서면으로 결정하는 경우 부서는 정신 관찰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선택적 잠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잠금을 거부하기로 한 결정은 서면 소견서를 포함하여 10일마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가 검토해야 합니다. 이 호에 따라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가 내리는 결정은 구금자와의 개인적인 상담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d) *일정*. 각 시설은 각 잠금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 호의 (c)(1)에 제공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하여 각 주택 지역에 구금되거나 게시된 모든 사람들에게 잠금 일정을 유지 및 배포해야 합니다. .

(2021년 6월 9일 수정된 시 기록, 2021년 7월 9일 발효)

§ 1-06 레크리에이션.

(a) *정책*. 레크리에이션은 건강에 필수적이며 시설 내 긴장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구금된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실내외 레크리에이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b) *레크리에이션 구역*. 이 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실내 및 실외 레크리에이션 구역을 각 시설에서 설정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야외 레크리에이션 구역은 햇빛과 공기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c) *레크리에이션 일정*. 여가 시간은 최소 1시간이어야 합니다. 레크리에이션 구역에서 보낸 시간만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레크리에이션은 실내 레크리에이션 구역을 사용하여 하는 악천후를 제외하고 야외 레크리에이션 구역에서 일주일에 7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레크리에이션 장비*.

(1) 부서는 레크리에이션 기간 동안 구금된 사람들에게 적절한 양의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요청 시 각 시설은 춥거나 습한 날씨 조건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할 때 코트, 모자 및 장갑을 포함하여 만족스러운 상태의 적절한 겹옷을 구금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 *주택 지역 내 레크리에이션*.

(1) 사람들은 감방 복도 및 층, 데이룸 및 개별 주택 단위 내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i) 테이블 게임
- (ii)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 (iii) 예술 및 공예 활동.

(2) 셀 복도 및 층, 데이룸 및 개별 주택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레크리에이션은 이 섹션의 하위 항목 (c)의 요구 사항을 보완하지만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f) *전염병 병동에 수용된 사람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세포 외 레크리에이션 대신 부서는 의료 제공자와 협의하여 전염병 병동에 의학적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에게 세포 내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적절한 레크리에이션 장비 및 재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러한 개인에게 신문, 책 및 잡지와 같은 간행물에 대한 매일 액세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간행물은 교도소 수용자가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6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g) *제한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40 RCNY [6장](#) 에 정의된 대로 RMAS에 수감된 사람 은 이 섹션의 하위 항목(c)에 따라 레크리에이션이 허용됩니다.

(h)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접근 제한*.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접근은 임박한 안전 및 보안 위험으로 인해 최대 5일 동안만 거부될 수 있으며, 이는 제한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기록되어 위원회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레크리에이션 접근에 대한 제한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 기록 2015년 12월 24일 수정, 2016년 1월 23일 수정, 2021년 6월 9일 수정 시 기록, 2021년 7월 9일 수정)

§ 1-07 종교.

(a) *정책*. 구금된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을 가질 수 있고, 종교 단체 또는 조직의 구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의 행사를 참가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가 있습니다. 구금된 사람은 종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b) *종교적 신념의 행사*.

(1) 구금된 사람들은 시설의 안전이나 보안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종교적 신념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부서 또는 자발적 프로그램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구금된 사람을 개종시키거나 개종시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구금된 사람은 종교적 신념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요되어서도 안 됩니다.

(3) 종교적 신념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지위와 보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그러한 행사가 시설의 일상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c) *종교 활동을 모으십시오*.

(1) 이 섹션의 하위 항목 (a)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은 전염성 질병 단위에서 의료상의 이유로 구금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종교 예배 및 기타 종교 활동의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2) 각 시설은 구금된 모든 사람에게 회중 종교 예배 및 기타 종교 활동을 위한 적절한 구역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단락 (b)(1)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 구역은 종교 관행에 따라 구금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d) *종교 고문*.

(1) 이 조에서 사용된 "종교 고문"이란 해당 종교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종교 고문은 이 섹션의 (c)호에 따라 허용된 회중 종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종교 고문이 없을 경우, 종교 단체에 속한 구금자가 회중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이 섹션의 (b)(1)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사람들은 폐쇄 기간 동안 종교 고문과의 비밀 상담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e) *종교적인 휴일이나 축제의 축하*. 이 섹션의 단락 (b)(1)의 요구 사항에 따라 사람들은 개인 또는 집단 단위로 종교 공휴일 또는 축제를 축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f) *종교적 식이법*. 구금된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에서 정한 식이법이나 금식을 합리적으로 준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 시설은 그러한 종교적 식이법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식품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g) *종교 물품*. 이 섹션의 단락 (b)(1)의 요구 사항에 따라 구금된 사람들은 의복과 모자를 포함한 종교 메달 또는 기타 종교 물품을 착용하고 소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h) *제한된 주택에서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을 행사하는 것*.

(1) RMAS 주택에 수감된 사람들은 이 섹션의 (d)부터 (g)까지의 조항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포함하여 종교적 신념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2) 40 RCNY [6장](#)에 정의된 RMAS 주택의 레벨 1 및 2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 활동은 그러한 개인이 서로 또는 구금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적절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종교 활동에 참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제공됩니다.

(i) *종교 단체 또는 조직의 인정.*

(1) 부서에서 인정하는 모든 종교 단체 및 조직의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스페인어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주택 지역에 구금되거나 배치된 모든 사람에게 배포되어야 합니다.

(2) 각 시설은 종교단체 및 단체별 종교지도자가 있는 경우 그 명단과 각 종교의 예배시간 및 장소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스페인어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주택 지역에 구금되거나 배치된 모든 사람에게 배포되어야 합니다.

(3) 구금된 사람들은 부서에서 이전에 승인하지 않은 종교 단체 또는 조직의 신념을 행사하도록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호의 (3)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결정할 때, 특히 다음 요소가 믿음에 대한 종교적 기초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i) 종교적 원칙과 관련된 믿음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문헌이 있는지 여부;
- (ii) 믿음을 공유하는 인지 가능하고 응집력 있는 그룹에 의한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예배가 있는지 여부;
- (iii) 신념을 뒷받침하는 공통의 윤리적, 도덕적 또는 지적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비공식적 연합이 있는지 여부; 또는
- (iv) 요청한 사람이 믿음을 깊고 진지하게 갖고 있는지 여부.

(5) 이 호의 (3)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는 믿음에 대한 종교적 기초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i) 신념은 소수의 개인에 의해 유지됩니다.
- (ii) 신념이 최근에 발생한 것입니다.
- (iii) 믿음은 최상위 존재 또는 그와 동등한 개념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또는
- (iv) 믿음이 인기가 없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6) 부서가 이 호의 단락 (3)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결정하기 전에 요청자는 믿음에 대한 종교적 근거를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7) 이 항의 (1)과 (3)에 요약된 절차는 이 항의 (i)(3)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이 거부될 때 적용됩니다.

(j) *종교적 신념의 행사에 대한 제한.*

(1) 구금된 사람의 종교적 신념의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절차를 포함한 이 결정의 사본은 결정 후 1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와 결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발송됩니다.

(2) 이 결정은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보여주는 종교 활동 중에 구금된 사람이 범한 특정 행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개인에게 특정 혐의와 청구 당사자의 이름 및 진술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응답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이 호에 따른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위원회에 그러한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 (i)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결정에 항소하려는 사람의 의도를 위원회와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ii) 부서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서면 결정 외에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ii) 위원회 또는 그 피지명인은 요청된 검토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십사(14)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수정된 시 기록, 2021년 7월 9일 발효)

§ 1-08 법원 및 법률 서비스 이용.

(a) *정책.* 구금된 사람들은 법원, 변호사, 법률 보조원 및 법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b) *사법 및 행정 절차.*

- (1) 구금된 사람은 법원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또는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행정 기관과의 통신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2)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출석할 예정인 사람에게는 적시에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금된 사람들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은 해당하는 모든 안전 및 검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적절한 환기, 조명 및 편안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c) *변호인에 대한 접근.*

- (1) 구금된 사람들은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한 명의 변호사가 누군가를 대리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다른 변호사와 의사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식별된 변호사는 그 사람의 동의하에 구금된 사람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i) 변호사는 시설 출입증을 받기 위해 부서 중앙 사무소의 지정된 공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입증을 통해 변호사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모든 사람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ii) 부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부서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자격 심사를 받는 개인에 대해 기록상 변호사 또는 법원 통지를 받은 변호사의 방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구금자와 변호사 간의 방문은 40 RCNY § 1-09의 조항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법률 방문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하루에 최소 8시간이 허용됩니다. 영업일 중에는 이 시간 중 4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여야 합니다. 부서는 일정을 유지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각 시설의 법정 방문 시간.

(4) 구금자와 변호사 간의 우편물은 40 RCNY § 1-1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지연되거나 읽히거나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

(5) 구금자와 변호사 간의 전화 통신은 40 RCNY § [1-10](#)의 조항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

(d) *공동 피고에 대한 접근.*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러한 방문에 동의하는 모든 공동 피고 사이에 정기적인 방문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공동 피고 중 한 명이 수감되어 있는 경우 부서는 기록상 변호사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원격 회의를 사용해야 합니다.

(e) *변호사 보조.*

- (1) 로스쿨 학생, 법률 보조원 및 구금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감독하에 일하는 기타 변호사 보조자는 동일한 범위 및 동일한 조건에서 우편,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 해당 사람과 의사 소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인을 대리할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금된 사람이 접촉한 변호사의 감독 하에 일하는 법대생, 법률 보조원 및 기타 변호사 보조원은 변호사와 동일한 범위 및 동일한 조건에서 우편,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해당 개인과 의사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2) 변호사 보조자는 시설 출입증을 받기 위해 부서 중앙 사무소의 지정된 공무원에게 변호사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패스는 40 RCNY § 1-09 \(h\)\(1\)](#)에 나열된 이유를 근거로 거부되지 않습니다 .

(3) 패스는 보조자가 이 섹션의 하위 항목(e)에 나열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법률 보조원의 특정 행위가 시설의 안전 및 보안에 대한 법률 보조원의 위협을 입증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40 RCNY § 1-09](#)의 (h)항 (2), (4) 및 (5)항의 절차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f) *법률 도서관* 각 시설은 적절한 장비와 직원이 있는 법률 도서관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1) 법률 도서관은 소음과 활동이 충분히 없고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조명이 있는 별도의 공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2) 각 법률 도서관은 최소 하루(1) 주말을 포함하여 주당 최소 5일 동안 개방되어야 합니다. 법률 도서관은 매일 열려 있습니다:

- (i) 6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서 각 법률 도서관은 최소 10시간 동안 운영되어야 하며, 그 중 최소 8시간은 폐쇄 시간 동안이어야 합니다.
- (ii) 600명 이하를 수용하는 시설에서 각 법률 도서관은 최소 8시간 30분 동안 운영되어야 하며, 그 중 최소 6시간 반은 잠금 상태여야 합니다. 외출 시간;
- (iii) 모든 시설에서 법률 도서관은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최소 3시간 동안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iv) 법률 도서관은 설날, 7월 4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일반 법률 도서관의 날에 해당하는 모든 공휴일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법률 도서관 서비스는 법률 도서관이 일반적으로 문을 닫는 같은 주의 이틀 중 하나에 제공되는 경우 지정된 휴일 이외의 공휴일에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법률도서관이 운영되는 공휴일에는 최소 8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법률 도서관 일정에 대한 변경은 교정 위원회에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계획된 변경이 시행되기 최소 5영업일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3) 법률 도서관 일정은 레크리에이션, 식당, 식사, 학교, 병가 등과 같은 기타 활동이 예정되지 않은 시간에 구금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사람들은 낮 시간에 법률 도서관에 참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4) 구금된 각 사람은 법률 도서관이 열리는 날에 하루 최소 2시간 동안 법률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청 시 공간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필요에 따라 추가 시간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추가 시간을 제공함에 있어 재판 중인 사람, 재판 기한이 임박한 사람 등 즉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5) 단락 (f)(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상의 이유로 전염병 병동에 수용된 사람들은 법률 도서관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법률 조사를 위해 법률 자료에 대한 대체 접근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6) 40 RCNY [6장](#)에 정의된 대로 RMAS 주택의 레벨 1 및 2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 도서관 시간은 줄어들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단, 효과적인 법률 연구를 허용하기 위해 법률 자료에 액세스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7)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연구교실은 최소 분기별로 각 시설에서 실시한다. 법률 연구 교육 자료는 RMAS 주택의 레벨 1 및 2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 시 제공됩니다.

(8) 부서는 모든 법률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제목 및 날짜 목록, 영어 및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법률 문서의 수, 자격 및 시간을 포함하여 각 시설의 법률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자세히 설명하는 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조수.

(g) *법률 문서 및 용품*.

(1) 각 법률 도서관은 필요한 연구 및 참고 자료를 보유해야 하며 적절하게 업데이트되고 보완되어야 하며 자료가 누락되거나 훼손된 경우 부당한 지체 없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2) 구금된 사람들은 법률 문서를 준비할 목적으로 타자기, 전용 워드 프로세서 및 복사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의 작동 가능한 타자기, 전용 워드 프로세서 및 복사기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3) 펜, 리갈 페이퍼 및 패드를 포함한 법률 사무용품은 구금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법적 사무 용품은 부서 비용으로 빈곤한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4) 구금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시가 없는 법적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사용을 위해 그러한 양식을 사용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h) *법률 도서관 직원 채용*.

(1) 모든 운영 시간 동안 각 법률 도서관에는 교육을 받은 민간 법률 조정관이 배치되어 사람들이 법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법률 조정자 보장은 정기적으로 배정된 법률 조정자의 장기간 부재 시 제공됩니다.

(2) 각 법률 도서관에는 법률 도서관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적절한 수의 영구적으로 배정된 교정 담당관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3) 구금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스페인어에 능통한 직원이 법률 도서관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i) *법률 문서 및 연구 자료의 수*.

(1) 구금된 사람들은 모든 출처에서 법률 서적 및 기타 법률 연구 자료를 구매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감방 내 물질 보관 및 감방 수색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채택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의 법률 문서, 서적 및 서류를 적법한 영장 없이 교도관이 열람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감방의 공간이 제한된 경우, 구금된 사람이 이러한 자료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법적 자료를 시설의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필요하다.

(j) *법률 도서관에 대한 접근 제한*.

(1) 구금된 사람들이 법률 도서관의 질서 있는 기능을 방해하거나 법률 도서관을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률 도서관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2) 법률 도서관에 대한 개인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절차를 포함한 이 결정의 사본은 결정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위원회와 결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발송됩니다.

(3) 법률 자료에 대한 대체 접근 방법은 법률 도서관에서 제외된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법률 연구를 허용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조정자는 요청 시 제외된 사람을 방문하여 법률 도서관 요구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4) 이 항 (j)에 따라 내려진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위원회에 그러한 결정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i)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결정에 항소할 의사를 위원회와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ii) 부서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서면 결정 외에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i) 위원회 또는 그 피지명인은 요청된 검토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수정된 시 기록, 2021년 7월 9일 발효)

§ 1-09 방문.

(a) *정책*. 구금된 모든 사람들은 충분한 기간과 횟수의 개인 방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 및 가족 네트워크 및 지원 시스템과의 개인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수감 중과 재입국 시 결과를 개선하는 데 중요합니다. 친구 및 가족과의 방문은 이러한 연결을 유지하는 개인의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서에서 권장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개인의 가족이 혈연 또는 결혼이나 입양과 같이 법적으로 인정된 유대에 의해 개인과 관련된 가족으로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용어는 이 세부 항목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가족 구조의 다양성과 구금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를 반영하도록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모와 대자녀; 현재 및 이전의 양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 현재 또는 이전의 동거, 위

탁 계약, 시민 결합 또는 동거를 통해 개인과 연결된 사람들.

(b) 방문 및 대기 구역.

- (1) 이 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방문 구역이 각 시설에 설정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 (2) 방문 구역은 이 섹션의 하위 항목 (f)에서 요구하는 대로 구금된 사람들과 방문자 간의 물리적 접촉을 허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3) 부서는 방문 전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방문자는 적절한 대피소가 제공되지 않고 이 섹션의 단락 (b)(4)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한 시설 밖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4) 모든 대기 및 방문 구역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문자에게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i) 모든 방문자를 위한 충분한 좌석
 - (ii) 대기 및 방문 기간 동안 욕실 시설 및 식수 이용
 - (iii) 대기 또는 방문 기간 중 특정 시점에서 음료 및 식품 자동 판매기에 액세스 그리고
 - (iv) 대기 또는 방문 기간 동안 스페인을 구사하는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에 대한 액세스. 모든 방문 규칙, 규정 및 시간은 각 시설의 대기 및 방문 구역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 (5) 부서는 따뜻한 날씨에 방문을 위해 야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c) 방문 일정.

- (1) 면회 시간은 개별 시설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i)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최소 연속 3시간 동안 최소 3일 동안 허용되어야 합니다. 오후 10시
 - (ii)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최소 5시간 연속으로 방문이 허용됩니다.
- (2) 면회시간은 개별 시설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수형자에 대한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다.
 - (i)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문은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연속적으로 최소 3시간 동안 최소 한(1) 저녁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 (ii)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최소 5시간 연속으로 방문이 허용됩니다.
- (3) 각 시설의 방문 일정은 해당 부서의 중앙사무실 또는 시설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4) 방문은 최소 1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구금자와 방문자가 방문실에서 만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 (5)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저녁 또는 주말에 1회 이상 주당 2회 이상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저녁이나 주말에 최소 1회, 주당 최소 3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종교 고문, 공무원, 치료사, 카운셀러 및 미디어 담당자를 포함하여 서비스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적절하게 식별된 사람의 방문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6) 특정 방문자 또는 방문자 범주의 방문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7) 이 호의 단락 (1), (2) 및 (5)에서 요구하는 최소 방문 횟수 외에, 긴급 상황 및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방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긴 여행 시간을 포함합니다.
- (8) 구금자는 최소 3명의 방문객과 동시에 방문할 수 있으며, 최대 인원은 시설에서 결정합니다.
- (9) 방문자는 동시에 최소 2명의 구금자와 함께 방문할 수 있으며, 최대 인원은 시설에서 결정합니다.
- (10) 공간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시설은 방문자 그룹의 총 인원수와 구금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긴급 상황 및 긴 여행 시간이 필요한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면제됩니다.

(d) 최초 방문.

- (1)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설에 입원한 후 24시간 이내에 비접촉 방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2) 이 조의 단락 (c)(1)에 따라 예정된 방문 기간이 재판의 승인을 기다리는 사람 후 이십사(24) 시간 이내에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 세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 방문자 식별 및 등록.

- (1) 이 호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식별된 사람은 구금 중인 개인의 동의 하에 해당 개인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i) 방문 전에 구금자에게 예상 방문자의 신원을 알려야 합니다.
 - (ii) 구금된 사람이 특정 방문자와의 만남을 거부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방문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후 기간 동안 거부된 방문자를 만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 방문자는 시설 방문자 로그에 다음을 입력해야 합니다.
 - (i) 그들의 이름
 - (ii) 주소
 - (iii) 날짜
 - (iv) 입국 시간
 - (v) 방문할 개인 또는 개인의 이름 그리고
 - (vi) 퇴장 시간.
- (3) 16세 미만의 잠재 방문자는 시설 방문자 로그에 다음 항목을 입력하거나 대신 입력해야 합니다.
 - (i) 이 호의 단락 (2)에서 요구하는 정보
 - (ii) 그들의 나이; 그리고
 - (iii)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4) 방문자 로그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안에 포함된 정보는 시 현장에서 제공하거나 공식 법 집행 기관의 특정 요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 외 직원이 읽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부서는 상세하고 완전한 설명과 함께 그러한 모든 요청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5) 구금된 사람을 방문하기 전에 16세 미만의 잠재 방문자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동반해야 하며, 구금자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문

을 승인하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6) 부서는 16세 미만인 사람의 방문을 위한 대체 절차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는 이 호의 단락 (e)(5)의 정책과 일치해야 하며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f) *연락처 방문*. 구금된 모든 사람과 방문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신체 접촉에는 방문 기간의 시작과 끝에서 구금자와 방문자 사이의 짧은 포옹과 키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금된 사람들은 방문 기간 동안 가족 중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부서는 구금 중인 사람이 한 번에 한 명의 어린이만 수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구금된 사람들은 방문 기간 동안 방문자와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하며, 부서는 6인치 이하의 칸막이 위로 손을 잡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조항의 조항은 전염병 병동에 의학적 이유로 수용된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17](#) (바).

(g) *방문 보안 및 감독*.

- (1) 매 방문 전후에 구금된 모든 사람들은 밀수품을 소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만 수색할 수 있습니다.
- (2) 모든 잠재 방문자는 밀수품을 소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방문 전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 (3) 이 호의 단락 (2)에 따라 수행된 잠재 방문자의 신체 수색은 전자 탐지 장치의 사용을 통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법령에 따라 교정 직원 이 소유한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4) 핸드백이나 패키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잠재 방문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검색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결혼 반지, 종교 메달, 의복을 포함한 개인 소지품을 방문 중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잠재 방문자에게 가방, 겹옷 및 전자 기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재산을 잠글 수 있는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동 가능하고 잠글 수 있는 사물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방문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없습니다.
- (5) 시설의 안전 또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방문하는 동안에만 감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6) 시각적 감독을 유지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영장을 받지 않는 한 방문을 경청하거나 모니터링해서는 안 됩니다.

(h) *방문권에 대한 제한*.

- (1) 특정 방문자와 함께 구금된 사람의 방문 권리는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 시설의 안전이나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거부, 취소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방문자와의 방문은 연락할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 심각한 위협을 줄이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방문자의 위협을 보여주는 시설을 사전에 방문하는 동안 방문자가 범한 특정 행위 또는 방문자가 해당 기간 동안 행동에 참여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수신한 특정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시설의 안전이나 보안에 위협이 될 다음 방문. 어떤 결정에 앞서, 방문자는 특정 요금과 청구 당사자의 이름 및 진술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하며 응답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보자의 이름을 가릴 수 있습니다.
- (2) 이 섹션의 하위 항목 (f)에 규정된 방문에 대한 구금자의 연락 권리는 그러한 방문이 시설의 안전이나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거부, 취소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접촉 방문 권리를 거부, 취소 또는 제한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개인에게 비접촉 방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필요한 방문 횟수를 제공하기 위한 대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개인의 위협을 보여주는 현재 혐의 또는 형에 따라 구금된 동안 개인이 저지른 특정 행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또는 개인이 다음 방문 동안 시설의 안전이나 보안에 위협이 될 행동에 참여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수신한 특정 정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은 특정 혐의와 청구 당사자의 이름과 진술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하며 응답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보자의 이름을 가릴 수 있습니다.

- (3) 방문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구금자 또는 장래의 방문자가 제기하는 위협에 맞춰져야 하며 해당 위협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4) 구금자 또는 장래의 방문자의 실제 또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문 권리가 거부, 취소, 제한 또는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 (i) 섹스;
- (ii) 성적 지향
- (iii) 인종;
- (iv) 이 섹션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령;
- (v) 국적
- (vi) 정치적 신념;
- (vii) 종교;
- (viii) 범죄 기록;
- (ix) 형사 또는 민사 소송 계류 중;
- (x) 가족 관계의 부족;
- (xi) 성 정체성, 자아상, 외모, 행동 또는 표현을 포함한 성별; 또는
- (xii) 장애

(5) 이 호의 단락 (1) 및 (2)에 따라 구금자의 방문권을 거부, 취소 또는 제한하기 위한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절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이 결정의 사본을 결정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보내야 합니다.

(i) *방문 제한에 대한 항소 절차*.

- (1) 방문에 대한 접근을 거부, 취소 또는 제한하기로 한 부서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다음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그러한 결정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 (i)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결정에 항소할 의사를 위원회와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ii) 부서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서면 결정 외에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ii) 위원회 또는 그 피지명인은 방문 결정이 확인, 번복 또는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요청된 검토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 (iv) 위원회 또는 피지명인이 5영업일을 초과하여 서면 결정을 발행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또는 피지명인은 10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 연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경우, 위원회는 부서와 연장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시 기록 2015년 12월 24일 수정, 2016년 1월 23일 수정, 2021년 6월 9일 수정 시 기록, 2021년 7월 9일 수정)

§ 1-10 전화 통화.

- (a) *정책*. 수감자들은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충분한 수의 전화기가 각 시설의 주택 구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b) *초기 전화 통화*. 시설에 입장하면 각 구금자는 부서 비용으로 지역 전화를 한 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입원 시 추가 전화 통화 요청은 시설에서 결정합니다. 장거리 전화는 수신자 부담이 되지만, 그러한 전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c) *구금자 전화*. 수감자들은 매일 최소한 한 번은 전화를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뉴욕시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서 비용으로 매주 3회의 전화가 빈곤 구금자에게 제공됩니

다. 장거리 전화는 수신자 부담으로 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d)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전화.* 형을 선고받은 피구금자는 매주 최소 2회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화는 뉴욕시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서 비용으로 가난한 수감자에게 제공됩니다. 장거리 전화는 수신자 부담으로 하거나 수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 *전화 통화 시간.* 부서는 최소 6분 동안의 전화 통화를 허용해야 합니다.

(f) *전화 통화 일정.* 이 섹션의 하위 항목 (c) 및 (d)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모든 잠금 기간 동안 전화 통화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비상 사태의 전화 통화는 합리적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g) *수신 전화.*

(1) 피구금자는 긴급한 성격의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받고 가능한 한 빨리 전화에 회신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2) 피구금자는 계류 중인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자신의 기록 변호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받고 가능한 한 빨리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호출은 보류 중인 절차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h) *전화 통화 감독.* 적절한 절차가 시행되면, 법적으로 충분한 통지가 수용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만 수용자 전화 통화를 듣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교정 위원회, 감찰관 및 기타 모니터링 기관, 치료 의사 및 임상사, 변호사 및 성직자에 대한 전화 통화는 경청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없습니다.

(i) *전화 권리에 대한 제한.*

(1) 모든 피구금자의 전화권은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 시설의 안전 또는 보안에 대한 위협 또는 이전에 피구금자에게 알려진 서면 전화 규정의 남용을 구성한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i) 이러한 결정은 그러한 위협이나 학대를 입증하는 전화권 행사 중 피구금자가 저지른 특정 행위에 근거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구금자에게 특정 혐의와 혐의 당사자의 이름과 진술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하고 응답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보자의 이름을 가릴 수 있습니다.

(ii) 피구금자의 전화권을 제한하는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항소 절차를 포함한 이 결정의 사본은 결정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와 결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발송됩니다.

(2) 이 절의 (c) 및 (d)호에 규정된 전화 권리는 징벌적 격리 수용자에 대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사람은 매주 최소 1회의 전화 통화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j) *항소.* 이 호에 따라 내려진 결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은 그러한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1)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의사를 위원회와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부서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서면 결정 외에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원회 또는 그 피지명인은 요청된 검토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 1-11 통신.

(a) *정책.* 구금된 사람들은 공공 안전을 보호하거나 시설의 질서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과 통신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서는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통신은 시설, 직원 또는 교정 시스템을 비판하거나 시설 직원이 재할 또는 교정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인기 없는 아이디어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서는 구금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책을 통지해야 합니다.

(b) *번호 및 언어.*

(1) 보내거나 받은 서신의 양 또는 서신이 작성된 언어에 따라 수신 또는 발신 서신에 제한이 없습니다.

(2) 구금된 사람이 읽거나 쓸 수 없는 경우 시설 직원 및 구금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발신 서신.*

(1) 각 시설은 변호사, 법원 및 공무원에게 보내는 모든 편지와 매주 2통의 기타 편지에 대해 부서 경비 문구류 및 우편 요금으로 구금된 빈곤층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각 시설은 구금자가 문구류와 우송료를 모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내는 편지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과 봉투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시설 우체국 상자 또는 거리 주소 또는 보낸 사람의 집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4) 보내는 서신은 발송인이 봉인하고 잠긴 우편물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5) 모든 발신 서신은 최소한 각 영업일에 미국 우정청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6) 권한 없는 발신 통신은 해당 통신이 시설, 다른 사람 또는 대중의 안전이나 보안을 위협한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명시한 합법적인 수색 영장 또는 소장의 서면 명령에 의거하지 않는 한 열거나 읽을 수 없습니다. .

(i) 소장의 서면 명령은 결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ii) 영향을 받는 발송인은 결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및 이유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소장은 통지가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발송인에게 통지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소장은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iii) 이 단락에 따라 읽은 서신의 서면 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금자의 이름, 예정된 수신자의 이름, 독자의 이름, 서신을 읽은 날짜 그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짜.

(iv) 이 항에 따라 취한 조치는 부서에서 서신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7) 적법한 수색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특혜가 발신하는 서신을 열거나 읽을 수 없습니다.

(d) *들어오는 서신.*

(1) 수신되는 서신은 수신자가 더 이상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가 수신한 후 48시간 이내에 의도된 수신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2) 서신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 목록은 부서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시설에 입장하면 사람들에게 이 목록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각 주택 지역에 게시해야 합니다.

(e) *들어오는 서신의 검사.*

(1) 수신되는 비특권 서신:

(i) 의도된 수령인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통신이 시설,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보안을 위협한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명시한 합법적인 수색 영장 또는 소장의 서면 명령에 의거하지 않는 한 열 수 없습니다. 공공의.

(A) 소장의 서면 명령은 결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B) 영향을 받는 수취인 및 발신인에게 소장의 결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소장은 통지가 시설의 안전이나 보안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수취인과 발신인에게 통지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소장은 즉시 수취인과 발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C) 이 항에 따라 읽은 서신의 서면 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읽은 날짜, 수신자와 발신자가 알림을 받은 날짜.

(D) 이 호에 따라 취한 조치는 부서에서 서신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ii) 해당 통신이 시설, 다른 사람 또는 대중의 안전이나 보안을 위협한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명시한 적법한 수색 영장 또는 소장의 서면 명령에 의거하지 않는 한 읽혀서는 안 됩니다. 이 호에 따른 소장의 서면 명령 절차는 이 호의 단락 (1)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들어오는 서신은 개봉하지 않고 조작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방해가 되지 않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한은 수색 영장 신청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 24시간 동안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수신되는 특혜 서신은 구금된 수령인의 입회 또는 적법한 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신되는 특혜 서신을 읽을 수 없습니다.

(f) *들어오는 서신의 금지 품목.*

(1) 수신되는 서신에서 발견된 항목이 범죄와 관련된 경우 가능한 형사 기소를 위해 해당 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진행 중인 범죄 수사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호의 단락 (3)에서 요구하는 통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수신 서신에서 발견된 금지 품목은 수신자가 원하는 대로 발송인에게 반환되거나 기증되거나 파기됩니다.

(3) 항목을 제거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와 예정된 수령인에게 이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서면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발송인의 이름 및 주소

(ii) 제거된 항목;

(iii) 제거 사유

(iv) 이 호의 단락 (2)에 의해 제공된 선택; 그리고

(v) 항소 절차.

(4) 우편물을 제거한 후 들어오는 서신은 예정된 수신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g) *항소.* 서신에서 항목을 제거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그러한 결정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1)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결정에 항소할 의사를 위원회와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부서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서면 결정 외에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원회 또는 그 피지명인은 요청된 검토 통지를 받은 후 14 영업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수정된 시 기록, 2021년 7월 9일 발효)

§ 1-12 패키지.

(a) *정책.* 수감자는 공공 안전을 보호하거나 시설의 질서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에게서나 소포를 수령하고 누구에게나 소포를 보낼 수 있습니다.

(b) *번호.* 부서는 보내거나 받는 패키지의 수에 합리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c) *나가는 패키지.* 소포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d) *들어오는 패키지.*

(1) 들어오는 소포는 예정된 수감자가 부서에서 더 이상 구금되지 않는 한 부서에서 수령한 후 72시간 이내에 배달되어야 합니다.

(2) 패키지는 방문 시간 동안 시설에 직접 배달될 수 있습니다.

(3) 시설에 입원하면 수용자에게 소포로 수령할 수 있는 품목 목록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이 목록을 각 주거 지역에 게시해야 한다.

(e) *들어오는 패키지의 검사.*

(1) 들어오는 패키지를 개봉하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2) 들어오는 패키지에 동봉된 서신은 40 RCNY § 1-11 의 (e)호에 명시된 절차를 제외하고 열거나 읽을 수 없습니다 .

(f) *들어오는 패키지의 금지 품목.*

(1) 들어오는 패키지에서 발견된 항목이 범죄와 관련된 경우 가능한 형사 기소를 위해 해당 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진행 중인 범죄 수사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호의 단락 (3)에서 요구하는 통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반입 패키지에서 발견된 금지 품목은 수감자의 희망에 따라 발송인에게 반환되거나 기증되거나 파기됩니다.

(3) 물품을 제거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와 예정된 수감자에게 이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서면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발송인의 이름 및 주소

(ii) 제거된 항목;

(iii) 제거 사유

(iv) 이 호의 단락 (2)에 의해 제공된 선택; 그리고

(v) 항소 절차.

(4) 물품을 제거한 후, 포장에 들어 있는 다른 모든 물품은 예정된 수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g) *항소.* 들어오는 패키지에서 항목을 제거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위원회에 그러한 결정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1)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결정에 항소할 의사를 위원회와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부서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서면 결정 외에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원회 또는 그 피지명인은 요청된 검토 통지를 받은 후 14 영업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된 시 기록 2015년 12월 24일, 2016년 1월 23일 발효)

§ 1-13 간행물.

(a) **정책.** 수감자는 공공 안전을 보호하거나 시설의 질서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상당한 믿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친구 및 출판사를 포함한 모든 출처로부터 새 출판물 또는 중고 출판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간행물"은 소프트 및 하드커버 책, 기사, 잡지 및 신문을 포함한 인쇄물입니다.

(b) **번호 및 언어.** 피구금자가 이전에 받은 출판물의 수 또는 출판물의 언어에 따라 출판물의 수량에 제한은 없다.

(c) **들어오는 출판물.**

(1) 수용자가 더 이상 부서에 구금되지 않는 한, 들어오는 출판물은 부서에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의도된 수용자에게 배달되어야 합니다.

(2) 들어오는 간행물은 들어오는 패키지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개봉 및 검사할 수 있습니다.

(3) 들어오는 출판물은 위험한 무기나 폭발물의 제조 또는 사용, 탈출 계획 또는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기타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검열되거나 지연되지 않습니다.

(4) 들어오는 출판물은 이 호의 (3)항에서 금지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만 읽어야 합니다.

(5) 들어오는 출판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열하거나 연기하기로 결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와 예정된 수감자에게 그러한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결정과 항소 절차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 **항소.** 이 섹션의 단락 (c)(3)에 따라 내려진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1)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의사를 위원회와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부서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서면 결정 외에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원회 또는 그 피지명인은 요청된 검토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 1-14 미디어 액세스.

(a) **정책.** 수감자들은 언론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디어"는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인쇄 또는 전자 수단을 의미하며 신문, 잡지, 서적 또는 기타 출판물, 허가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언론 인터뷰.**

(1) 적절하게 식별된 미디어 대표자는 그러한 인터뷰에 동의하는 모든 수용자를 인터뷰할 자격이 있다. "적절하게 식별된 미디어 담당자"는 미디어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2) 피구금자의 동의는 스페인어와 영어로 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양식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i) 미디어 담당자의 이름 및 조직

(ii) 미디어 담당자에게 한 진술이 향후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 수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자에게 통지합니다.

(iii) 수용자가 미디어 담당자와 이야기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수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iv)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과의 상담을 위해 언론 인터뷰를 연기할 수 있음을 수감자에게 통지합니다.

(3) 부서는 법원 명령에 따라 적격성 검사를 받는 구금자와 미디어 인터뷰 일정을 잡기 전에 기록 변호사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부서는 18세 미만의 수감자와 미디어 인터뷰 일정을 잡기 전에 변호사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부서의 언론 담당자의 이름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미디어 담당자는 인터뷰 요청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6) 면담 일정은 부서에서 즉시 예약해야 하지만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의 요청에 따라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수용해야 합니다. 24시간 기간은 수용자가 시설에 부재할 경우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c) **언론 인터뷰의 제한.**

(1) 부서는 그러한 인터뷰가 시설의 안전이나 보안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미디어 담당자 또는 수용자와의 미디어 인터뷰를 거부,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이 결정은 미디어 담당자 또는 수용자가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위협을 보여주는 사전 방문 동안 저지른 특정 행동에 기초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디어 담당자 또는 수감자에게 특정 혐의와 혐의 당사자의 이름 및 진술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응답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3) 이 호의 (1)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절차를 포함한 이 결정의 사본은 결정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와 결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야 합니다.

(4) 이 호에 따라 내린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위원회에 그러한 결정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i)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결정에 대한 항소 의사를 위원회와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ii) 부서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서면 결정 외에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i) 위원회 또는 그 피지명인은 요청된 검토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 1-15 차이.

(a) **정책.** 부서는 준수를 달성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최소 표준의 특정 하위 또는 섹션과의 차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편차"는 지정된 기간 동안 특정 하위 부문 또는 섹션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위원회가 부여한 면제입니다. "지속적인 변동"은 무기한 기간 동안 특정 하위 부문 또는 섹션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위원회가 부여한 면제입니다. 이 섹션의 단락 (b)(3)에 정의된 "비상 변동"은 30일 이하 동안 특정 하위 부문 또는 섹션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위원회가 부여한 면제입니다.

(b) **제한적, 계속적 및 긴급 변동.**

(1) 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위원회에 변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최선의 노력과 다른 뉴욕시 공무원 및 기관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 부문 또는 섹션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거나

(ii) 규정 준수는 하위 항목 또는 섹션에 지정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달성되어야 합니다.

(2) 부서는 최선의 노력과 다른 뉴욕시 공무원 및 기관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정 준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계속 변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특정 세분화 또는 섹션의 완전한 준수는 특정 시설의 고유한 상황의 결과로 극도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완전한 준수의 부족은 직원 또는 수용자에게 위험이나 과도한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는

(ii) 준수는 하위 항목 또는 섹션의 의도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대체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합니다.

(3) 부서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 하위 부문 또는 섹션을 계속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비상 변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미만의 비상 변동은 비상 상황으로 인해 특정 하위 부문 또는 섹션을 계속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부서에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또는 그 피지명인은 비상 상황과 변동 선언에 대해 즉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c) 차이 적용.

(1) 지속적인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부서 커미셔너는 변경 신청서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i) 요청된 변동의 유형;

(ii) 문제가 되는 특정 하위 부문 또는 섹션,

(iii) 요청된 변동 시작 날짜;

(iv) 발효일까지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에서 취한 노력;

(v) 완전한 준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특정 사실 또는 이유, 그리고 그러한 사실 및 이유가 명백해진 때

(vi) 완전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예상 및 일정

(vii) 엄격한 준수가 가능하지 않은 기간 동안 세분화 또는 섹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계획; 그리고

(viii) 신청이 제한된 변동에 대한 것인 경우, 변동이 요청되는 기간. 단,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이 호 (1)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계속 변동 신청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i)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 그리고 그러한 사실과 이유가 명백해지는 경우, 그리고

(ii) 달성된 준수의 정도 및 완전한 준수의 부족으로 인한 가능한 위험이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 또는

(iii) 하위 항목 또는 섹션의 의도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대안적인 방식으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계획에 대한 설명.

(3) 이 호의 단락 (1)의 요구 사항에 추가하여 24시간 이상 동안의 긴급 변경(또는 긴급 변경의 갱신)에 대한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i) 문제가 되는 특정 하위 부문 또는 섹션,

(ii) 계속적인 준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이유, 그리고 그러한 사실과 이유가 명백해진 때

(iii) 완전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예상 및 일정 그리고

(iv) 변동이 요청되는 기간. 단, 3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d) 제한적이고 지속적인 변동에 대한 변동 절차.

(1) 제한적 또는 계속적 변동 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위원회는 교도소 직원, 수감자와 그 대리인, 기타 공무원, 법률, 종교 및 지역 사회 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실행 가능한 경우 이사회는 변경 신청에 대한 공개 회의 또는 청문회를 열고 모든 이해 당사자의 증언을 청취해야 합니다.

(3) 변경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이해 당사자는 이사회의 결정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결정이 내려진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e) 차이의 승인.

(1) 위원회는 변경이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을 승인해야 합니다.

(2) 변동을 승인하면 위원회는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i) 분산의 유형

(ii) 변동이 시작되는 날짜

(iii)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기간, 그리고

(iv) 변동에 대한 조건으로 부과된 모든 요구 사항.

(f) 변경 사항의 갱신 및 검토.

(1) 제한적 또는 긴급 변경의 갱신을 위한 신청서는 이 섹션의 (b), (c), (d) 및 (e)호에 제공된 원래 신청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원래 신청서를 승인하기 위한 요구 사항 외에도 이전에 규정된 시간 제한 내에서 세부 항목 또는 섹션을 준수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요구 사항이 원래 변동에 대한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이사회가 설정했습니다.

(2) 지속적인 변동의 검토를 위한 청원은 위원회 자체의 동의 또는 부서, 교정 직원, 수감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계속적인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과 정당성을 검토하고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이 섹션의 (b), (c), (d) 및 (e)호에 제공된 원래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모든 사실을 검토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그러한 검토와 고려 후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변동을 중단할 것입니다.

(i) 이제 표준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ii) 계속 변화가 허용된 조건으로 부과된 요구 사항이 충족되거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iii) 이 섹션의 하위 단락 (b)(2)(ii)에서 요구하는 대체 방식으로 더 이상 하위 섹션 또는 섹션의 의도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3) 위원회는 갱신 신청 또는 변경 검토에 대한 결정의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이 섹션의 하위 항목 (e)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한적이고 지속적인 변동의 경우 이 섹션의 단락 (d)(3) 및 (4)를 준수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이사회는 모든 이해 당사자와 협의한 후 계속 변동의 중단을 위한 발효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4) 위원회는 긴급 변동의 연속적인 갱신을 2회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 1-16 강화된 감독 주택.

(a) 목적. 강화된 감독 주택(ESH)의 주요 목적은 수감자의 재활, 좋은 행동 및 심리적, 신체적 웰빙을 증진하는 동시에 수감자와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SH는 직원 및 기타 재소자의 안전과 보안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재소자를 일반 인구와 분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행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치료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ESH 수감자의 재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b) 정책. 수감자가 다른 곳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해당 수감자는 ESH에 감금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했다는 발견에 의해서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1) 수감자가 갇힌 지도자로 확인되었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갇 관련 활동의 조직 또는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2) 수감자가 갇 관련 폭행의 조직자 또는 가해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 (3) 수감자가 부서에 구금되어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베거나 찢거나,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다른 수감자, 방문객 또는 직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적극적으로 수감자 소동에 가담했습니다.
 - (4) 수감자가 부서에 구금되어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투옥되어 있는 동안 메스와 비슷하거나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메스 또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5) 재소자가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폭력에 가담한 경우; 또는
 - (6) 수감자가 부서에 구금되어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이 호의 단락 (1)에서 (5)에 설명된 행위와 유사한 반복적인 활동 또는 중대하고 위험한 행동에 관여했으며 그러한 활동 또는 행동은 반복되는 방화 행위와 같이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직접적이고 식별 가능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그러나 부서가 재소자의 활동이 수감된 당시에 발생했거나 저지른 행동을 고려하도록 허용되는 경우 그러한 활동 또는 행동은 이전 5년 이내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부서가 재소자의 활동이 수감되지 않은 시간에 발생했거나 행해진 행동을 고려하도록 허용되는 경우, 그러한 활동 또는 행동은 이전 2년 이내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c) *제외.*

- (1) 다음 범주의 수감자는 ESH 배치에서 제외됩니다.
 - (i) 18세 미만의 수감자
 - (ii) 2016년 1월 1일 현재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수감자, 필요한 인력 충원 및 필요한 대체 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해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 제공 그리고
 - (iii)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심각한 신체적 장애 또는 상태를 가진 수감자.
- (2) 의료진은 ESH 배치를 검토하고 배치 검토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ESH 배정이 재소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 의료진은 재소자의 ESH 배치가 금지되거나 ESH에서 보다 적절한 주거 단위로 옮겨질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재소자가 투옥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3) 정신 또는 정서적 장애를 보이는 ESH에 배치된 모든 수감자는 ESH 배치 전 또는 즉시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 (4) ESH에 수용된 수감자의 총 수는 항상 25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 *조건, 프로그래밍 및 서비스.*

- (1) 부서가 일반 인구의 수감자에게 부과되는 제한과 다른 ESH 수감자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한, 그러한 제한은 개별 수감자가 제기하는 특정 안전 및 보안 위협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2) 부서가 ESH 재소자의 접촉 방문 접근을 제한하려는 범위 내에서, 이 섹션의 하위 조항 (g)에서 요구하는 대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 청문회는 40의 하위 조항 (h)에 명시된 기준을 다루어야 합니다. RCNY § 1-09 는 부서가 접촉을 제한하고자 하는 재소자 및 개인 방문자 모두에 대해 적용됩니다.
- (3) 늦어도 2015년 7월 1일까지 부서는 ESH 수감자에게 재활 촉진, 폭력의 근본 원인 해결, 게으름.
- (4) ESH의 모든 수감자는 적절한 경우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에 의뢰해야 하는 의료진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만나야 합니다.

(e) *인력 충원.*

- (1) ESH에 배정된 교도관은 ESH와 수감자의 고유한 특성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40시간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훈련에는 정신 질환과 고통에 대한 인식과 이해, 효과적인 의사 소통 기술, 갈등 완화 기술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2) ESH에 배정된 교정 직원의 최소 이십오(25)퍼센트는 고정 직위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f) *ESH 배치 통지.*

- (1) 수감자가 ESH에 감금되어야 한다고 결정되면 해당 수감자는 배치 후 24시간 이내에 그러한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를 읽거나 이해할 수 없는 수용자는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통지는:
 - (i) 수감자의 ESH 배치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사실을 명시합니다. (ii) 수감자의 ESH 감금 기간 동안 교육부가 부과할 개별 제한 사항을 수감자에게 알립니다.
 - (iii) 예정된 ESH 배치 검토 청문회를 재소자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 (iv) 재소자에게 배치 청문회 전에 부서에서 신뢰하는 증거를 검토하고,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고, 고려를 위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증인을 부르고, 증거를 제시할 권리를 알립니다. .

(2) [예약.]

(g) *배치 검토 청문회.*

- (1) 초기 ESH 배치 및 관련 제한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삼(3) 일 이내에 부서는 재소자의 ESH 배치 및 제안된 개별 제한을 판결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정상 참석이 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감자의 문서화된 요청에 의해 연기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5일 이상 연기될 수 없습니다.
- (2) 한 명 이상의 청문회 담당관이 배치 검토 청문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에 ESH 배치를 위해 재소자를 추천했거나 재소자의 ESH 배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한 부서 직원은 재소자의 배치 검토 청문회에서 청문회 담당관으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 (3) 배치 검토 청문회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i) 부서가 이 섹션의 하위 항목 (b)에 따라 수감자를 ESH에 배치하는 데 의존하는 사실에 대한 검토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증거의 우세를 통해 다음을 뒷받침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감자가 현재 ESH가 적절하도록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결론;
 - (ii) ESH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서에서 의존하는 활동 또는 행동의 발생 이후 경과된 시간에 대한 고려;
 - (iii) 부서에서 제안한 개별 제한에 대한 검토 및 해당 개별 수감자와 관련된 합법적인 안전 및 보안 문제의 증거에 의해 각 제한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 (iv) 의료진이 제공한 관련 정보의 고려
 - (v) 제출된 모든 신뢰할 수 있고 관련성 있는 증거 또는 청문회에서 수감자가 한 진술에 대한 고려 그리고
 - (vi) ESH 상태 결정 또는 개별 제한 부과와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증거의 고려.
- (4) 수감자는 심리에 직접 출석하고, 서면 진술을 제출하고, 증인을 부르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수감자는 청문회 진행자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청문회 진행자는 혐의를 명확히 하고, 청문 절차를 설명하고, 증거 수집을 지원함으로써 수감자를 도와야 합니다.
 - (i) 재소자가 문맹이거나 심리 절차를 준비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i) 수감자가 달리 증인이나 중요한 증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6) ESH 배치 및 각 관련 제한이 증거의 우위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치 및 지원되는 각 제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가 수감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ESH 배치 또는 개별 제한의 부과가 증거의 우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ESH 상태 또는 지원되지 않는 개별 제한은 즉시 종료됩니다.

(h) 배치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1) ESH에 수용자를 배치하는 것은 45일마다 검토하여 ESH 외부에 수용되어 계속 ESH 배치가 유지되는 경우 해당 수용자가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중대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시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2) 정기 검토 최소 24시간 전에 재소자에게 보류 중인 검토와 검토를 위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를 읽거나 이해할 수 없는 수용자는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3) 재소자의 ESH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검토 후 7일 이내에 재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면 보고서에 결론을 기록해야 합니다. (i) 지속적인 ESH 배치에 대한 정당성;

(ii) 각 개별 ESH 제한의 지속적인 적절성과 그러한 개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iii) 프로그램 참여 및 이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ESH 배치가 시작된 이후 수감자의 후속 행동 및 태도에 관한 정보;

(iv) ESH 배치 또는 개별 ESH 제한이 재소자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v) 고려를 위해 재소자가 제출한 모든 서면 진술;

(vi) ESH에 수감자를 유지하거나 ESH에서 석방하는 데 유리할 수 있는 기타 요소 또는 개별 ESH 제한 해제에 유리하거나 개별 ESH 제한을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기타 요소 그리고

(vii) 재소자의 ESH 배치가 계속되는 경우 재할 목표를 추가하고 개별 ESH 제한 해제 또는 ESH 해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소자가 착수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또는 행동 변화.

(4)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수감자를 평가하여 ESH 외부의 보다 적절한 주택에 배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i) ESH 이행에 대한 이사회 검토.

(1) ESH 시행 후 육십(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매 육십(60)일마다 부서는 ESH 시행 및 그곳에 수용된 수감자와 관련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 현재 및 시행 이후 ESH에 수용된 수감자 수;

(ii) ESH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이 섹션의 세부 항목 (b)에 명시된 각 기준이 사용되는 빈도;

(iii) ESH 시행 이후 ESH와 일반 인구의 폭력 비율 및 ESH 시행 이전 비슷한 기간 동안의 폭력 비율;

(iv) ESH 시행 이후 ESH와 일반 대중 모두의 무력 사용 비율;

(v) ESH 재소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정신 건강 자원, 그리고 각 프로그램 및 자원에 대한 재소자의 참여 범위

(vi) ESH에 배정된 교정 담당관이 받은 교육 및 ESH에서 생성된 고정 직위의 수;

(vii) 처음에 ESH에 배정되었지만 배치 검토 청문회에서 ESH 상태가 종료된 수감자 수;

(viii) 정기 검토 또는 기타 ESH 상태 검토 메커니즘을 통해 ESH에서 일반 인구로 석방된 수감자 수 그리고

(ix) 부서 또는 이사회가 ESH에 대한 이사회의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데이터.

(2) 위원회는 부서에서 제공한 정보 및 ESH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ESH 시행 후 18개월 및 ESH 시행 후 최소 2년 이내에 이사회는 ESH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적절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폐기된 시 기록 2021년 6월 9일, 발효 2021년 11월 1일, 긴급 행정 명령 번호 297에 의해 복원됨, 2021년 11월 23일*)

* 편집자 주: 이 섹션은 2021년 11월 1일자로 폐지되었지만 2021년 11월 23일자 긴급 행정 명령 번호 297에 의해 한 가지 변경 사항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긴급 행정 명령 297의 섹션 2는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에 수정 최소 기준 섹션 1-16 및 1-17 (40 RCNY §§ 1-16 및 1-17)에 따라 본인은 이 긴급 행정 명령이 연장되는 동안 유효한 최소 표준 섹션 1-16 및 1-17 그러한 폐지가 발효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유효하고 교정부의 운영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긴급 행정 명령 번호 241의 섹션 7에 따라 최소 기준 섹션 1-16 (c)(i)(ii)는 교정부가 해당 연령 미만의 구금 대상자를 계속 할당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합니다. 22개에서 향상된 감독 주택으로."

§ 1-17 징벌적 분리 사용에 대한 제한.

(a) 정책. 부서에서 시행하는 바와 같이, 징벌적 분리는 부서 시설의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처벌입니다. 특히, 징벌적 분리는 부과되어서는 안 되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더욱이, 징벌적 분리는 재소자의 투옥 과정에서 범한 특정 범죄를 다루기 위한 것이며 별도의 이전 투옥 기간 동안 동일한 수감자가 범한 범죄와 관련하여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b) 제외.

(1) 다음 범주의 수용자는 징벌적 분리에서 제외된다.

(i) 18세 미만의 수감자

(ii) 2016년 1월 1일 현재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수감자, 필요한 인력 충원 및 필요한 대체 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해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 제공 그리고

(iii)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심각한 신체적 장애 또는 상태를 가진 수감자.

(2) 이 규정에 따라 징벌적 격리 배치가 수감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 의료진은 수감자의 징벌적 격리 배치를 금지할지 또는 징벌적 격리에서 이동해야 하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더 적절한 주택 단위로 분리합니다.

(3)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위반시 징벌적 분리에서 제외된 수감자는 그 이후의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위반에 대해 추후에 동일한 위반에 대해 징벌적 분리에 배치되어서는 아니된다. 변경되었습니다.

(4) 수용자는 3급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징벌적 분리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c) 적법 절차.

(1) 이 호의 단락 (2)에 규정된 위반 심리에 앞서, 수감자는 수감자에 대한 혐의와 혐의를 야기한 수감자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를 읽거나 이해할 수 없는 수용자는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재소자가 서면으로 더 짧은 기간에 동의하지 않는 한, 통지는 위반 청문회 시작 24시간 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2) 청문회 전 구금(PHD) 자격이 있고 구금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수감자들은 징벌적 격리 주택에 배치되기 전에 위반 청문회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이 있고 PHD에 배치

된 수감자는 PHD 배치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위반 청문회를 받아야 하며, 위반 청문회 전에 PHD에서 보낸 시간은 재소자의 징벌적 분리 선고에 포함됩니다.

- (3) 재소자는 위반 청문회에서 직접 출석하고 진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호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 (4) 다음 상황에서 수감자는 청문회 진행자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청문회 진행자는 혐의를 명확히 하고, 청문 과정을 설명하고, 증거 수집을 지원함으로써 수감자를 도와야 합니다.
 - (i) 재소자가 문맹이거나 심리 절차를 준비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ii) 수감자가 달리 증인이나 중요한 증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 (5) 부서는 모든 수감자 징계 절차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수감자의 유죄는 징벌적 분리 배치를 정당화하는 증거의 우위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 (d) *징벌적 분리에 대한 시간 제한.*

(1) 재소자가 이 호의 단락 (4)에 설명된 바와 같이 직원에 대한 심각한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수감자는 단일 위반에 대해 30일 이상의 징벌적 격리를 선고 받을 수 없습니다.

(2) 재소자가 이 호의 단락 (4)에 설명된 직원에 대한 심각한 폭행에 대해 징벌적 분리 형을 복역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수감자를 연속 30일 이상 징벌적 분리 에 구금할 수 없습니다. 수감자가 이 호의 단락(4)에 설명된 대로 직원에 대한 심각한 폭행으로 징벌적 분리형을 복역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징벌적 분리형에서 연속 삼십(30)일 을 복역한 수감자는 최소 그 수감자가 징벌적 분리로 돌아가기 7일 전에.

- (3) 수감자는 육(6) 개월 기간 내에서 총 육십(60) 일을 초과하여 징벌적 격리에 구금될 수 없습니다. 자해 이외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력 행위를 계속하여 징벌적 격리 이외 의 배치는 수감자 또는 직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 (i) 그러한 경우, 부서는 육십(60) 일이 경과한 후에 징벌적 격리에서 수감자를 석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 (ii) 부서장은 징벌적 격리 배치의 연장을 서면으로 승인하고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감자 또는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iii) 부서는 즉시 위원회와 관련 교정 보건 당국에 부서장의 서면 승인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부서의 "A" 무력 사용 사건의 정의에 따라 직원에게 하나 이상의 중상을 입힌 직원에 대한 폭행으로 징벌적 분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최대 60(해당 단일 위반에 대해 60일.

- (i) 부서장 또는 피지명인은 30일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한 심각한 폭행에 대한 징벌적 분리 선고를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면 승인 또는 비승인은 즉시 재소자, 위원회 및 관련 교정 보건 당국에 보내져야 합니다.
- (ii) 재소자가 30일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한 심각한 폭행으로 징벌적 분리 형을 복역하는 동안 부서는 연속 30일 후에 징벌적 분리 수용소에서 재소자를 석방할 필요가 없습 니다.
- (iii) 직원에 대한 심각한 폭행에 대한 수감자의 징벌적 분리형 선고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부서장 또는 피지명인은 판결 시작 후 45일 후에 형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수감자가 남은 형 동안 사용 가능한 대체 주택에 안전하게 배치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즉시 재소자, 위 원회 및 관련 교정 보건 당국에 보내져야 합니다.

(5) 이 항 (4)의 (iii)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감자가 징벌적 분리를 보낸 연속 45일이 경과할 때마다 부서장 또는 피지명인은 다음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십오(45)일에 수감 자의 복역 시간을 검토하여 수감자가 복역 중인 나머지 형기 동안 대체 주택에 안전하게 배치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는 서면으로 명시되 어야 하며 즉시 재소자, 위원회 및 관련 교정 보건 당국에 보내져야 합니다.

(6) 징벌적 격리에 수감된 수감자 중 30일 이상 연속으로 수감되었거나 육(6) 개월 기간 내에 육십(60)일 이상 복역한 수감자에게는 매일 정신 건강 회진을 제공해야 합니 다. 이러한 라운드는 서면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부서는 수감자가 징벌적 격리에 장기간 머물게 한 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인지 행동 치료 또는 유사한 증거 기반 개입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관련 교정 보건 당국과 협의하여 개발해야 합니다.

- (e) *필요한 셀 외부 시간.* 비폭력 또는 2등급 범죄에 대한 처벌로 징벌적 분리에 국한된 수감자는 하루에 최소 7시간의 교도소 밖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 (f) *인력 충원.*

(1) 징벌적 격리 수용소에 배정된 교도관은 징벌적 격리 및 그 수용자의 고유한 특성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40시간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훈련에는 정신 질환 과 고통에 대한 인식과 이해, 효과적인 의사 소통 기술, 갈등 완화 기술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 징벌적 격리 수용소에 배정된 교정 직원의 최소 이십오(25)퍼센트는 고정 직위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g) *이전 투옥으로 인한 징벌적 분리 기간.* 이 조의 발효일 현재, 어떤 수감자가 형벌을 받았지만 징벌적 분리에서 복역하지 않은 별도의 이전 구금 시설에 배정되거나 징벌적 분리에 구금되어서는 안 됩니다.

(h) *징벌적 분리에 대한 보고서.*

(1) 이 장의 40 RCNY § 1-16 에 규정된 강화된 감독 주택의 구현 후 육십(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매 육십(60)일마다 부서는 다음의 구현과 관련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 해야 합니다. 징벌적 분리에 대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i) 징벌적 격리에 수감된 수감자의 수 및 징벌적 격리에 수감되기를 기다리는 수감자의 수
- (ii) 징벌적 격리 형의 길이 및 징벌적 격리 형을 초래하는 범죄 유형의 빈도와 관련된 데이터;
- (iii) 징벌적 분리형 선고를 구십(90)일에서 삼십(30)일로 축소한 상태 및 징벌적 분리의 사용 및 체류 기간을 줄이기 위한 기타 노력;
- (iv) 재소자가 징벌적 분리로 돌아가기 전에 최소 7일 동안 징벌적 분리에서 석방되도록 요구하는 부서의 계획된 정책의 이행 상태;
- (v) 직원에 대한 심각한 폭행에 대해 재소자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31일에서 45일 사이의 징벌적 분리 형의 수, 해당 형이 부서장의 승인 여부에 따라 분류됨 또는 피지명인
- (vi) 직원에 대한 심각한 폭행에 대해 수감자에게 주어진 기간 중 45일을 초과하는 징벌적 분리 선고의 수, 해당 형이 부서장 또는 피지명인에 의해 승인 또는 승인되지 않았 는지 여부;
- (vii) 부서장 또는 피지명인이 시작 후 45일 동안 검토한 징벌적 분리 형의 수 및 이 검토의 결과 수감자가 다음 기간 동안 대체 주택에 배치된 경우의 수 문장의 나머지 부 분;
- (viii) 육(6) 개월 기간 동안 총 육십(60) 일 이상 수감자를 징벌적 격리에 구금하기 위해 부서장에게 제출한 요청의 수. 부서장;

(ix) 40 RCNY § 1-17 (d)(3) 에 따라 징벌적 분리에 2회 이상 배치된 수감자 수 ;

(x) 현재 수감 기간 동안 징벌적 분리에 수용된 현재 부서 구금 중인 수감자 수: 일(1)~삼십(30)일, 삼십일(31)~육십(60) 일, 육십일(61)~구십(90)일, 구십일(91)~백이십 (120)일 및 백이십(120)일 이상;

(xi) 현재 징벌적 분리에 수용되어 있는 수감자 중 연속적으로 수용된 수: 일(1) ~ 삼십(30)일, 삼십일(31)~육십(60)일, 육십일 (61) ~ 90일, 91 ~ 120일, 120일 이상

(xii) 징벌적 격리 형의 기간을 줄이고 징벌적 격리에 수용되는 수감자의 수를 줄이는 데 필요한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는 계획 및 일정

(xiii) 징벌적 격리에 수감된 수감자들에게 제공되는 오락의 양과 감옥 밖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xiv) 부서 시설에서 징벌적 분리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서 또는 위원회가 판단하는 기타 정보.

(2) 2016년 6월 1일까지 부서는 징벌적 분리 감금 연장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징벌적 분리에 수용되거나 해제된 수감자가 저지르는 지속적인 폭력을 줄이기 위한 옵션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권장 솔루션이 직원과 재소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부서 시설의 보안을 증진하며 재소자의 성공적인 재입원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ii) 교육부가 고려한 기타 조치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및 주택을 포함하여 부서가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할 계획을 설명합니다.

(iii) 각 옵션의 장단점, 그리고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포함하여 각 옵션을 구현하는 다양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iv) 효과적인 징계 시스템 및 징벌적 분리에 대한 대안에 대해 부서에서 수행한 연구에 대한 설명과 폭력 범죄자를 안전하게 수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 프로그램 및 장소를 식별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수정된 시 기록 2015년 12월 24일, 2016년 1월 23일, 폐지된 시 기록 2021년 6월 9일, 2021년 11월 1일, 긴급 행정 명령 번호 297에 의해 복원됨, 2021년 11월 23일*)

*** 편집자 주:** 이 섹션은 2021년 11월 1일부로 폐지되었지만 2021년 11월 23일자 긴급 행정 명령 번호 297에 의해 복원되었습니다. 긴급 행정 명령 297의 섹션 2는 다음과 같이 제 공합니다. 2021년 11월 1일에 표준 섹션 [1-16](#) 및 [1-17](#) (40 RCNY §§ [1-16](#) 및 [1-17](#))에 따라 본인은 이 긴급 행정 명령이 연장되는 동안 유효한 최소 표준 섹션 [1](#) 을 [지시합니](#) [다. -16](#) 및 [1-17](#) 그러한 폐지가 발효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유효하고 교정부의 운영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긴급 행정 명령 번호 241의 섹션 7에 따라 최소 기준 섹션 [1-16](#) (c)(i)(ii)는 교정부가 해당 연령 미만의 구금 대상자를 계속 할당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합니다. 22개에서 향상된 감독 주택으로."

면책 조항: 면책 조항: 이 사이트에 나타나는 강령 및 기타 문서는 시에서 채택한 최신 법률 또는 규칙을 아직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American Legal에 제공되고 이 웹사이트가 생성된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로 인해 특정 텍스트 오류 및 누락이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 및 누락이 수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오류를 발견한 사용자는 NYC.editor@amlegal.com 또는 800-445-5588로 게시자에게 연락하거나 NYCCodeRulesCharter@law로 뉴욕 시 법률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yc.gov.

주최: American Legal Publishing Corporation

2장: 정신 건강 최소 기준

§ 2-01 서비스 요청.

정신 질환의 감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는 뉴욕시 교정국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뉴욕시 보건부 또는 계약된 서비스 제공자*, 교정부는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을 제공하기 위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a) 위기 개입 및 급성 정신병 에피소드의 관리;
- (b) 자살 예방;
- (c) 정신 질환의 안정화 및 구금 시설에서의 심리적 악화 완화 그리고
- (d) 자원이 허용하는 경우 선택적 치료 서비스 및 예방 치료.

§ 2-02 식별 및 탐지.

- (a) **정책.** 정신 건강 평가가 필요한 재소자의 적시 식별을 촉진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b) **심사 접수.**

(1) 정신 및 정서장애에 대한 선별검사는 일반수용 전에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초기 심사는 재소자가 교정 시설에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검진은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 또는 적절하게 훈련된 의료 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스크리닝은 의료 접수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보건부는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부의 승인을 받아 심사를 받을 때 검토할 주제를 설정하는 서면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검토에는 신경정신과 입원을 포함한 정신과 병력, 정신 건강 전문가와의 접촉, 자살 충동 및 폭력 행동, 망상 또는 환각의 병력 또는 존재, 기분, 방향에 대한 행동 관찰을 기반으로 한 평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의식 장애, 심한 정신 지체의 징후 및 심각한 호소 증상.

(4) 섭취 심사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모든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부가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부의 승인을 받아 개발해야 하는 표준 서면 정신 건강 섭취 양식에 조사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5) 접수 심사에는 이용 가능한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절차가 포함됩니다.

(i) 재소자는 이용 가능한 정신 건강 서비스, 해당 서비스의 기밀성 및 접근 절차를 설명하는 영어 및 스페인어로 된 서면 통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ii) 교정부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를 문맹 수감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모국어가 영어나 스페인어가 아닌 수감자들에게 번역 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 (c) **직원 교육.**

(1) 모든 교정 담당관과 의료 서비스 직원은 정신 및 정서적 장애의 인식에 관해 교정, 보건 및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 부서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에서 훈련 및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다음 영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i) 재소자 집단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정신 및 정서적 장애의 징후와 증상의 인식
- (ii) 화학적 의존의 징후와 마약 및 알코올 금단 증상의 인식;
- (iii)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부작용의 인식;
- (iv) 발달 장애, 특히 정신 지체의 징후 인식;
- (v) 잠재적인 정신 건강 비상 사태의 유형 및 이러한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 재소자에게 접근하는 방법;
- (vi) 정신 건강 재소자의 의학적 문제의 식별 및 의뢰;
- (vii) 자살 예방; 그리고
- (viii) 추가 평가를 위해 재소자를 정신 건강 서비스에 즉시 의뢰할 수 있는 적절한 경로와 그러한 의뢰를 관리하는 절차.

(2) 이 기준의 발효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모든 여행의 모든 주거 지역에는 생명 유지 심폐 소생술을 포함한 기본 응급 처치의 적용에 대해 교육을 받은 최소 한 명의 장교가 있어야 합니다.

(3)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적합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합니다.

(i) 모든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의 오리엔테이션,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위해 보건부가 개발하고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부가 승인한 서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ii) 현직 교육에는 시간제 직원에 대해 비례 배분되는 주당 1시간 이상, 주당 1시간 이상의 정기적인 개별 감독이 포함됩니다.

- (d) **관찰 보조원.**

(1) 잠재적인 자살 위험으로 식별된 수용자를 모니터링하고 이전에 자살 행동의 경고 신호를 식별하지 못한 수용자를 인식하도록 훈련된 관찰 보조원의 조직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 관찰 구역에 수용된 수감자를 포함하여 수감자는 관찰 보조원으로 고용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2) 서면 절차는 교정 및 보건부가 개발하고,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찰 보조원의 선택 기준, 그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정의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을 종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을 따르십시오.

(i) 관찰 보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교정부는 두 기관 간의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보건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ii) 관찰 보조원은 재소자가 자살 위험이 있거나 즉각적인 자살 위험이 있거나 기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교정 또는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에게 즉시 알리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3) 감찰원은 정신감시, 징벌적 격리, 행정적 격리, 신규입원 등 주거지역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고용되어야 합니다.

§ 2-03 진단 및 의뢰.

(a) **정책.** 교정 및 건강 부서는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 부서의 승인을 받아 행동이 정신 또는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감자의 즉각적인 평가 및 적절한 추천을 제공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 응급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즉각적인 평가 및 치료.

- (b) **접근.**

(1)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비응급 접근이 있어야 합니다. 재소자는 예비 평가를 위해 스스로를 회부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의 진찰을 받아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이 회부한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교정국은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이 24시간 이내에 요청 통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2) 재소자는 응급 정신과 치료 및 급성 정신과적 에피소드의 관리를 위해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에게 24시간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고한 모든 수감자는 긴급 평가를 위해 회부되어야 한다.
- (ii) 긴급 평가를 기다리는 수감자는 수감자와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원의 긴밀한 감독과 충분한 보안을 갖춘 특별히 지정된 구역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 (iii) 교정 및 보건부는 긴급 평가 의뢰를 위한 서면 양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3) 교정 직원 및 의료 서비스 직원은 정신 또는 감정 장애의 징후를 보이는 일반 인구 수감자를 정신 건강 서비스에 의뢰해야 합니다. 의뢰의 근거가 되는 행동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표준 서면 절차는 보건 교정국에서 개발해야 합니다.

(4) 교정부는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의 최대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에스코트 요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정국은 평가 또는 후속 조치를 요청받은 재소자가 같은 날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에게 호송되도록 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수감자가 아직 구금되어 있는 모든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 2-04 치료.

(a) ~~정책~~ 적절한 정신 건강 관리는 보살핌과 치료를 용이하게 하고 최대한의 관찰을 제공하며 자살 위험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환경에서 수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는 수감자는 다른 모든 면에서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는 경우 다른 모든 수감자와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b) ~~적절성 기준~~.

(1) 보건부는 현재의 전문 표준에 따라 적절한 정신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신 건강 직원, 용품 및 장비를 정의하는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국이 승인하는 서면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2) 보건 교정부는 현재의 전문 표준에 따라 적절하고 적절한 주거 및 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정의하는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부가 승인하는 서면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의 관리.

(3) 이 기준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기준을 이 기준의 개정안으로 공포하기 위해 교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c) ~~프로그램~~.

① 정신·정서장애 등으로 세심한 감독이 필요한 수형자 및 그 장애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수형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별주택을 제공한다.

- (i) 24시간 관찰 보조원은 특별 주택 지역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 (ii) 배치된 첫 해에 35시간 이상의 특별 훈련을 받은 교정관은 이 지역의 고정 직위에 배치됩니다. 이러한 임원은 매년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 교정국은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시간을 명시하여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국이 승인하는 서면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합니다.
- (iii) 특별 주거 지역에 배치된 수감자들은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인터뷰해야 합니다.
- (iv)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의 개별 구성원은 각 특별 주택 지역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 (v) 교정부는 자살 가능성이 있는 재소자를 관찰하기 위한 특별 주택으로 기숙사 공간을 할당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2) 교정 및 보건부는 정신 관찰을 위한 특별 주거 지역에 대한 입원 및 퇴원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기준 및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 (i) 정신 관찰을 위해 특별 주거 지역에서 수감자를 입원 및 퇴원시키는 것은 정신 건강 서비스의 특권이다.
- (ii) 특수 주택에 수감자를 배치하는 것은 정신 건강 서비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검토해야 합니다.

(3) 정신 관찰을 위한 특별 수용소에 배치된 각 수용자와 정신 또는 감정 장애 약물이 처방되는 모든 수용자에 대해 치료 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개별화된 치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i) 치료 팀에는 치료 팀이 평가한 각 재소자를 개인적으로 검사하는 정신과 의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ii) 재소자를 돌보는 치료 팀의 구성원은 치료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신과 의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 (iii) 서비스 국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모든 치료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 (iv) 보건부는 치료 계획의 성격과 특수성을 정의하는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 부서에서 승인할 서면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 (v) 수감자가 특별 주택에 배치된 후 3일 이내에 초기 치료 계획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치료 계획은 배치 후 1주일 이내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 (vi)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이 최소 2주마다 치료 계획을 검토하고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검토와 수감자의 진행 상황은 모두 의료 차트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vii) 약물 제공 이외의 다양한 치료 방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 급성 정신과적 삽화의 관찰, 평가 및 치료에 적합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5) 필요한 경우 수감자는 뉴욕주 교정법 §§ 402 및 508에 따라 시립 병원 교도소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6) 발달 장애로 식별된 수감자는 72시간 이내에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정신 건강 서비스 직원은 그러한 발달 장애로 인해 수감자가 특수 주택 또는 기타 시설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교정부에 권고해야 합니다. 일반 수감자와 분리:

- (i) 발달 장애로 고통받는 수감자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구역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 (ii) 정신 건강 서비스에 의해 재소자의 발달 장애로 인해 재소자가 교정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임상적으로 금기인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교정부는 즉시 법원에 통지하고 서면 통지를 재소자의 법원 서류.

(7) 보건 교정부는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재소자를 식별하기 위해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부가 승인한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확인된 수감자는 교정 및 보건부가 승인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회부됩니다. 해독은 필요한 관리 수준에 적합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d) ~~사전 동의~~. 여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 건강 치료는 우수한 임상 관행에 따라 제안된 치료의 위험과 이점을 공개한 후 재소자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보건 및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부는 이 섹션의 시행을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수감자의 사전 동의를 문서화하기 위한 서면 양식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e) ~~치료를 거부할 권리~~. 시는 긴급 상황에서 그 사람이 정신 장애나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수감자의 동의 없이 수감자의 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음 조건에 따라 수감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감자가 검사, 치료 또는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치의는 자신의 최선의 전문적 판단에서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만 사용해야 합니다.

- (2) 이러한 조치는 서면 의료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이러한 조치는 관찰 기간, 수감자의 상태, 수감자가 제기하는 위협 및 제안된 특정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담당 의사의 수감자 차트에 적절한 설명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재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소자를 치료하라는 명령은 재소자의 의료 기록에 대한 검토 및 갱신 및 적절한 표기 없이는 24시간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5) 교정 및 보건부는 특정 동의에 대한 재소자의 거부를 문서화하는 서면 양식의 사용을 포함하여 이 호의 시행을 위해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검사, 절차 또는 약물.

§ 2-05 약물.

- (a) **정책.** 약물은 억제 방법이나 통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치료 계획의 한 측면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40 RCNY § 2-04 (c)(3)에 정의됨).
- (b) **절차.**
 - (1) 보건부는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약물의 처방, 조제, 투여 및 검토를 관장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i) 정신 및 감정 장애에 대한 약물은 정신과 의사가 아닌 의사가 정신 및 감정 장애에 대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신과 의사만 처방해야 합니다. 그러한 처방은 24시간 이내에 정신과 의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 (ii)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정신 및 감정 장애에 대한 약물은 재소자가 지난 6개월 이내에 상세한 임상 병력을 포함하는 신체 검사를 받지 않은 한 그 재소자에게 처방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처방 의사는 먼저 의료 차트와 수감자가 받고 있는 다른 모든 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 (iii) 약물은 적절하게 훈련된 의료 또는 의료 서비스 직원에 의해서만 투여되어야 합니다.
 - (2) 향정신성 약물은 치료 계획에 따라 임상적으로 지시된 경우에만 조제되어야 합니다.
 - (i)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모든 처방에는 중지 명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처방은 2주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ii)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받는 모든 수감자는 처방 정신과 의사가 보고 평가해야 하며, 응급 상황의 경우 정신과 의사가 아닌 의사가 40 RCNY § 2-05 (b)(1)(i)에 따라 약물을 처방합니다. 안정될 때까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 이후에는 의료진이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검토하는 정신과 의사;
 - (iii)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은 여성 수감자는 임신 중에 그러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려야 하고 임신 검사를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 (c) **약국.**
 - (1) 재고 의약품이 교정 시설 내에서 유지되는 경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시설에 보관된 의약품 처방집을 개발 및 유지해야 합니다.
 - (2) 보건 교정부는 모든 통제 물질, 주사기, 바늘 및 수술 기구의 최대 보안 보관 및 주간 재고를 제공하기 위한 서면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i) "규제 물질"은 미국 법무부의 마약 단속국에서 열거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 (ii) 이 정책에 대한 서면 통지는 최대 보안 보관 하에 있는 모든 규제 물질 또는 품목에 대한 잠재적인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d) **연구.** 뉴욕시 교정국에서 구금 중인 모든 수감자와 관련된 생물 의학 또는 행동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른 연구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됩니다.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2-06 제한 및 격리.

- (a) **정책.** 교정 및 보건부는 정신 또는 정서적 장애로 관찰 또는 치료를 받는 재소자의 신체적 구속 및 격리를 관리하는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부의 검토에 따라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뉴욕주 정신위생법에 따라 제지 또는 격리는 직원의 편의를 위한 처벌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b) **정의.**
 - 물리적 구속.** "물리적 구속"은 수감자의 팔 및/또는 다리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수감자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감자가 도움 없이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 (i) 보건 및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국은 허용되는 형태의 신체적 억제를 정의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 (ii) 어떠한 경우에도 수감자를 제지하기 위해 금속 수갑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금지는 수감자를 수송하는 동안 적절한 보안 예방 조치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iii) 긴급 상황에서 수감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제시하면 정신과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수갑을 포함하여 수감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교정 직원은 즉시 정신 건강 직원에게 통지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즉시 응답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통지 후 1시간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근무 중인 시설 정신과 의사가 없는 경우 교정 요원은 즉시 정신과 의사가 있는 시설로 수용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 격리.** "격리"는 수용 지역의 다른 수감자들이 자신의 감방을 잠글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정상적인 잠금 기간 동안 수감자를 자신의 감방에 두거나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격리실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 (i) 격리실 또는 격리실이 이용 가능한 경우 직원이 수용자를 적절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격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 (ii)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징계 목적(징벌적 분리)을 위해 수감자의 폐쇄 권리를 제한하는 교정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c) **절차.**
 - (1) 정신 또는 정서적 장애로 관찰 또는 치료를 받는 수용자를 신체적 구속 또는 격리의 사용은 근무 중인 정신과 진료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 (2)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포함하는 정신과 의사의 직접적인 서면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신체적 구속 또는 격리는 정신과 의사가 재소자를 진찰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정신 건강 데이터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i) 수감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경우
 - (ii) 이러한 폭력 가능성은 재소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 건강 장애의 결과입니다.
 - (iii) 이러한 조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치료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 (iv) 사용 가능한 다른 모든 대안은 부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습니다.
 - (4) 감금 또는 격리된 수감자는 지속적인 관찰을 받아야 하며 지속적인 제한 조치의 필요성은 간호 또는 정신 건강 직원이 평가해야 합니다.
 - (i) 구속의 사용은 15분마다 평가되어야 하고 격리는 30분마다 검토되어야 합니다.
 - (ii) 그러한 검토의 서면 결과는 재소자의 의료 차트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iii) 활력징후(체온, 맥박, 혈압 및 호흡)는 매시간 기록되어야 한다.

(5) 구속 또는 격리의 대상이 된 수감자는 2시간마다 석방하고 화장실에 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정신과 의사는 지속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어도 2시간마다 한 번씩 감금 또는 격리된 수감자를 평가해야 합니다.

(7) 수감자를 구속 또는 격리하라는 명령은 2시간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그러한 명령은 수감자의 상태를 평가한 후 정신과 의사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8) 4시간 후에도 수감자가 너무 동요하여 석방되지 않으면 수감자는 시립 병원 교도소 병동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 2-07 기밀성.

(a) ~~정책~~. 치료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기밀 유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정 및 보건부는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부의 승인을 받아 정보 보급에 관한 서면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b) ~~정보 공유~~.

(1) 정신 건강 서비스는 재소자가 다음과 같이 식별되는 경우 교정 직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i) 자살 충동;

(ii) 살인;

(iii) 자신이나 타인에게 명백한 위험이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iv) 도주 또는 폭동의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제시합니다.

(v) 항정신성 약물을 받는 것; 또는

(vi)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전학을 요구하는 경우.

(2) 교정 보건부는 위의 40 RCNY § 2-07 (b)(1)에 설명된 대로 정보를 통지받을 교정 담당자와 통지 방법을 지정하는 명시적인 서면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c) ~~기록~~.

(1) 정신건강기록은 격리기록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안전한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각각의 중요한 재소자 접촉은 차트에 실질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메모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2) 정신 건강 기록은 뉴욕시 교정국 내의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재소자가 이송될 때 재소자와 함께 이전되어야 합니다. 기록 요약본은 시립 병원 교도소 병동으로 이송된 각 수감자에게 첨부되어야 합니다. 정신 건강 기록을 교정국 관할 외부로 이전하라는 요청이 접수되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재소자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 2-08 조정.

(a) ~~정책~~. 교정 및 보건부는 양질의 정신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활동을 협의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b) ~~징계~~.

(1) 보건 교정부는 정신 관찰을 위한 특별 주거 지역의 수감자가 위반 혐의로 기소될 때마다 정보를 제공하고 위반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면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취해야 할 징벌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2) 징벌적 격리 배치가 수용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 의료진은 수용자를 그러한 배치에서 금지하거나 징벌적 격리에서 보다 적절한 주거지로 이동하도록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단위. 이러한 결정은 수감자가 징벌적 분리에 배치되는 동안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징벌적 격리 상태에 있는 모든 수감자들은 적절한 경우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에 의뢰하는 의료진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만나야 합니다.

(c) ~~회의~~. 시설 관리자, 해당 시설의 정신 건강 서비스 수석 대표, 의료 및 간호 직원 대표를 포함한 월간 회의를 열어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회의에는 서면 의제와 의사록 작성 및 배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 ~~평가~~.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부는 뉴욕시 교정 시설에서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의 품질, 효과 및 수행 수준에 대한 공식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 2-09 차이.

(a) ~~정책~~. 이러한 최소 표준의 영향을 받는 부서는 준수를 달성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표준의 특정 하위 부문 또는 섹션과의 차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지정된 기간 동안 특정 하위 부문 또는 섹션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위원회가 부여한 면제입니다.

(b) ~~시행일 이전의 차이~~. 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특정 하위 부문 또는 섹션의 구현 날짜 이전에 변경 사항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선의 노력과 다른 뉴욕시 공무원 및 기관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행 날짜까지 세부 조항 또는 섹션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습니다. 또는

(2) 준수는 하위 항목 또는 섹션에 지정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합니다.

(c) ~~차이 적용~~. 변경 신청은 시행일로부터 최소 45일 전에 부서 국장이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1) 문제가 되는 특정 하위 부문 또는 섹션,

(2) 이행 날짜까지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에서 취한 노력;

(3) 시행일까지 완전한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사유;

(4) 완전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예상 및 일정;

(5) 엄격한 준수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세부 항목 또는 섹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계획; 그리고

(6) 변경이 요청되는 기간. 단,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d) ~~변동 절차~~.

(1)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이사회는 모든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이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위원회는 DM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된 방식으로 변경 신청서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하위 부문 또는 섹션의 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발생합니다.

(3) 위원회는 변경 신청서에 대한 공개 회의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시행일 최소 21일 전에 모든 이해 관계자의 증언을 청취해야 합니다.

(4) 변경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5) 위원회의 결정은 시행일 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40 RCNY § 2-09 (d)(2)에 의해 제공된 방식으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e) 차이의 승인.

- (1) 위원회는 변경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변경을 승인해야 합니다.
- (2) 변동을 승인하면 위원회는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i) 변동의 기간 그리고
 - (ii) 변동에 대한 조건으로 부과된 모든 요구 사항.
- (f) *변동의 갱신*. 변경 갱신 신청서는 40 RCNY §§ 2-01 (b), 2-01 (c), 2-01 (d) 및 2-01 에 제공된 원래 신청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사형). 위원회는 원래 신청서 승인을 위한 요구 사항 외에도 이전에 규정된 시간 제한 내에 하위 항목 또는 섹션을 준수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한 변경 갱신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 (g) *시행일 이후 긴급 변동*. 부서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 해당 하위 부문 또는 섹션을 계속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특정 하위 부문 또는 섹션의 구현 날짜 이후에 변경 사항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 *긴급 변동 적용*.
- (1) 비상 사태로 인해 특정 하위 부문 또는 섹션을 계속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부서 또는 피지명인이 24시간 미만의 변동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또는 지명자는 긴급 상황 및 변동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2) 24시간 이상의 긴급 변동 신청 또는 비상 변동 갱신 신청은 부서 국장 또는 피지명인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i) 문제가 되는 특정 하위 부문 또는 섹션,
 - (ii) 지속적인 준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정 사실 또는 이유,
 - (iii) 완전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예상 및 일정 그리고
 - (iv) 변동이 요청되는 기간. 단, 5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i) *긴급 변동 승인*.
- (1) 위원회는 변경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긴급 변경을 승인해야 합니다.
- (2) 위원회가 이전에 승인한 긴급 변동의 갱신은 40 RCNY §§ 2-09 (g), 2-09 (h)(2) 및 2-09 (i)(1) 충족되었습니다.
- (3) 위원회는 긴급 변동의 연속적인 갱신을 2회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면책 조항: 면책 조항: 이 사이트에 나타나는 강령 및 기타 문서는 시에서 채택한 최신 법률 또는 규칙을 아직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American Legal에 제공되고 이 웹사이트가 생성된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로 인해 특정 텍스트 오류 및 누락이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 및 누락이 수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오류를 발견한 사용자는 NYC.editor@amlegal.com 또는 800-445-5588로 게시자에게 연락하거나 NYCCodeRulesCharter@law로 뉴욕 시 법률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yc.gov.

주최: American Legal Publishing Corporation

3장: 의료 최소 기준

§ 3-01 서비스 목표 및 목적.

(a) 목적.

(1) 다음의 최소 의료 기준은 뉴욕시 교정 시설의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법적 요건, 인정되는 전문 기준, 건전한 전문적 판단 및 관행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 표준은 뉴욕시 교정 시설 또는 기타 의료 시설에서 뉴욕시 교정국(DOC)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 모든 수감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b) **서비스 목표.** 의료 및 치과 장애의 감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는 뉴욕시 교정국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 모든 수감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정부 및 보건 당국은 보건부(DOH) 및 보건 및 병원 공사(HHC)와 협의하여 다음을 제공하기 위한 보건 관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1) 전문적인 기준과 건전한 전문적인 판단과 전문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의료 및 치과 진단, 치료 및 적절한 후속 관리;

(2) 응급 의료 및 치과 치료의 관리 및 관리;

(3) 건강 관리 전달 시스템에서 각자의 역할에 적합한 건강 관리 직원 및 교정 직원의 정기적인 훈련 및 개발 그리고

(4)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의 품질을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c) 정의.

교도소장. "교도소장"이라 함은 시설에 배정된 최고 직위의 교도관(보통 소장)을 말한다.

만성 치료. "만성 간호"는 장기간에 걸쳐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천식 및 간질의 치료가 그 예입니다.

회복기 케어. "요양 치료"는 질병이나 부상의 회복을 돕기 위해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비상. "응급" 의료 또는 치과 치료는 수감자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과도한 고통을 초래하지 않고 다음 예정된 병가 또는 진료소까지 연기할 수 없는 급성 질병 또는 예기치 않은 건강상의 필요에 대한 치료를 의미합니다.

시설. "시설"은 자체 명령으로 운영되는 모든 감옥 또는 상위 시설에서 도보 거리 내에 있지 않은 감옥 별관을 의미합니다.

플로우 시트. "흐름표"는 데이터와 시간 관계가 복잡한 문제(예: 당뇨병 재소자의 순차적 공복 혈당)에 대한 모든 임상 및 실험실 변수를 포함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건당국. "보건 당국"은 뉴욕시 교정국에서 수감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뉴욕시에서 지정한 의료 기관을 의미합니다. 책임이 계약상 외부 공급자와 공유되는 경우 이 조건도 적용됩니다.

건강 관리 직원. "의료인"은 직업에서 규정한 자격을 충족하고 뉴욕주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격 증명과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의료인은 의사, 의사 보조원 및 개업 간호사를 말합니다.

건강 기록. "건강 기록"은 수용자의 의료, 정신 건강 및 치과 치료에 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는 단일 의료 기록을 말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기록은 별도의 병원 기록이 아니라 감옥에 기반을 둔 건강 기록을 나타냅니다.

병가. "병가"는 수감자의 의료 불만을 평가 및/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수감자와 의료인 간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요구. "특별 필요"는 만성 치료(정의 6 참조), 회복기 치료(정의 7) 또는 전문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재소자를 말합니다.

§ 3-02 의료 서비스 이용.

(a) **정책.** 교정국과 보건당국은 모든 수감자가 모든 의료 서비스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면 정책 및 절차의 설계 및 구현을 책임져야 합니다. 뉴욕시 교정 시설에 대한 최소 기준의 § 1-01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b) 진료에 대한 접근.

(1) 모든 시설은 40 RCNY § 3-04 (b)(6)에 설명된 바와 같이 모든 수감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의료 조치를 받는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2) 수감자는 의료를 요구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준에 설명된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소자의 접근이 거부되거나 처벌로 연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교도소 직원은 수용자의 돌봄 또는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 지연 또는 금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모든 결정은 의료인이 내려야 합니다.

(5) 수용자는 진단에 따라 치료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6) 수용자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교정 직원은 즉시 의료진과 제복을 입은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7) 교도소 진료소, 교도소 의무실 및 교도소 병원 병동의 인력 수준은 여기에 설명된 모든 기준이 충족되도록 하는 수와 유형이 적절해야 합니다. 직원 수준은 임상 및 교정 직원을 모두 나타냅니다.

(8) 보건 당국은 재소자가 임상 권고에 관한 2차 의학적 의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c) 병가.

(1) 병가는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주 5일 이상 모든 수감자가 각 시설에서 또는 다음 정기 병가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병가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치료 구역에서 현장에서 병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0 RCNY § 3-06 (b)에 정의된 대로).

(2) 병가는 의사 또는 의사의 감독하에 실시해야 한다.

(i) 교정 직원은 재소자의 의료 또는 치과 서비스 접근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ii) 교정 직원은 40 RCNY § 3-05 (b)(2)(iii)에 설명된 것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처방하거나, 약을 투여하거나, 병가 요청을 선별하지 않습니다.

(3)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요청은 사전 요청에 근거하여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교정부는 의료 서비스 지역을 오가는 수감자를 위한 충분한 보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5) 교정부가 개발한 양식에 따라 주택 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을 매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최소 3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 병가를 요청한 수감자의 이름과 수;

(ii) 진료소에 도착하는 수감자의 이름과 수; 그리고

(iii) 의료진이 본 수감자의 이름과 수.

(6) 병가신청서의 사용은 목록에 없는 수용자의 병가 사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d) **응급 서비스.**

(1) 응급 의료 또는 치과 치료에 대한 모든 수용자의 요청은 의료진이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의를 요청하는 재소자와 적절한 의료 담당자 간의 대면 만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의료 및 교정 직원은 응급 의료 또는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통지 및/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재소자가 응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교정 직원은 40 RCNY § 3-02 (d)(5)에 따라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3) 교정부는 보건 당국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모든 시설에 게시되어야 하고 최소한 다음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문서화된 정책 및 정의된 절차를 준비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i)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수감자의 긴급 대피;

(ii) 적절한 응급 의료 차량의 사용;

(iii) 지정된 병원 응급실 사용;

(iv) 필요한 경우 수감자의 즉각적인 이송을 위한 보안 절차; 그리고

(v) 보건당국이 정한 시간 내에 수감자를 이송하는 절차.

(4) 정격 수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교정 시설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명 이상의 의료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주택 단위에 적어도 한 명의 교정 인력이 심폐 소생술(심폐소생술).

(5) 제복을 입은 모든 교정 직원은 응급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서면 절차를 숙지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6) 각 시설에는 통제실 및 진료소의 전화번호를 교도소마다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7) 현재 심폐소생술(CPR) 자격증을 소지하고 응급 의료 제공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100명 이상의 수용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마다 상주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의료진은 CPR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8) 재소자에게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교정국은 비정상적인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 내에 재소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법적 보호자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합당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9) 보건 당국은 적절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교정 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응급 장비 및 공급품의 유형과 수량을 결정하고 응급 치료에 관한 서면 프로토콜을 보유해야 합니다. 목록은 표준 시행 후 90일 이내에 교정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매년 또는 보건 당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더 자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i) 모든 비상 의료 장비 및 공급품은 의료 서비스 직원이 매년 최소 2회 또는 그러한 장비 및 공급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 당국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더 자주 목록을 작성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ii) 모든 비상 장비 및 보급품은 적절한 인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 교정부는 응급 의료에 대한 모든 요청을 문서화하기 위해 통일된 일지를 설계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일지는 진료소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 이름, 공약 번호/책 및 사건 번호, 수감자의 주거 위치 및 사건 위치;

(ii) 회부 날짜 및 시간 및 회부 담당관

(iii) 수감자가 진료소에 도착한 시간 또는 의료진이 진료소 외부 영역에 대응하는 경우 의료진이 진료소를 떠나는 시간; 그리고

(iv) 의료진이 수감자를 진찰하는 시간.

(e) **의무실.**

(1) 격리된 간호 스테이션과 치료 구역이 있는 의무실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 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나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숙박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주택 지역은 한 번에 일반 인구와 의무실 주택의 조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지정된 시설에서 보건 당국과 교정국은 전문적인 기준 및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의무실 관리를 위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i) 보건 당국 및 기타 해당 규제 기관에서 결정한 대로 DOC 수용소 수감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 및 침대 할당

(ii) 40 RCNY § 3-02 (d)(3) 및 § 3-02 (f)(1) 및 § 3-에 따라 적절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소자를 병원 및 전문 서비스로 적시에 이송하기 위한 편의 02 (f)(2); 그리고

(iii) 의무실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40 RCNY § 3-02 적절한 공간 및 물리적 공장 제공(해당되는 경우 전염병 격리).

(3) 보건 당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i) 재소자에게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공급품, 재료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및 재고

(ii) 의무실 주거에 대한 재소자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한 임상 기준;

(iii) 각 수감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iv)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인력이 주 7일, 하루 24시간 수감자의 확립된 요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도록 의무실을 감독합니다. 그리고

(v) 의무실 환자에 대한 일일 순찰을 포함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주 7일, 하루 24시간 적절한 수의 의료 인력의 가용성.

(4) 수감자의 상태가 의무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만이 수감자의 진찰을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i) 재소자는 의료진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실에서 퇴원해야 합니다.

(ii) 교정 직원은 의무실 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접근 또는 의무실의 구금 기간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의료 직원이 요청할 경우 수용자를 즉시 의무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5) 의무실은 그 안에 갇힌 수감자가 항상 의료인의 시야와 소리 내에 있도록 설계되고 직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6) [각 의무실 입원, 평가 및 퇴원에 대한 적절한 기록은 40 RCNY § 3-07 \(b\) 및 40 RCNY § 3-07 \(c\)](#) 의 해당 요구 사항과 일치하도록 각 수감자의 건강 기록의 일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7) 의무실에는 모든 수감자와 그러한 수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보안 조치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f) *외래환자 전문 클리닉.*

(1) 외래환자 전문 서비스는 교정 시설에서 수감자의 건강 관리 요구에 적합한 치료를 이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게 할 수 없다고 의사 또는 치과 의사가 서면으로 결정한 경우 위탁 의료 직원이 지정한 시간 프레임에 수감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설에서 제공됩니다. 재소자가 이전에 전문 클리닉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전문 클리닉 의사는 재방문을 위해 의학적으로 적절한 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i) 전문 진료소 의사가 후속 약속을 위한 시간 또는 날짜를 결정하는 경우, 시간 변경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하지 않고 제안된 약속을 재소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건 하에 구금 시설에 있는 의사는 해당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화. 변경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예약 날짜는 다음 이용 가능한 클리닉으로 예약되어야 하며, 대안으로 원래 시간보다 긴 기간으로 예약되어서는 안 됩니다(예: 원래 예약이 예약된 경우 1주일 이내의 경우, 재예약된 약속은 원래 약속에서 1주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ii) 원래 계획의 변경 사유는 변경 사유와 함께 재소자의 의료 기록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2) 보건 당국과 교정부는 재소자를 전문 진료소로 적시에 이송하기 위한 서면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 절차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 전문 진료 및 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건 당국이 승인한 현재 지역사회 진료소 목록의 유지 관리

(ii) 전문 서비스에 대한 일정 요구 사항 및 운영 시간

(iii) 재소자들을 전문 진료소로 적시에 이송하기 위한 적절한 차량의 사용;

(iv) 의학적으로 적절한 족쇄 절차를 포함하여 외래 환자 의료 클리닉으로 수감자를 이송하는 데 적절한 보안 절차 및 에스코트 요구 사항; 그리고

(v) [40 RCNY § 3-08 \(b\)\(4\)](#) 에 따라 재소자에 대한 적절한 사후 관리를 보장하고 검사 및 검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건강 기록 및/또는 기타 관련 정보 전송 .

(3)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외래환자 서비스의 다양성은 민간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

(4) 교정 또는 의료인은 외래환자 진료소에서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i) 전문 클리닉 및 관련 진단 부서에 대한 재소자의 접근이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클리닉 또는 병원 내에 충분한 에스코트 담당자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g) *의료 격리.*

(1) 의료 격리 수용자는 이러한 권리, 특권 및 서비스의 행사가 건강, 안전 또는 다른 수감자, 교정 직원 또는 의료 직원의 안녕. 정신 건강 관찰을 위한 격리 수감자의 권리, 특권,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접근은 뉴욕시 교정 시설에 대한 교정 정신 건강 최소 표준 위원회에 의해 규율됩니다.

(2) 의료인은 적어도 24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격리된 각 수용자의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모든 격리 수감자에 대해 매주 적어도 한 번은 의사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의료인은 격리된 수감자를 순회한 의료진의 이름과 진료소에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수감자의 목록을 포함하는 일일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로그는 보건 당국의 자산이며 40 RCNY § 3-08 \(c\)](#) 에 설명된 기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개별 재소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재소자의 건강 기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4) 의료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주지 외부에서 추가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수감자는 즉시 진료소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아야 한다.

(5) 보건당국은 의료적 격리에 있는 재소자를 돌보는 것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수감자의 격리가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료진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수감자를 의료적 격리에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RCNY § [3-06 \(1\)\(2\)](#). 의료진의 이러한 처분은 의료 기록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i) 수감자의 이름 그리고

(ii) 격리에 대한 사실 및 의학적 이유

(iii) 격리 날짜 및 시간

(iv) 격리 기간(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v)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특별 예방 조치 또는 치료. 의학적 격리에 있는 수감자가 더 이상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의사가 결정하면 해당 수감자는 적절한 교정 직원에게 조언을 받은 후 그러한 특수 주택에서 석방되어야 합니다.

(h) *특별한 필요.*

(1) 보건 당국은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만성 치료 및 회복기 치료 또는 전문 간호를 포함하여 긴밀한 의료 감독이 필요한 특수 요구가 있는 재소자의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는 서면 정책 및 정의된 절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2) 의료 제공자가 개발하고 의료 인력이 감독하는 서면 치료 계획이 각 특수 요구 수용자에 대해 존재해야 합니다. 건강 기록에 포함될 계획에는 식이, 운동, 약물 치료, 검사실 및 진단 검사의 유형 및 빈도, 의학적 평가 및 환자의 조정을 위한 후속 조치 빈도에 대한 지침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치료 방식.

(3) 임상적으로 적절한 경우, 치료 계획은 치료 의료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의 지원 및 재활 서비스(예: 물리 치료 및 재활 치료)에 대한 접근을 재소자에게 규정해야 합니다.

(4) 재활 서비스는 교도소 내 진료소 또는 외부 시설의 외래 진료소를 통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i) *병원 치료.*

(1) 병원 기반 치료는 주 보건법의 해당 섹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건 당국은 Department of Health,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 및 기타 관련 제공자와 함께 적절한 수준의 치료에 대한 입원 및 퇴원 절차를 정의하는 서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재소자가 불필요하게 의료 시설을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급성 치료, 만성 치료 또는 기타 감독이 아닌 의료 시설에서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러한 표준의 모든 해당 하위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j) *징벌적 분리.*

(1) 보건당국은 징벌적 격리 수용자에 대한 의료 조치를 관리하는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40 RCNY § [3-02 \(g\)\(2\)-\(4\)](#)의 요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징벌적 격리 수용자의 건강이 그러한 수용소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의사가 결정하면 수용자는 적절한 교정 직원에게 조언을 받은 후 징벌적 격리 수용소에서 석방되어야 합니다.

§ 3-03 훈련 및 평생 교육.

(a) *정책.* 자격을 갖춘 직원의 고용 또는 배정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 및 의료 인력의 오리엔테이션, 훈련 및 계속 교육을 위한 서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b) *의료 직원.*

(1) 보건당국은 다음에 대한 책임을 진다.

(i) 모든 의료 서비스 전문가가 적절한 자격을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ii) 직업에서 요구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하여 전문 의료 종사자의 면허 및/또는 인증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확인을 모니터링합니다.

(2) 보건 당국이 승인한 서면 직무 설명은 시설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의 특정 의무와 책임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직무 설명은 보건 당국이 결정한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다음은 40 RCNY § 3-05 \(b\)\(2\)\(iii\)](#)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종사자만 수행해야 하며 교정 요원이나 재소자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

(i) 직접적인 환자 치료 서비스 제공

(ii) 의료 약속 일정 잡기;

(iii)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타) 재소자의 접근 결정;

(iv) 의료 응급 상황과 의료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봉인되지 않은 건강 기록의 처리;

(v) 수술 기구, 주사기, 바늘, 약물을 취급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경우 또는

(vi) 의료 장비 운영.

(c) *훈련.*

(1) 보건 당국이 개발한 서면 계획은 모든 의료 직원이 특정 의료 제공 활동 및 직무 설명에 적절하고 해당 분야 및 면허 기관에서 요구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에 참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신 건강 최소 기준에 설명된 정신 건강 검진 교육이 포함됩니다. 계획은 모든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빈도를 정의해야 합니다.

(2) 서면 정책 및 교정 직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은 보건 당국과 교정부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승인해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교정 직원에 대한 훈련 및 계속 교육의 유형과 빈도, 신규 직원 훈련 유형 및 빈도를 결정합니다. ,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시:

(i) 의료 응급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

(ii) 정신 건강 최소 기준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직원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CPR) 인증;

(iii) 응급 및 비응급 상황에서 수용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방법.

(iv) 의료 서비스와 그들이 일하는 각 시설의 배치에 관한 규칙과 규정.

(3) 교정부는 교정 직원이 [40 RCNY § 3-03 \(c\)\(2\)](#)에 설명된 영역에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 3-04 심사.

(a) *정책.* 수감자의 즉각적인 필요와 시설의 공중 보건 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식별하도록 촉진하는 심사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초기 검진은 또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의학적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b) *섭취 심사.*

(1) 건강을 위한 선별검사는 최초 수용교도소에 도착한 모든 수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는 거주 전에 의료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2) 보건 당국은 섭취 심사 중에 검토할 주제를 결정하는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 치과, 시력, 정신 건강 및 청력 문제를 포함한 현재 질병 및 과거 병력, 예방 접종 병력 및 성병 및 결핵과 같은 전염병의 병력;

(ii) 알코올 및 기타 중독성 물질의 사용을 조사하는 약물 이력(사용하는 약물의 종류, 사용 방식, 사용량, 마지막 사용 날짜 및 경련 등 사용을 중단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이력 포함)

(iii)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수감자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경우 복용한 약물, 특별 치료 요건 및 계획된 절차에 대한 확인

(iv) 키, 체중, 맥박, 혈압, 체온 기록;

(v) 신체 검사 및 선별 의료 인력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검사 시행(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음)

(A) 투베르쿨린 피부 검사, 이전에 양성 반응의 병력이 없는 경우, 양성인 경우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합니다.

(B) 포도당, 케톤, 혈액, 단백질 및 빌리루빈에 대한 소변 검사 계량봉 테스트;

(C) 매독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

(D) 임상적으로 적절한 경우 남성에게 대한 임질 배양 및 모든 여성에게 대한 임질 및 클라미디아 스크리닝;

(E) 40세 이상의 모든 수감자에 대한 직장 검사.

(vi) 각성, 방향성, 기분, 감정, 약물/알코올 금단의 명백한 징후, 자살 및 살인 생각을 포함하는 행동 관찰;

(vii) 신체 기형 및 움직임의 용이성 관찰;

(viii) 외상, 주요 및/또는 비정상적인 표시, 타박상, 병변, 황달, 발진 및 감염, 바늘 자국 또는 기타 약물 남용 징후를 포함한 피부 상태의 관찰;

(ix) 선별 의사 또는 보건 당국이 지정한 기타 건강 문제의 관찰.

(x) 여성에 대한 산과 및 부인과 병력,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 및 임신 검사.

(3) 각 수감자의 선별 검사 결과는 적절한 경우 의료 직원과 정신 건강 직원이 검토하고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i)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로의 의뢰; 또는

(ii)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추후에 예정된 후속 조치가 있는 주택 정리; 또는

(iii) 의무실 또는 정신 관찰과 같은 전문 주택에 배치. 정신 관찰 주택에 대한 소개는 정신 건강 직원이 현장에 있는 다음 방문 시 정신 건강 직원이 검토해야 합니다.

(4) 이송을 위한 입국심사는 이전 심사결과를 보건의료인이 검토하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입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심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i) 이전 입학 심사 양식의 사본이 양수인의 도착과 함께 제공되지 않거나 분실되거나 읽을 수 없는 경우

(ii) [첨부된 양식이 40 RCNY § 3-07 \(b\)](#) 에 따라 보건 당국이 결정한 표준 형식 또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 또는

(iii) 차트를 검토한 의료진이 재소자를 만나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5) 초기 섭취 검진 결과는 보건 당국이 승인한 표준 인쇄 양식에 기록해야 합니다.

(6) 접수 시 모든 수감자는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는 서면 통신문을 받아야 하며 DOC에서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성 및 배포하여 이용 가능한 의료 및 치과 서비스, 해당 서비스의 기밀성 및 취득 절차를 설명합니다. 그들에 대한 액세스.

(i) 교정부는 의료 및 치과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를 문맹 수감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모국어가 영어나 스페인어가 아닌 수감자들에게 번역가에게 즉시 접근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7) 신규 입소 심사는 DOC 보호관에 입소한 후 24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새로 입소한 재소자가 DOC에 입소한 후 24시간 이내에 입소 심사를 받지 못할 때마다 보건 당국과 교정국의 지정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3-05 제약 서비스.

(a) *정책.* 전문 관행과 적용 가능한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약학 서비스와 관련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b) *관리.*

(1) 의약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모든 서면 정책 및 절차는 모든 해당 법률에 따라 보건 당국이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 시설에서 비축한 처방 및 비처방 의약품 모두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처방집;

(ii) 의약품의 수령, 분배, 분배, 투여 및 폐기를 설명하는 절차;

(iii) 미국 법무부 마약단속국에서 정의한 규제 물질의 주기적 목록;

(iv) 의약품이 만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건 당국이 설정한 일정에 따라 시설에 보관된 기타 모든 의약품의 주기적인 목록;

(v) 바늘과 주사기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 및 의료 용품의 적절한 보관 및 보관 그리고

(vi)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약물의 적절한 공급 유지.

(2) 처방약에 대한 접근은 보건 당국의 서면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그들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수감자를 위한 처방약은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은 의사, 의사의 조수, 개업 간호사, 간호사, 약사 또는 기타 의료 직원에 의해서만 처방, 조제 및 투여되어야 합니다.

(i) 처방약은 임상적으로 지시되고 치료 계획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처방, 조제 및 투여될 수 있습니다.

(ii) 독성 용량이 치료 용량에 가까운 규제 물질 또는 약물은 가능한 한 임상적으로 적절할 때 액체 또는 분말 형태로 투여해야 합니다.

(iii) 비처방 진통제는 보건 당국과 교정부가 승인한 서면 지침에 따라 교정 담당관이 주택 구역에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3) 투여된 모든 약물은 문서화되고 보건 당국이 만족하는 기록에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i) 수감자의 이름

(ii) 디스펜서의 이름;

(iii) 처방자의 이름

(iv) 약물의 이름;

(v) 약물이 조제된 시간 및 날짜;

(vi) 처방이 만료되는 날짜;

(vii) 약물 투여 지침; 그리고

(viii)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 당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정보.

(4) 수감자에게 처방 및 조제되는 모든 약은 처방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특정 품목의 유효기한까지만 투여한다. 보건 당국은 비처방 약품의 신속한 가용성과 의료 서비스 사이트 간의 약품 연속성을 보장하는 정책 및 절차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수감자의 상태를 철저히 재평가한 후 의사 또는 공인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떤 수감자도 2주 이상 규제 약물을 처방할 수 없습니다. 21일 메타돈 및 30일 페노바르비탈 프로토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6) 교정부와 보건당국은 약물을 투여받는 재소자가 법정이나 다른 시설에서 약물을 투여받을 예정인 경우 약물을 받을 수 있도록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할 것입니다.

(7) 보건 당국이 개발한 정책 및 절차는 중대한 약물 치료를 거부하는 수감자들이 거부로 인한 의학적 결과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합니다. 수감자들은 의료 요원이 다시 처방하는 경우 후속 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 3-06 치료.

(a) *정책.* 사후 관리를 포함한 적절한 건강 관리는 관리와 치료를 용이하게 하는 환경에서 수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및 치료는 의료 인력이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허용된 전문 표준 및 법적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b) *치료 영역.*

(1) 100명 이상의 수용력을 가진 각 교정 시설은 40 RCNY §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주, 연방 및 지방 법률과 기타 모든 적용 가능한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개별 의료 치료 구역(클리닉)을 설치 및 유지해야 합니다. [3-06](#) (b)(5)가 적용됩니다.

(2) 보건 당국은 다음을 정의하는 서면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i) 해당되는 경우 양질의 건강 치료 및 적절한 전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진료소에서 필요한 장비, 용품 및 재료; 그리고

(ii) 적절한 시간 내에 재소자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

(3) 각 진료소의 진료실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i) 각 시험실의 온수 및 냉수

(ii) 각 시험실의 적절한 조명

(iii) 검사 테이블;

(iv) 현지 법률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을 위한 적절한 용기;

(v) 필요에 따라 멸균 장비

(vi) 의료진과 재소자 간의 모든 만남에 대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

(vii) 허용 가능한 난방, 냉방 및 환기

(viii) 비누와 종이 타월, 그리고

(ix) [40 RCNY § 3-06](#) (b)(2) 에 따라 보건 당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모든 장비, 공급품 및 재료 .

(4) 의료 장비, 용품 및 재료는 의료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재소자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는 항상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5) [40 RCNY § 3-06](#) (b)(2) 및 [40 RCNY § 3-06](#) (b)(3)에 설명된 적절한 치료 영역 외부에서 의료 치료 또는 신체 검사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급성 의료 응급 상황.

(c) *치과 서비스.*

(1) 적절한 수준의 치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치과 치료는 뉴욕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치과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각 수감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i) [응급 치과 치료는 40 RCNY § 3-02](#) (d) 에 설명된 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ii) 치과 검진은 요청한 각 수감자에 대해 3주 이내에 제공되거나 수감자가 예정된 검진을 거부하지 않는 한 다른 의료 직원의 추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된 후속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 내 거부 또는 불참은 수감자의 건강 기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iii) 교정부는 비용급 치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요청이 교정부에 접수된 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치과 의료 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과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 수감자의 요청은 의료 직원에게 전달되며, 의료진은 다음 근무일에 치과 직원에게 요청을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치과 검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 비정상적인 기능, 점막 및 턱의 질병, 치아 및 지지 구조의 질병을 감지하기 위한 구강의 내부 및 외부 구조 검사

(ii) 치과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단용 X-선;

(iii) 펄프 및 기타 조직 검사

(iv) 우식 감수성;

(v) 표시된 대로 암 도말;

(vi) 치아 기록을 취하거나 검토하고 충치, 상실 및 채워진 치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vii) 적절한 치과 위생 교육.

(3) 치과 진료는 발치에 국한되지 않고 치과의사가 치과검진 결과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기간 동안 수감자의 건강이나 안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치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 통증 완화 및 급성 감염 치료;

(ii) 악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극적인 상태의 제거;

(iii) 관련 뼈 및 연조직 질환의 치료;

(iv) 손상되거나 우식한 치아의 수리;

(v) 상실된 치아의 교체 및 기능 회복;

(vi) 경구 예방;

(vii) 근관 치료;

(viii) 구강 수술; 그리고

(ix) 치주학.

(4) 치과 진료는 치과 검진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치과 의사가 요청하거나 의료 직원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치료 당시 담당 치과의사가 전체 건강 기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각 수감자의 방문에 대한 적절한 치과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여 건강 기록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i) 방문 날짜

(ii) 치과 검사 결과;

(iii) 적절한 경우 계획되거나 제공되는 치료

(iv) 후속 계획이 있는 경우 그리고

(v) 치과 의사의 이름과 서명.

(7) 뉴욕주에서 개업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만이 치과 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있는 치과 의사만이 치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 교정 직원은 치과 서비스 요청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ii) 누구도 치과 서비스에 대한 재소자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8) 일일 기록 또는 일지는 다음을 열거하는 보건 당국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i) 치과 서비스에 대한 재소자의 이름 및 요청 수;

(ii) 치과 진료소에 데려온 수감자의 이름과 수; 그리고

(iii) 치과 직원이 본 수감자의 이름과 수.

(d) *시력 및 안과 진료 서비스.*

(1) 보건 당국은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수감자에게 시력 및 안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i) 의료 요원이 생각하기에 입학 심사 중에 제공되는 것 이상의 시력 및 안과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수감자는 그렇게 회부되어 제공되어야 합니다.

(ii) 안경이 깨지거나 분실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감자는 시력 검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2) 시력 검사 후 수감자에게 안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건 당국은 수감자에게 안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교정 안경류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입소자는 의료 직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를 보유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 (4) 기록은 모든 안과, 검안 및 안과 서비스에 대한 수감자의 의료 차트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록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됩니다.
 - (i) 초기 검사에 추가하여 실시한 시력 검사 결과;
 - (ii) 처방된 치료 또는 약물 및 후속 계획; 그리고
 - (iii) 치료하는 안과의사/검안사의 이름.
- (5) 보건 당국은 다음을 문서화하기 위해 일일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i) 시력 및 안과 진료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요청하는 수감자의 이름과 수; 그리고
 - (ii) 승인된 추천 및 요청의 이름과 수.
- (6) 눈 및 시력 검사 및 치료는 뉴욕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안과의사 또는 검안사만 수행해야 합니다.

(e) *임신과 육아.*

- (1) 임신한 모든 수감자는 전문적인 기준과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상담, 지원 및 의료를 받아야 한다.
- (2) 임신한 수감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시기적절한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i) 부인과 및 산과 진료
 - (ii) 산전 영양을 위한 의료 식이;
 - (iii)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실험실 검사 그리고
 - (iv)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별 주택.

(3) 요청 시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여성 수감자는 적절한 장비와 허가를 받은 의료 시설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낙태 서비스에는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i) 면허가 있는 의사와 상담한 후 절차 전에 40 RCNY § 3-06 (j)에 따라 재소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ii) 절차는 교정 기관에서 수행되지 않습니다.

(4) 보건 당국은 교정 시설 외부의 안전하고 적절하게 갖추어진 의료 시설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수감자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하면 뉴욕 교정법의 해당 조항 및 기타 모든 법적 요건과 일치하고 보육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교정국 정책에 따라 필요한 탁아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6) 요청 시, 임신한 수감자는 교정국의 사회 서비스 부서를 통해 입양 또는 위탁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정 또는 의료 직원은 수감자가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수감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두 서비스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i) 수감자가 새로 태어난 아이를 입양하거나 위탁 양육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뉴욕시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위탁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어 유아를 계획하고 배치할 것입니다.

(7) 보건당국과 교정부는 교정부에 입소한 수유모가 적절한 속도로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에서 제외 사유를 포함하여 입학 및 퇴원 기준과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서면 정책 및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f) *진단 서비스.*

(1) 방사선학, 병리학 및 기타 의료 실험실 서비스를 포함한 진단 서비스와 관련된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는 법적 요건, 수용된 전문 표준 및 건전한 전문적 판단 및 관행에 따라 교정 시설 내에서 보건 당국이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2) 병리학 및 의료 실험실 절차 및 정책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i) 수감자의 필요에 적합한 실험실 테스트 수행
- (ii) 적시에 정확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 (iii)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배포 및 검토하고 검사실과 수감자의 건강 기록에 결과 사본을 보관합니다.
- (iv) 정기적인 장비 교정
- (v) 표준화된 대조 표본 또는 실험실의 사용을 통한 시험 결과의 검증;
- (vi) 표본의 수령, 보관, 식별 및 운송;
- (vii) 시약, 표준 및 교정 절차의 출처를 포함하여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모든 시험 절차에 대한 완전한 설명 유지 그리고
- (viii) 작업량을 최적의 정확성, 정밀도, 효율성 및 안전성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공간, 장비 및 공급품.

(3) 교정 시설 내 방사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및 절차는 보건 당국이 수립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i) 적절한 방사선 촬영 또는 형광투시 진단 및 치료 서비스;
- (ii) 엑스레이 필름 및 기타 방사선 사진을 해석하고 적시에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iii) 서비스에 대한 중복 보고서를 유지하고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방사선과에 필름을 보관합니다.
- (iv) 각 수감자에 대해 수행된 모든 검사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별도의 로그에 그리고 수감자의 건강 기록의 일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 (v) 적절한 경우 필요한 오프 사이트 방사선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의뢰.

(4) 모든 방사선 서비스에 관한 안전 문제는 모든 해당 보건 담당자에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다루는 정책 및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i) 절차의 이유가 포함된 의료 직원 또는 치과 의사의 서면 지시에 의해서만 방사선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ii) 자격을 갖춘 의료 인력에게 방사성 물질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 (iii) 방사성 물질의 사용, 제거, 취급 및 저장을 규제합니다.

- (iv) 전기, 기계 및 방사선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
 - (v) 안전 예방책 및 비상 방사선 위험 처리에 대한 보건 관리 및 교정 요원에 대한 지침
 - (vi) 방사선원이 사용되는 곳의 적절한 차폐,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직원이 방사선 위험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착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 방사선에 노출된 직원에 대한 기록 유지 그리고
 - (vii)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법률과 규정에 따라 방사선원과 모든 안전 조치에 대해 기록된 평가를 계속 진행합니다.
- (5) 병리학 및 방사선학 서비스는 뉴욕주에서 면허를 받은 유자격 의사가 지시합니다.
- (6) 수감자들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모든 결과를 즉시 통보받고 적절한 후속 평가와 치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섹션은 모든 설정에서 제공되는 진단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g) *외과 및 마취 서비스.*
- (1) 수감자들은 법적 요건, 인정되는 전문적 기준, 건전한 전문적 판단과 관행에 따라 보건당국이 개발한 서면 정책 및 절차에 정의된 대로 적절한 수술 및 마취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2) 경미한 외과적 및 구강 외과적 시술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적절한 수준의 백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인 또는 치과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3) [40 RCNY § 3-06](#) 에 따라 수술을 수행하기 전에 수감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 (4) 보건당국은 수술 전 준비 및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수감자를 관찰 및 보살피고, 수술 후 사후 관리에 대한 서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5) 수술실, 용품 및 장비는 매번 사용 후후에 적절하게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6) 적절한 수술 및 마취 장비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 모든 장비는 정기적으로 교정, 조정 및 테스트되어야 하며 항상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기록되어야 합니다.
- (h) *의료 다이어트.*
- (1) 서면 정책 및 정의된 절차는 보건 당국과 교정부가 개발해야 하며 의료 또는 치과 직원의 서면 명령에 따라 준비되고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특별 의료 및 치과 식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 (2) 수감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특별한 치료식이 필요하다고 의료 또는 치과 직원이 결정한 경우 교정부는 즉시 그러한 식단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식이 요법을 받는 수감자의 이름, 시작 날짜, 기간 및 다이어트의 세부 사항을 식별하는 서면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3) 특별 식단에 대한 요청 또는 이전 요청의 수정은 의료 또는 치과 직원이 서명하고 다음을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서면으로 작성됩니다. (i) 원하는 해당 영양소 또는 칼로리 수준;
- (i) 허용되는 식품군의 종류와 수량
 - (ii) 특별한 준비 제한 또는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그리고
 - (iii) 다이어트 기간.
- (4) 특별식이 요법에 대한 명령은 다음을 포함하여 수감자의 의료 또는 치과 기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i) 그러한 식단의 목적;
 - (ii) 기간을 포함한 식단에 대한 설명; 그리고
 - (iii) 그러한 식단을 주문하는 치과의사 또는 의사의 서명.
- (5) 장기간의 치료식이 필요한 수용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식이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식이 지침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 (6) 치료식이 준비에 대해 훈련을 받은 교정국 등록 영양사가 수감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시설에 상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등록된 영양사는 이 표준의 모든 관련 섹션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에 충분한 수의 직원 영양사를 감독해야 합니다.
- (7) 일반 인구 및 특별 주택 수용자에게 특별 식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별 식단을 받기 위해 특별 주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i) *보철 장치.*
- (1) 의료 및/또는 치과 보철물은 담당 의사 및/또는 치과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소자가 투옥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보건 당국에서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철물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동안
- (i) 보철물에는 누락된 신체 부위를 대체하거나 결함 있는 신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인공 장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ii) 보철 장비 및 서비스 비용은 보건 당국이 부담합니다.
- (j) *사전 동의.*
- (1) 의료 종사자는 항상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 (2) 침습적 절차가 지시되고 [40 RCNY § 3-06](#) (j)(4)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소자는 다음과 관련된 완전한 정보를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 (i) 수감자의 진단과 제안된 의료 또는 치과 치료의 성격과 목적;
 - (ii) 제안된 치료의 위험 및 이점
 - (iii) 대체 치료 방법(있는 경우) 그리고
 - (iv) 제안된 치료를 포기한 결과.
- (3) 의료인 또는 치과의사는 수용자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용자가 정보에 입각하여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리거나 알려진 절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감추어서는 아니된다.
- (4) 보건 당국은 90일 이내에 교정 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될 사전 동의와 관련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며 모든 관련 법률과 일치해야 합니다. 정책 및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i) 미성년자 또는 법적으로 사전 동의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할 수 없는 기타 수감자에 대한 사전 동의 획득
 - (ii) 일상적인 치료 이외의 특별한 절차에 대한 재소자의 사전 동의를 문서화하기 위한 서면 양식의 사용; 그리고
 - (iii) [40 RCNY § 3-06](#) 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수감자에 대해 특수 절차 또는 수술이 수행될 때 세부 문서의 유지 관리 .
- (5) 사전 동의 양식은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수감자의 건강 기록의 일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6) 사전 동의 정책은 뉴욕시 교정 시설에 대한 교정 정신 건강 최소 표준 위원회에 설명된 사전 동의 정책과 일치해야 합니다.

(k) *약물 및 알코올 치료.*

(1) 알코올, 약물 또는 둘 모두에 대한 중독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는 모든 수감자는 적절하고 보건 당국이 승인한 서면 프로토콜에 따라 중독, 금단 및 관련 상태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관찰하고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도움을 요청하는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재소자에게 교육 및 추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l) *치료를 거부할 권리.*

(1) 수감자는 사망, 중상 또는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즉각적인 의료, 외과 또는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인 또는 치과의사가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 검진 또는 의료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감자에게 다음 중 적어도 하나가 적용됩니다.

(i) 수감자가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절차가 제공되는 시점에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ii)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소자는 미성년자입니다. 또는

(iii) 무능력 재소자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없음이 입증됩니다.

(2) 수감자가 감염성, 전염성, 기타 다른 사람의 건강, 안전 또는 안녕에 위협이 되는 건강 상태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수감자는 의료 직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i) 40 RCNY § 3-02 (g)에 따라 의료 격리에 배치됩니다. 또는

(ii) 의무실 설정으로 이송됩니다.

(3) 수감자가 40 RCNY § 3-06 (l)(2) 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대우를 받는 경우 :

(i) 의료진은 자신의 최선의 전문적 판단에서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ii) 수용자의 상태, 수용자가 자신과 타인에게 가하는 위협,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건강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의료 직원의 검토에 따라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의료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수감자는 보건 당국과 협의한 후 거부해야 하며 보건 당국이 개발한 포기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i) 재소자가 권리 포기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치료를 받지 않는 의료 직원이 권리 포기서에 증인으로 서명해야 하며, 재소자가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구두로 거부했으며 모든 권리 포기서 서명을 거부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ii) 완성된 포기 양식은 보존 기간에 관한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각 수감자의 건강 파일의 일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iii) 면제는 거부되는 절차 또는 치료에 대해 구체적이어야 하며 거부되는 절차/치료 및 거부의 의학적 결과에 대한 상세하고 문서화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하며 재소자에게 후속 조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료.

(iv) 의료 요원이 요구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전문 클리닉에 대한 모든 거부는 재소자가 전문 클리닉으로 이송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전에 의료 요원의 입회하에 서명해야 합니다.

(5) 치료를 거부하는 수감자는 치료 없이 상태가 덜 집중적인 환경에서 관리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구역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6) 치료를 거부할 권리와 관련하여 개발된 정책은 정신 건강 최소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7) 40 RCNY § 3-06 (l)(1) 또는 40 RCNY § 3-06 (l)(3)에 따라 제공된 치료 또는 40 RCNY § 3-06 (l)(4) 에 설명된 대로 거부된 치료 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유지 관리되는 로그에 기록됩니다. 보건당국이 각 진료소에서 관리해야 하는 일지는 페이지에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야 하며, 최소한 간호를 거부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수감자의 이름과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된 의료 관계자 및 이벤트에 대한 설명. 이 로그는 보건 당국이 지정한 의료 직원이 매일 검토해야 합니다. 이 항의 어떤 내용도 의료 기록의 적절한 문서화 요구 사항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m)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1) 교정부와 보건당국은 HIV 질병에 걸린 수감자들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치료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HIV 관련 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공개 또는 진단을 근거로 수감자를 차별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2) 보건당국은 인정된 전문적 기준과 건전한 전문적 판단 및 관행에 부합하는 HIV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합니다. HIV 감염자의 치료 또는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행은 연방, 주 및 지역 법률과 이 표준의 다른 모든 부분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기밀성.* HIV 관련 질병에 대한 모든 서비스는 이러한 표준 및 뉴욕주 법률에 따라 기밀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진단에만 근거한 분리는 금지됩니다.

(4) *테스트.* HIV 감염에 대한 테스트는 자발적이며 특정 사전 동의와 적절한 테스트 전후 상담이 있는 경우에만 수행됩니다.

(5) *교육.* 교도소 시설 및 교도소 병원 병동에서 일하는 모든 수감자와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AIDS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커리큘럼은 보건 당국에서 검토하고 새로운 정보와 치료법이 나오면 수정해야 합니다. 교육 서비스는 보건부, 교정 보건 및 병원 공사 또는 그 피지명인이 제공합니다. 보건 당국과 교정부는 교정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각 세션의 인원 수를 포함하는 교육 세션 일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 3-07 기록.

(a) *정책.*

(1) 보건 당국은 다음과 같은 교정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한 의료 및 치과 기록의 유지 관리에 대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설계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i) 정확하고 읽기 쉽게 적시에 문서화합니다. 그리고

(ii) 의료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용자에 대한 기록은 병원 인증 대리인의 법적 요건에 따라야 한다.

(b) *형식 및 내용.*

(1) 보건 당국은 교정국의 모든 시설에서 건강 정보 기록을 위한 통일된 의료 및 치과 양식을 승인해야 합니다.

(2) 수감자별로 건강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건강 기록 파일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 40 RCNY § 3-04 (b) 에 설명된 대로 완성된 섭취 선별 양식 ;

(ii) 문제 목록;

(iii) 각 임상 만남에서 제공되는 장소, 날짜, 시간 및 의료 서비스 유형;

- (iv) 모든 발견, 진단, 치료, 처분, 권고 및 수용자에 대한 지침 요약;
- (v) 처방된 약물, 투여 및 기간;
- (vi) 실험실, 엑스레이 및 기타 진단 연구의 원본 또는 사본;
- (vii) 각 의료 제공자의 서명과 직위는 각 차트 메모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viii) 완성된 동의 및 거부 양식;
- (ix) 재소자가 서명한 정보 양식의 공개;
- (x) 특별 식단 및 기타 전문 치료 계획;
- (xi) 수감자가 교정 시설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때의 임상 및 퇴원 요약;
- (xii) 의료 및 치과 치료, 검사 및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상담에 대한 의료 서비스 보고서; 그리고
- (xiii) 모든 의무실 또는 만성 환자를 위한 순서도.

(3) 건강 기록은 수감자가 다른 뉴욕시 교정국으로 이송될 때마다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건강 기록, 기록의 사본 또는 기록의 관련 섹션은 전문 클리닉 의사의 요청에 따라 교정국 시설 내의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각 수감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4) 수감자가 시립 병원 또는 기타 외부 의료 시설의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을 때 중요한 데이터, 검사 결과 및 모든 관련 병력이 포함된 상세한 상담 요청을 각 수감자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외부 시설의 전문가가 완전한 의료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이 기록 또는 기록 사본의 기밀 이전 및 반환을 허용하는 서면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c) *기관 기록의 보유.*

- (1) 보건당국은 최소한 다음을 책임져야 한다.
 - (i) 모든 건강 기록을 손실, 변조, 변경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합니다.
 - (ii) 의료 기록의 기밀성 및 보안 유지
 - (iii) 각 수감자의 건강 기록에 대한 고유한 식별 정보를 유지합니다.
 - (iv) 건강 기록의 수집, 처리, 유지 관리, 저장, 적시 검색, 배포 및 공개를 감독합니다.
 - (v) 미리 결정되고 조직화된 건강 기록 형식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 (vi) 활성 건강 기록의 보유 및 비활성 건강 기록의 폐기.

(2) 활성 및 비활성 건강 기록 파일은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유지됩니다.

§ 3-08 개인 정보 및 기밀 유지.

(a) *정책.* 보건 당국은 법적 요건, 전문적 기준, 건전한 전문적 판단과 관행에 따라 구금된 사람들이 사적 비밀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b) *프라이버시.*

- (1) 구금자와 의료 관계자 간의 모든 상담 및 평가는 기밀로 비공개됩니다.
 - (i) 교정 요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의료 및 교정 요원이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안전 및/또는 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참석할 수 있습니다.
 - (ii) 교정 직원은 구금된 사람들과 의료 직원 간의 조용한 대화가 들릴 수 없도록 의료 만남 장소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의료 요원과 구금된 사람들이 만나는 동안 가능한 경우 청각 및 시각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보건당국은 체강 수색이나 스트립 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

(c) *기밀성.*

(1) 40 RCNY § 3-03 (b)(3)(iv) 및 40 RCNY § 3-08 (다)(3).

(i) 의사-환자 특권과 관련된 모든 전문적 기준과 법적 요건이 적용됩니다.

(2) 활성 건강 기록은 격리 기록과 별도로 의료 직원이 관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i) 건강 기록에 대한 접근은 보건 당국에 의해 통제됩니다.

(ii) 의료 기록은 40 RCNY §에 설명된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구금자의 서면 승인 없이 치료 요원을 제외하고 또는 합법적인 법원 명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공개, 전달 또는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3-03 (b)(3)(iv).

(3) 해당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의료 종사자는 구금자의 서면 동의 없이 구금자의 건강 정보를 교정 당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섹션에 따른 공개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i) 전체 건강 기록;

(ii) 다음 예외를 제외하고 특정 진단:

(A) 구금 중 사람들이 입은 부상에 대한 특정 진단은 부상과 관련된 경향을 조사하고 식별하기 위한 제한된 목적으로 적절한 교정 직원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B) 시설에서 일반적인 성병 이외의 특정 전염병에 대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 보건 당국은 접촉 추적의 제한된 목적을 위해 개인의 전염병 진단을 적절한 교정 직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신원은 잠재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염성 질병으로 구금된 사람과 관련된 기타 모든 경우, 교정 요원은 개인에 대한 질병별 진단을 듣지 않고 교정 요원 및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예방 조치에 대해 의료 요원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공개'

(4) 교도소 직원은 교도관이 의료 직원으로부터 받은 모든 건강 관련 정보 또는 구금자의 기록을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40 RCNY § 3-08 (c)(3)(ii) 에 따라 교정 요원이 받은 정보는 다른 교정 요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다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5) 구금자가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건강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교정 요원에게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할 때 교정 요원은 해당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구금된 사람들은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 교정 직원에게 특정 의료 불만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검사 및 검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구금된 사람이 다른 교정 또는 의료 시설로 이송될 때 의료 담당자가 구금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 구금된 사람이 뉴욕시 교정국 내의 한 교정 시설에서 다른 교정 시설로 이송될 때, 그 사람의 완전한 건강 기록이 유지되고 각 위치에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ii) 구금자가 시립 병원 병동으로 이송되거나 이송될 때 그 사람의 건강 기록에 대한 적절한 요약이 이송을 수반해야 합니다.

- (iii) 구금된 사람이 다른 교정 시스템으로 이송될 때 수신 및 전송 시스템에서 정의한 기록 요약이 그 사람을 동반해야 합니다.
- (iv) 완전한 건강 기록 정보는 그러한 정보의 공개에 대한 구금자의 요청 및 서면 승인에 따라 교정국의 관할 밖에 있는 특정 지정 의사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릴리스 양식은 전송할 정보를 지정해야 합니다.

(d) *실험.*

- (1)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구금자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생물의학, 행동학, 제약 및 미용 연구는 금지됩니다.
 - (i) 구금된 사람이 40 RCNY § 3-06 (j)에 따라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자발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 (ii) 인간 연구에 관한 모든 윤리적, 의학적 및 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 (iii) 연구가 설계, 제어 및 안전의 모든 표준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 (iv) 보건 당국은 제안된 연구를 서면으로 승인했습니다.
- (2) 환자의 의사가 구금된 사람을 개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의료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치료는 치료의 긍정적인 특징과 부정적인 특징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수행해야 합니다. , 사전 동의에 관한 40 RCNY § 3-06 (j)의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으며 프로토콜/치료는 해당 연방, 주 및 지방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절한 지역 및 기관 검토 위원회에서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토콜은 구금된 사람들을 위한 옹호자가 대표하는 확립된 인간 연구 검토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수정된 시 기록 2019년 7월 22일, 발효일 2019년 8월 21일)

§ 3-09 품질 보증.

(a) *정책.*

(1) 보건 당국은 양질의 의료 제공을 보장하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체계적이고 치료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에 대한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 (i) 의료 서비스의 품질,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리고
- (ii) 문제의 신속한 식별 및 해결.

(2) 병원 교도소 병동은 인정을 위해 인정되는 커뮤니티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소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각 병원에는 해당 병원에서 재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치료를 담당하는 재학 상태의 단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b) *품질 보증 프로그램.*

- (1)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i) 치료를 개선할 기회를 식별하고 의료 제공 및 임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 및/또는 선별 및 평가
 - (ii) 현재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준의 사용;
 - (iii) 행정 및 보건 담당자의 적절한 조치를 통한 문제 식별 및 의료 품질 개선 그리고
 - (iv) 발견, 결론, 권고, 취한 조치 및 그러한 조치의 결과에 대한 문서화 및 보고.
- (2) 전반적인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관리 및 조정은 다음을 보장하도록 설계됩니다.
 - (i) 모든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됩니다.
 - (ii) 건강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 또는 기회가 둘 이상의 부서 또는 서비스와 관련될 때 필요한 정보는 보건 당국과 교정부 내에서 그리고 교정부 간에 전달됩니다. 교정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기밀 유지에 관한 이러한 표준의 주범 및 40 RCNY § 3-08 (c)와 일치해야 합니다.
 - (iii) 식별된 문제의 상태는 신속한 개선 또는 시기적절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추적되어야 합니다.
 - (iv) 모든 문서화된 정보 및 기록은 추세, 성능 패턴 또는 잠재적 문제를 감지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분석됩니다.
 - (v)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유형과 빈도를 설명하는 분기별 통계 보고서는 보건 당국이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 (vi)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목적, 범위, 조직 및 효과는 적어도 매년 평가되고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합니다.
- (3) 시설교정관리인, 시설보건국장 및 의료·치과·간호사 대표가 참석하는 월레회의를 개최한다.
 - (i) 각 회의에는 서면 의제와 의사록 작성 및 배포가 포함됩니다.
- (4) 모든 병원 교도소 병동은 JCAH(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ospitals) 인증 프로세스의 일부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JCAH 및 주 보건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재소자를 돌보도록 지정된 각 병원은 분기별 보고서의 일부로 보건 당국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 섹션은 재소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에 관한 품질 보증 활동을 반영합니다.
- (5) 보건 당국은 각 뉴욕시 교정 시설에서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 효과 및 적절성에 대한 공식 평가를 위해 매년 자체적으로 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이 심사를 하는 경우 수감자를 직접 보살피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심사를 해야 한다.
 - (i) 최소한 평가는 40 RCNY § 3-09 (c)에 요약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ii) 보건 당국의 평가 결과, 결론 및 권장 사항은 문서화되어 교정 위원회를 포함한 적절한 당국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c) *모니터링 및 평가.*

- (1) 의학적 판단이 적절하게 내려지고 문서화되며 의료 절차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평가 및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는 진단 및 치료 절차의 적절성, 지시된 경우 검사실 및 방사선 연구를 포함한 적절하고 완전한 진단 절차의 사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검토해야 하는 기타 주제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만성 치료 서비스 제공; 차트 검토로 입증된 프로토콜 준수 프로토콜이 최신 의학적 지식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었는지 여부; 현재 프로토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직원 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
- (2) 의료 및 치과 기록과 항목의 품질, 내용 및 완전성이 평가되고 최소한 다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i) 재소자가 다른 교정 시설로 또는 다른 교정 시설로 이송될 때 적절한 의료 문서 및 정보를 시기 적절하고 적절하게 이전합니다.
 - (ii) 기록의 기밀성 및 보안.
- (3) 검진에서 발견되지 않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수용자가 일반 인구에 배치된 경우와 심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지연이 있습니다.
- (4) 수술 및 마취 서비스의 품질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i)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한 재소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 (ii) 절차가 주문된 후 적절한 시간 내에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토
 - (iii) 사용 전 마취 기구의 검사 및 테스트 검토 그리고
 - (iv) 수술 및 마취 절차 문서 검토, 연간 검토 및 필요한 경우 수정.
- (5) 응급 서비스의 품질과 적절성을 평가하고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합니다.
- (i) 긴급 상황에 대한 교정 및 보건 직원의 대응 시간 그리고
 - (ii) 보급품, 장비, 재료 및 응급 의료 인력의 충분.
- (6) 방사선학, 병리학 및 기타 검사실 서비스의 품질 관리 평가가 수행되며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포함됩니다.
- (i) 절차의 문서화, 정확성 및 완전성 그리고
 - (ii) 방사선 서비스의 모든 안전 측면.
- (7) 의약품 처방, 투여 및 조제 절차를 검토하여 해당하는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 (8) 자재, 공급품, 장비 및 의약품의 사용을 설명하기 위한 재고 관리 및 문서화 절차를 평가해야 합니다.
- (9) 교도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의 자격을 갖춘 의료 인력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인력 수요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i) 가용 의료 인력의 기능적 책임, 권한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 또는 추가하기 위해 서면 직무 설명을 검토해야 합니다.
 - (ii) 모든 의료 직원은 면허 또는 인증 갱신을 포함하여 감독자의 정기적인 직무 수행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 (iii) 현직 교육은 교육의 품질, 범위 및 효과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 당국이 최소한 매년 검토해야 합니다.
- (10) 모든 전원 비상, 방사선학, 병리학, 외과 및 치과 장비는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간격으로 테스트해야 하지만 이러한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1) 연방, 주 및 지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유해 물질 및 폐기물 관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12) 문서 및 기록은 위원회가 이러한 표준의 모든 부분에 대한 준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적시에 보건 당국,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 및 교정부가 교정 위원회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정보에 입각한 동의 및 석방의 표준 절차를 사용하여 획득해야 하는 살아있는 재소자의 개별 의료 기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3-10 수감자 사망.

- (a) **정책.** 교정부는 재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및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보건 당국과 함께 사망에 대한 철저하고 시기 적절한 검토가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 (b) **통지.** 수감자가 사망한 경우 교정부는 즉시 검시실과 수감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c) **검토.**

(1) 부검은 교정국에서 수감된 수감자가 사망할 때마다 즉시 수행되어야 한다. 보고서 사본이 교정 위원회에 보내질 것입니다.

(2) 교정 위원회는 사망자의 모든 의료 기록 검토를 포함하여 수감자의 사망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도소 사망 검토 위원회는 교정 위원회가 직원을 배치하고 공공 안전 부시장이 소집할 적절한 검토를 논의합니다. 교도소 사망 검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며 시장실, 보건 당국, 정신 건강, 정신 지체 및 알코올 중독 서비스부, 보건 및 병원 공사, 교정부, 위원회의 대표를 포함합니다. 고인을 돌보는 교정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

(3) 이 섹션의 어떤 것도 보건 당국과 교정부가 모든 사망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검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3-11 재해 계획.

- (a) **정책.** 인재 또는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 관리 및 전달을 위한 정책 및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b) **재해 계획.**

(1) 보건 당국과 교정부는 자연 재해 또는 인재가 발생한 경우 적시에 질서 있는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설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재난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i) 경보 시스템의 사용
- (ii) 비상 장비 및 보급품의 사용
- (iii) 각 시설의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기 위해 부서 전체에 걸쳐 의료 및 교정 인력을 재배치합니다.
- (iv) 훈련 프로그램 및 일정
- (v) 의료 용품 및 건강 기록의 보안, 보관 및 유지 관리;
- (vi) 의료 및 치과 용품 배달;
- (vii) 구급차 서비스 이용 그리고
- (viii) 정기적으로 기록된 연습 훈련 및 직원 교육.

(2) 재난 계획은 보건 당국과 교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검토 및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연례 검토 증명서는 교정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 3-12 수감자의 족쇄.

(a) **정책.** 교정부, 보건 당국, 보건 및 병원 공사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시립 병원의 안전한 의료 병동 밖 침대에 수용되어 있는 수감자의 족쇄를 관리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안전한 의료 병동 외부에 수용된 수감자들은 일상적으로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족쇄에 대한 결정은 사례별로 내려져야 하며 적절한 보안 예방 조치나 처벌 또는 직원의 편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임상 환경 사이를 이동하는 수감자의 족쇄는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재소자를 족쇄로 묶는 모든 비응급 결정은 의학적으로 금기 사항이 아니어야 합니다.

- (b) **정의.** 족쇄에는 수감자의 발목이나 손목을 감싸고 움직임을 제한하는 모든 장치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 (c) **절차.** 안전한 의료 병동 외부의 병상에서 병원에 수용된 수감자를 위해 개발된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족쇄는 개별 사건을 검토한 후 교도소장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의 지시가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검토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안 관련 정보를 받을 때까지 수감자는 아래 (3)(i)에서 (iv)에 나열된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한 족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보안 관련 정보는 즉시 얻어야 합니다.

(2) 족쇄는 최고 교도관 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24시간 경찰관 범위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하고 명확한 사실로 입증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3) 구속될 수감자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DOC는 의사가 재소자가 다음과 같다고 판단한 경우 구속하지 않습니다.

- (i) 임신 중이고 아기의 분만을 위해 입원한 경우; 또는
- (ii) 인공 호흡기 또는 인공 호흡기에 의존; 또는
- (iii) 임박한 위험 또는 죽음이 예상되는 상황(위의 (i)-(iii)에 설명된 상태에 있는 재소자가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제외) 또는
- (iv) 족쇄가 의학적으로 금기인 경우. 다만, 위 (iv)의 상태에 있는 수감자가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상해의 위험이 있는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즉시 재소자에 대한 검토가 있을 때까지 제지할 수 있다. 족쇄의 사용이 수감자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사가 그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DOC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닌 한 구속이 해제되기 전에 즉시 대체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경우 족쇄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4) 의사는 적어도 매일 수감자의 건강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들은 수감자가 보행을 하는 동안 의학적으로 금기인 기계적 구속의 사용 여부를 포함하여 그들의 발견을 교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5) 의사가 침대 팬을 대신 사용하도록 명령하지 않는 한 족쇄를 채운 수감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화장실을 사용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6) 수감자의 족쇄에 대한 결정은 최고 교정 책임자 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매일 검토해야 하며 의사가 족쇄가 의학적으로 금기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응급 상황이 아닌 한 DOC는 족쇄를 제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대체 보안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7) 기계적 구속 적용에 대한 모든 결정은 교정국의 운영 사무소에서 내립니다.

(8) 수감의 사유, 수감의 승인 일시, 수감자의 성명 및 직위, 수감자의 성명, 도서, 사건번호, 건강상태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병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

(9) 시립 병원의 보안 의료 병동 외부에서 수용자를 돌보는 병원 기반 의사는 이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3-13 차이.

(a) **정책.** 모든 부서는 준수를 달성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최소 표준의 특정 섹션 또는 하위 섹션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차이. "지속적인 변동"은 무기한 기간 동안 특정 섹션 또는 하위 부문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위원회가 부여한 면제입니다.

비상 변동. [40 RCNY § 3-13](#) (c)(3) 에 정의된 "긴급 변동"은 30일 이하 동안 특정 섹션 또는 하위 부문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위원회가 부여한 면제입니다.

제한된 차이. "제한적 차이"는 지정된 기간 동안 특정 섹션 또는 하위 부문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위원회가 부여한 면제입니다.

(b) **발효일 이전의 차이.** 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특정 섹션 또는 하위 부문의 발효일 이전에 변경 사항을 이사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최선의 노력과 다른 뉴욕시 공무원 및 기관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효일까지 섹션 또는 하위 섹션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습니다. 또는
- (2) 규정 준수는 섹션 또는 하위 항목에 명시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합니다.

(c) **제한적, 지속 및 긴급 변동.**

- (1) 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위원회에 제한된 변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 최선의 노력과 다른 뉴욕시 공무원 및 기관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섹션 또는 하위 섹션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습니다. 또는
 - (ii) 규정 준수는 섹션 또는 하위 섹션에 명시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달성되어야 합니다.
- (2) 부서는 최선의 노력과 다른 뉴욕시 공무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정 준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계속 변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 섹션 또는 하위 섹션을 완전히 준수하면 특정 시설의 설계에 고유한 상황의 결과로 극도의 실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완전한 준수가 없으면 직원이나 수감자에게 위험이나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는
 - (ii) 준수는 섹션 또는 하위 섹션의 의도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대체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합니다.
- (3) 부서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 섹션 또는 하위 섹션을 계속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비상 변동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으로 인해 특정 섹션 또는 하위 부문을 계속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부서는 24시간 미만의 비상 변동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또는 피지명인은 긴급 상황과 변경 적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d) **차이 적용.**

(1) 지속적인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부서 국장은 변경 신청서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i) 요청된 변동의 유형;
- (ii) 문제가 되는 특정 섹션 또는 하위 섹션,
- (iii) 요청된 변동 시작 날짜;
- (iv)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에서 수행한 노력;
- (v) 완전한 준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특정 사실 또는 이유, 그리고 그러한 사실 및 이유가 명백해진 때
- (vi) 완전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예상 및 일정
- (vii) 엄격한 준수가 가능하지 않은 기간 동안 섹션 또는 하위 섹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계획; 그리고
- (viii) 신청이 제한된 변동에 대한 것인 경우, 변동이 요청되는 기간. 단,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1)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계속 변동 신청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i)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 그리고 그러한 사실과 이유가 명백해진 때 그리고
- (ii) 달성된 준수의 정도 및 완전한 준수의 부족으로 인한 가능한 위험이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 또는
- (iii) 섹션 또는 하위 섹션의 의도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대안적인 방식으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계획에 대한 설명.

(3) (1)항의 요건에 추가하여 24시간 이상의 긴급 변경 신청(또는 긴급 변경 갱신)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i) 계속적인 준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이유, 그리고 그러한 사실과 이유가 명백해진 때

- (ii) 완전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예상 및 일정 그리고
- (iii) 변동이 요청되는 기간. 단, 3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e) *제한적 및 지속적인 변동에 대한 변동 절차.*
- (1) 제한적 또는 계속적 변경에 대한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실행 가능한 경우 위원회는 교정 직원, 의료 서비스 전문가, 수감자와 그 대리인, 기타 공무원 및 법률 종교 및 지역 사회 단체.
- (2) 실행 가능한 경우 이사회는 변경 신청서에 대한 공개 회의 또는 청문회를 열고 모든 이해 당사자의 증언을 청취해야 합니다.
- (3) 변경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4) 이해 당사자는 이사회 결정에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결정이 내려진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 (f) *차이의 승인.*
- (1) 위원회는 변경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변경을 승인해야 합니다.
- (2) 변동을 승인하면 위원회는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i) 분산의 유형
- (ii) 변동이 시작되는 날짜;
- (iii)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기간 그리고
- (iv) 변동에 대한 조건으로 부과된 모든 요구 사항.
- (g) *차이의 갱신.*
- (1) 제한적 또는 긴급 변경의 갱신 신청은 40 RCNY § 3-13 (c)-(f)에 제공된 원래 신청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위원회는 원래 신청서 승인을 위한 요구 사항 외에도 이전에 규정된 시간 제한 내에 섹션 또는 세부 항목을 준수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요구 사항이 원래 변동에 대한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이사회가 설정했습니다.
- (2) 지속적인 변동의 검토를 위한 청원은 위원회의 자체 동의 또는 부서의 직원, 직원, 수감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계속적인 변동에 대한 계속적인 필요성과 정당성을 검토하고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40 RCNY § 3-13 (c)-(f)에 제공된 원래 신청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그러한 검토와 고려 후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변동을 중단할 것입니다.
- (i) 이제 표준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계속 변화가 허용된 조건으로 부과된 요구 사항이 충족되거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 (iii) 40 RCNY § 3-13 (b)(ii)에서 요구하는 대체 방식으로 섹션 또는 하위 섹션의 의도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않습니다.
- (3) 위원회는 갱신 신청 또는 변경 검토에 대한 결정의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40 RCNY § 3-13 (f), 그리고 제한적이고 지속적인 변동의 경우 40 RCNY § 3-13 (e)(3) 및 (4)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이사회는 모든 이해 당사자와 협의한 후 계속 변동의 중단을 위한 발효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 3-14 발효일.

이 표준(40 RCNY §§ 3-01 ~ 3-13)은 1991년 5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 3-15 시행 날짜.

이러한 표준의 다양한 세부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계획, 프로그램 및 형식은 아래에 명시된 기간 동안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간은 이 표준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40 RCNY § 3-14 참조).

재분	구현
40 RCNY § 3-02 (d)(7)	3 개월
40 RCNY § 3-02 (f)(1)	4개월
40 RCNY § 3-02 (f)(2) iii	14개월
40 RCNY § 3-02 (f)(4)	4개월
40 RCNY § 3-05 (b)(1)	4개월
40 RCNY § 3-06 (h)(2), (6), (7)	4개월
40 RCNY § 3-07 (a)(1), (2)	4개월
40 RCNY § 3-09 (a) (1)	4개월
40 RCNY § 3-09 (b)(1)-(5)	4개월
40 RCNY § 3-09 (c)(1)-(12)	4개월
40 RCNY § 3-11 (a)	8 개월

날짜: 1991년 4월 10일

§ 3-16 부상 대응.

- (a) *정책.* 교정부 및 보건 당국("기관")은 구금된 사람들의 부상을 처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 (b) *조사.* Injury-to-Informate 양식과 같은 모든 지원 문서를 포함하여 구금된 사람의 부상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조사는 시설에서 수행한 조사 또는 재소자 상해 양식에 포함된 조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정국("국")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 (c) *조정.*
- (1) *분기별 회의.* 기관은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분기별 회의에 참여하여 부상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추세를 식별하고, 부상 보고서 문서에 대한 품질 보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및 분기별 회의에는 데이터 기반 시정 조치 계획 개발이 포함됩니다.
- (2) *부상 추적 시스템.* 이 규칙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관은 40 RCNY § 3-16의 목적을 위해 보건 당국이 단독 목적으로 심각한 부상으로 지정한 부상으로 정의되는 심각한 부상에 대한 조정된 전자 부상 추적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상 추적. 이 규칙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관은 중대하거나 중대하지 않은 모든 부상에 대해 조정된 전자 부상 추적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d) *보고 및 검토.*

(1) 2019년 9월 네 번째 금요일과 그 이후 매월 네 번째 금요일에 부서는 모든 부상자 대 재소자 양식(또는 부상자 대 재소자를 대체할 수 있는 기타 부상 보고 메커니즘)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양식) 이전 달에 생성된 양식 및 이전 달에 업데이트된 모든 양식.

(2) 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금된 사람들의 부상 및 심각한 부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합동 월간 공개 보고서("합동 월간 부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i) *1단계.* 2019년 9월 네 번째 금요일과 그 이후 매월 네 번째 금요일에 합동 월간 부상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숫자 값과 백분율을 모두 사용하여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월 및 연간 누계:

- (A) 해당 보고 기간 동안의 심각한 부상에 대한 보건 당국의 정의
- (B) 해당 보고 기간 동안 사용된 보건 당국의 부상 보고 코드 목록;
- (C) 치료 시설별로 전체 및 세분화된 상해 보고의 총 수;
- (D) 의료 요원에게 제시 및 확인된 총 부상 수(전체 및 치료 시설별로 세분화한 다음 중대 및 비중대 부상으로 세분화)
- (E) 긴급 치료가 필요한 보건소 직원에 의해 확인된 총 부상 수(전체적으로 치료 시설별로 세분화한 다음 중대 및 비중대 부상으로 세분화)
- (F) 병원 응급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보건 직원에 의해 확인된 총 부상 수(전체 및 치료 시설별로 세분화한 다음 중대 및 비중대 부상으로 더 세분화)
- (G) 의료 요원에 의해 확인된 상해를 입은 사람의 연령, 전체 및 치료 시설별로 세분화, 중대 및 비중상으로 세분화한 다음 연령 그룹별로 다시 집계(예: 16세 및 17세 청소년, 18세 ~ 21세 및 22세 이상의 성인);
- (H) 의료 요원에게 부상을 입힌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지 거부했는지, "받은 치료" 또는 "거부된 치료"로 그룹화 및 합산한 다음, 심각하거나 심각하지 않은 부상으로 더 세분화합니다.
- (I) 부서 감독관이 통지한 시간과 증상을 위한 초기 의료 평가 시간 사이의 평균, 중앙값, 최소 및 최대 시간(전체 및 치료 시설별로 세분화)
- (J) 보건 당국이 정의한 증상 유형, 증상 유형별로 그룹화 및 합계, 치료 시설별로 세분화, 전체적
- (K) 머리 부상, 열상 및 기타를 포함하는 중대하지 않은 부상의 유형, 부상 유형별로 그룹화 및 합계, 전체 및 특정 명령으로 세분화
- (L) 부상의 신체 위치, 신체 위치별로 그룹화 및 합계, 전체 및 특정 명령에 따라 세분화, 그리고 나서 중대 및 비중대 부상으로 추가 세분화
- (M) 자해를 포함하여 부상자가 보건 당국에 보고한 부상의 원인, 보고된 부상 원인별로 그룹화 및 합계, 치료 시설별로 전체 및 세분화, 그 다음 심각한 부상 및 심각하지 않은 부상으로 추가 세분화
- (N) 기관에서 주목할만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정보.

(ii) *2단계.* 이 규칙의 발효일로부터 1년 후부터 1년 동안 매월 네 번째 금요일에 계속되는 공동 월간 부상 보고서에는 기계 판독 가능 형식으로 다음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전 달과 연간 누계에 대해 숫자 값과 백분율을 모두 사용하는 형식:

- (A)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사령부 내 위치, 위치별로 그룹화 및 합계, 전체 및 특정 사령부(즉, 시설, 교통, 법원)로 세분화
- (B) 주택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부상의 경우, 부상이 발생한 주택 지역 내의 특정 위치, 전체 및 특정 명령에 의해 세분화
- (C) 전월에 보고된 증상을 위해 보류 중인 시설 조사의 총 수(전체 및 특정 명령에 따라 분류)
- (D) 지난 달에 보고된 전체 증상 부상에 대한 완료된 조사의 총 수 및 특정 명령에 의해 세분화됨.
- (E) 시설 조사에 기록된 자해를 포함한 심각한 부상의 원인, 부상 원인별로 그룹화 및 합계, 전체 및 특정 명령에 따라 세분화
- (F) 지난 달에 보고된 모든 심각한 부상에 대해 부서 감독관 통지와 시설 조사 완료 사이의 평균, 중앙값, 최소 및 최대 시간(전체 및 특정 명령으로 분류) 그리고
- (G) 증상을 입힌 사건이 수감자 상해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이 목격했는지 여부를 " 목격자 " 또는 " 목격자 없음 " 으로 그룹화 및 합계하고 전체적 으로 특정 명령으로 세분화합니다 .

(iii) *3단계.* 이 규칙의 발효일로부터 2년 후부터 매월 네 번째 금요일에 계속되는 공동 월간 상해 보고서에는 40 RCNY §§ 3-16 (d) 에 따라 필요한 모든 정보도 포함됩니다.)(2)(ii)(A) - (B), (D) - (G) 이전 월 및 연도에 대해 숫자 값과 백분율을 모두 사용하여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중대하거나 중대하지 않은 부상 - 현재까지.

(3) 2019년 9월 네 번째 금요일부터 기관은 합동 월간 부상 보고서에 열거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상 수준 정보가 포함된 월간 데이터 파일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파일에는 모든 관련 부상 수준 정보(예: 부상 보고서 번호, 중앙 운영 데스크/무력 사용 보고서 번호, 부상 날짜, 부상 보고서 날짜, 특정 유닛 및 주택 지역, 주택 지역 유형, 조사 날짜 보고된 각 부상에 대해 폐쇄, 감금된 개인 식별 정보 및 목격자 식별 정보). 각 파일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공유되어야 하며 이전 데이터 보고 기간부터 누적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파일은 위원회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최소한 매년 기준으로, 이 규칙의 발효일 후 6개월의 1일부터 시작하여 부서는 하위 40 RCNY § 3-16 에 따라 전년도에 제출된 모든 공동 월간 부상 보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d)(2). 이러한 각 연례 검토 후 60일 이내에 부서는 다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서면 공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i) 검토에서 취한 조치
- (ii) 발견 사항 및 시정 조치 계획 그리고
- (iii) 지난 5년 동안 제출된 이전 보고서에 설명된 시정 조치 현황.

(5) 2019년 9월 네 번째 금요일과 그 이후 매월 네 번째 금요일에 보건 당국은 다음 정보를 모두 사용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포함하여 자해에 대한 월간 공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 달 및 연간 누계에 대한 숫자 값 및 백분율:

- (A) 건강 관리 직원이 결정한 자해를 반영하는 총 부상 수로, 전체적으로 심각하고 심각하지 않은 부상으로 분류됩니다.
- (B) 자해를 반영하는 상해, 연령(16세 및 17세 청소년, 18세~21세 청년, 22세 이상 성인)으로 세분화, 추가로 세분화된 중대 및 비중대 상해; 그리고
- (C) 자해를 반영하는 상해, 주택 유형별로 세분화, 추가로 세분화된 중대 및 비중대 상해.

(2019년 7월 22일 도시 기록 추가, 2019년 8월 21일 발효)

면책 조항: 면책 조항: 이 사이트에 나타나는 강령 및 기타 문서는 시에서 채택한 최신 법률 또는 규칙을 아직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American Legal에 제공되고 이 웹사이트가 생성된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로 인해 특정 텍스트 오류 및 누락이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 및 누락이 수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오류를 발견한 사용자는 NYC.editor@amlegal.com 또는 800-445-5588로 게시자에게 연락하거나 NYCCodeRulesCharter@law로 뉴욕 시 법률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yc.gov.

주최: American Legal Publishing Corporation

제4장 [시정위원회에 제출된 규칙제정 청원의 심의 절차]

§ 4-01 정의.

(a) "청원"은 교정 위원회("위원회")가 규칙을 채택하도록 요청 또는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c) "규칙"은 [헌장 1041](#) (5) 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 4-02 범위.

이 규칙은 개인 또는 단체가 [헌장 섹션 1043](#) (f)에 따라 규칙 제정을 시작하도록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는 절차와 그러한 청원의 제출, 고려 및 처분 절차를 규율합니다.

§ 4-03 청원 제출 절차 .

(a)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규칙 채택을 고려하도록 청원할 수 있습니다.

(b) 청원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채택을 위해 제안된 언어와 함께 고려되는 규칙;
- (2) 규칙과 그 목적을 공포할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
- (3) 규칙의 채택을 지지하는 청원인의 주장;
- (4) 규칙이 유효한 기간;
- (5) 청원자 또는 그의 위임된 대리인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6) 청원이 종이나 팩스로 제출된 경우 청원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서명.

(c) 40 RCNY § [4-03](#) (b)(5)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변경 사항은 이사회의 사무총장 사무실에 즉시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d) 청원서는 이사회 상무이사 사무실로 배달,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4-04 청원 응답 절차 .

(a) 적절한 형식의 청원서를 접수하면 사무국장은 즉시 이를 이사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b) 상무이사 사무실에 청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장은 지정된 날짜까지 규칙 제정을 시작하겠다는 이사회의 의도를 서면으로 진술하거나 그 이유를 기술하여 서면으로 청원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를 위해.

(1) 의장이 규칙 제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청원은 규칙 제정이 시작된 이사회 회의 기록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규칙 제정을 진행할 때 위원회는 청원자가 제안한 언어에 구속되지 않지만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제안된 언어를 수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규칙 제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청원의 내용을 제정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의장이 청원을 거부하고자 할 때마다 제안된 거부와 그에 따른 이유는 즉시 이사회 구성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회원이 의장의 거부 의사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청원 거부 제안에 반대하는 경우 청원은 전체 위원회에 제출되어 청원이 거부되어야 하는지 또는 위원회가 규칙 제정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

(c) 규칙 제정을 시작하거나 회원이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청원을 거부하기로 한 의장의 결정, 또는 규칙 제정을 시작하거나 청원을 거부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정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닌 최종 결정이 됩니다. .

면책 조항: 면책 조항: 이 사이트에 나타나는 강령 및 기타 문서는 시에서 채택한 최신 법률 또는 규칙을 아직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American Legal에 제공되고 이 웹사이트가 생성된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로 인해 특정 텍스트 오류 및 누락이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 및 누락이 수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오류를 발견한 사용자는 NYC.editor@amlegal.com 또는 800-445-5588로 게시자에게 연락하거나 NYCCodeRulesCharter@law로 뉴욕 시 법률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yc.gov.

주최: American Legal Publishing Corporation

하위 챕터 A: 정의

§ 5-01 일반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된 대로:

위원회 는 뉴욕시 교정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CHA 는 CHA 계약자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를 포함하여 Department의 보살핌과 보호에 있는 재소자를 위한 건강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뉴욕 시에서 지정된 교정 보건 당국을 의미합니다.

CHA 직원 또는 직원은 CHA를 위해 직접 일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계약자 는 부서 또는 CHA와의 계약에 따라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DA 는 지방검찰청을 의미합니다.

부서 는 뉴욕시 교정국을 의미합니다.

부서 직원 또는 직원 은 부서를 위해 직접 일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직원을 직접 감독 한다는 것은 부서 보안 직원이 수감자와 같은 방에 있고 적절한 가청 거리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OI 는 뉴욕시 수사국을 의미합니다.

긴급 상황 이란 시설의 보안 또는 제도적 질서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일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시설 이란 부서에서 개인을 감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소, 기관, 건물(또는 그 일부), 건물 집합, 구조 또는 영역(건물 또는 건물 집합을 둘러싸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의미합니다.

성별 비순응 은 외모나 태도가 전통적인 사회적 성별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ID 직원 은 부서의 조사 부서에서 부서를 위해 직접 일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합니다.

수감자 는 시설에 수감되거나 구금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터섹스 는 성적 또는 생식 해부학 또는 염색체 패턴이 남성 또는 여성의 일반적인 정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터섹스 의학적 상태는 때때로 성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의료 종사자 는 교육, 자격 증명 및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에 의해 자신의 전문 진료 범위 내에서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자격을 갖춘 의료 종사자"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문 교육도 성공적으로 이수한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정신 건강 개업 의는 교육, 자격 증명 및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에 의해 자신의 전문 진료 범위 내에서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자격을 갖춘 정신 건강 의사"는 성적 학대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문 교육도 성공적으로 이수한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Nunez Agreement 는 *Nunez v. City of New York* , 11 Civ. 에 대한 동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 05845(SDNY).

패트다운 수색 은 개인이 밀수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이 수감자의 옷을 입은 몸 위로 손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안 직원 은 시설의 주택, 레크리에이션 구역, 식당 및 기타 프로그램 구역에서 수감자, 수감자 또는 거주자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을 의미합니다.

스트립 수색 은 사람의 가슴, 엉덩이 또는 생식기를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의복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거나 정리해야 하는 수색을 의미합니다.

트랜스젠더 는 성 정체성(즉,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내적 감각)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입증된 주장은 조사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주장을 의미합니다 .

근거 없는 주장 은 조사를 거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주장을 의미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주장 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불충분한 증거가 나온 주장을 의미합니다.

자원 봉사자 는 부서 또는 CHA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기부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02 성적 학대와 관련된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성적 학대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 다른 수감자가 수감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그리고
- (2) 교직원, 계약자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한 수감자 성적 학대.

(b) 다른 수감자에 의한 수감자 성적 학대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폭력 위협에 의해 그러한 행위를 강요받거나 동의 또는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 행위를 포함합니다.

- (1) 음경과 외음부 또는 음경과 항문 사이의 접촉(미미한 침투 포함)
- (2) 입과 음경, 외음부 또는 항문 사이의 접촉;
- (3) 손, 손가락, 물건 또는 기타 도구로 다른 사람의 항문 또는 생식기 구멍을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삽입; 그리고
- (4) 다른 사람의 생식기, 항문, 사타구니, 가슴, 허벅지 안쪽 또는 엉덩이를 직접 또는 의복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지는 것(신체적 다툼으로 인한 접촉 제외).

(c) 직원, 계약자 또는 자원 봉사자에 의한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에는 수감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행위가 포함됩니다.

- (1) 음경과 외음부 또는 음경과 항문 사이의 접촉(미미한 침투 포함)
- (2) 입과 음경, 외음부 또는 항문 사이의 접촉;

- (3) 직원, 계약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성적 욕망을 학대, 유발 또는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입과 신체 부위 간의 접촉;
- (4) 공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원, 계약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학대, 성욕을 유발할 의도가 있는 손, 손가락, 물건 또는 기타 도구로 항문 또는 생식기 구멍을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삽입하십시오. 또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 (5) 공식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원, 계약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있는 곳에서 생식기, 항문, 사타구니, 유방, 허벅지 안쪽 또는 엉덩이에 직접 또는 의복을 통한 기타 의도적 접촉 성적 욕망을 남용, 자극 또는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 (6) 이 섹션의 단락 (1)-(5)에 설명된 활동에 참여하려는 직원, 계약자 또는 자원 봉사자의 모든 시도, 위협 또는 요청;
- (7) 교직원, 계약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수감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 엉덩이 또는 가슴을 드러내지 않는 행위, 그리고
- (8) 직원, 계약자 또는 자원 봉사자의 관음증.

(d) 직원, 계약자 또는 자원 봉사자에 의한 관음증은 신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감방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수감자를 쳐다보는 것과 같이 공무와 무관한 이유로 직원 이 수감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감자에게 엉덩이, 성기 또는 가슴을 노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또는 수감자의 나체 또는 신체 기능을 수행하는 수감자의 신체 또는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

(e) 성희롱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 한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청, 경멸적이거나 공격적인 성적 성격의 언어적 언급, 몸짓 또는 행동; 그리고
- (2) 직원, 계약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재소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말을 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에 대한 비하적인 언급, 신체나 의복에 대한 성적 외설적이거나 경멸적인 말, 외설적인 언어나 몸짓이 포함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B장: 예방 계획

§ 5-03 성적 학대 및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PREA 코디네이터.

(a) 부서는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 및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을 의무화하고 그러한 행위를 예방, 탐지 및 대응하는 부서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서면 정책을 보유해야 합니다.

(b) 부서는 모든 시설에서 이 장을 준수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을 개발, 구현 및 감독할 충분한 시간과 권한을 가진 상위 수준의 기관 전체 PREA 조정자를 고용하거나 지정해야 합니다.

(c) 각 시설은 PRE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의 노력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과 권한을 가진 PRE 준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04 감독 및 모니터링.

(a) 부서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적절한 수준의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 계획을 정기적으로 개발, 문서화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해당되는 경우, 비디오 모니터링, 성적 학대로부터 수감자를 보호합니다. 적절한 직원 수준을 계산하고 비디오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결정할 때 시설은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1)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구금 및 교정 관행;
- (2) 부적절성에 대한 모든 사법적 판단;
- (3) 연방 수사 기관의 부적절성에 대한 모든 발견;
- (4) 내부 또는 외부 감독 기관에서 부적절하게 발견한 사항;
- (5) 시설의 물리적 공장의 모든 구성요소("사각지대" 또는 직원 또는 수감자가 격리될 수 있는 영역 포함);
- (6) 수감자의 구성
- (7) 감독 직원의 수와 배치;
- (8) 특정 교대에서 발생하는 기관 프로그램;
- (9) 모든 해당 주 또는 지역 법률, 규정 또는 표준;
- (10) 입증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성적 학대 사건의 만연; 그리고
- (11) 기타 관련 요소.

(b) 직원 배치 계획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은 계획에서 벗어난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고 정당화해야 합니다.

(c) 2018년 2월 1일까지 부서는 이 섹션의 (a)호에 따라 개발해야 하는 각 시설의 인력 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d) 부서는 2017년 7월 15일까지 시설 직원 배치 계획의 개발 및 구현 진행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e) 필요할 때마다(최소 1년에 한 번) 부서가 운영하는 각 시설에 대해 40 RCNY § 5-03 에서 요구하는 PREA 조정자와 협의하여 부서 는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 결정 및 문서화해야 합니다. 예게:

- (1) 이 섹션의 (a)호에 따라 수립된 직원 배치 계획;
- (2) 시설의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및 기타 모니터링 기술 배치; 그리고
- (3) 직원 배치 계획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f) 부서는 이 섹션의 하위 조항 (b) 및 (e)에 따라 문서화해야 하는 해당 계획에 대한 모든 편차 또는 조정을 매년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정보를 2019년 부터 3월 첫 번째 영업일까지(2018년에 발생한 편차 또는 조정에 대해) 그리고 그 후 3월의 각 첫 번째 영업일까지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g) 2017년 7월 31일까지 부서는 수감자를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부서 차량에 비디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1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2018년 9월 1일 까지 부서는 수감자 수송 차량에 비디오 감시 카메라 설치와 관련된 모든 이점 또는 문제를 포함하여 이 파일럿 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하는 서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h) *Nunez* 계약이 종료된 후 부서는 감시 카메라를 시설의 특정 영역에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부서에서 고려해야 하는 기준("설치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설치 프로토콜의 목적은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서는 매년 이 의정서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i) *Nunez* 계약이 종료된 후 부서는 모든 감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따라야 할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카메라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절차(" 유지보수 프로토콜"). 유지 관리 프로토콜의 목적은 모든 감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 관리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서는 매년 이 의정서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j) 부서에 사건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성적 학대 사건이 통보되면 부서는 사건을 포착한 모든 비디오를 (i) 사건 발생 후 4년, 또는 (ii) 성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건과 관련된 징계,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이 종료된 후 90일(4년 이전에 해당 조사 또는 절차에 대해 부서에서 통지를 받은 경우) (4) 사건 이후.
- (k) 부서는 직원의 성적 학대 및 성희롱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중간 수준 또는 상위 수준의 감독자가 예고 없는 라운드를 수행하고 문서화하도록 하는 정책 및 관행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라운드는 주간 교대뿐 아니라 야간 교대 중에도 수행되어야 합니다. 라운드는 예측할 수 없고 다양한 시간에 수행됩니다. 부서는 이러한 발표가 시설의 합법적인 운영 기능과 관련이 없는 한 이러한 감독 라운드가 진행 중임을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는 이러한 모니터링 라운드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서면 지침을 발행하고 이 지침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l) 부서는 성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거나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배치하는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모니터링 라운드를 늘리거나 그 지역의 부서 직원.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05 청소년 수감자.

- (a) 18세 미만의 모든 수감자는 18세 미만의 수감자가 공동 침실을 사용하여 18세 이상의 모든 수감자와 시각, 청각 또는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 주택에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기타 공용 공간, 샤워 공간 또는 침실.
- (b) 주택 외부 지역에서 부서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1) 18세 미만의 수감자와 18세 이상의 수감자 사이에 시력과 소리 분리를 유지하거나,
- (2) 18세 미만의 수감자와 18세 이상의 수감자가 시각, 청각 또는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직원을 직접 감독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06 성별 간 보기 및 검색에 대한 제한.

- (a) 부서는 긴급한 상황이나 의료 종사자가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크로스 젠더 스트립 수색 또는 크로스 젠더 시각적 체강 수색(항문 또는 생식기 구멍 수색을 의미함)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 (b) 부서는 긴급 상황이 없는 한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별 간 수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서는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또는 기타 교외 기회에 대한 여성 수감자의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c) 부서는 모든 크로스 젠더 스트립 수색 및 크로스 젠더 시각적 체강 검색을 문서화해야 하며, 여성 수감자의 모든 크로스 젠더 패트다운 검색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d) 부서는 긴급한 상황이나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성의 비의료 직원이 가슴, 엉덩이 또는 생식기를 보지 않고 재소자가 샤워하고, 신체 기능을 수행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세포 검사. 그러한 정책과 절차는 이성 직원이 수용소에 들어갈 때 자신의 존재를 알리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e) 부서는 수감자의 생식기 상태를 결정할 목적으로만 트랜스젠더 또는 간성 수감자를 수색하거나 물리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됩니다. 수감자의 생식기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 수감자와의 대화 중에 의료 기록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의사가 비공개로 수행하는 광범위한 건강 검진의 일부로 해당 정보를 학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 부서는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전문적이고 정중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최소한의 방해 방식으로 크로스 젠더 패트다운 수색,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수감자 수색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보안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색의 목적을 위해 긴급 상황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부서는 성 정체성에 따라 간성 및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서는 40 RCNY § 5-12](#) (f) 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 (g) 부서는 이 섹션의 조항을 통합하는 모든 직원에게 서면 지침을 발행하고 이 지침을 2017년 6월 1일까지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07 장애가 있는 수감자 및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수감자.

- (a) 부서 장애가 있는 수감자(예: 난청 또는 난청, 시각 장애인 또는 저시력자, 지적, 정신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수감자 포함) 성적 학대 및 성희롱을 예방, 탐지 및 대응하기 위한 부서의 모든 노력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러한 단계에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인 수감자와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전문 어휘를 사용하여 수용적이고 표현적으로 모두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에게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게다가, 부서는 지적 장애가 있거나 읽기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맹인 또는 저시력을 가진 재소자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재소자와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보장하는 형식 또는 방법을 통해 서면 자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서는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재정 및 관리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Title II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장애인법, 28 CFR § 35.164.
- (b) 교육부는 효과적인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통역사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재소자를 위한 성적 학대 및 성희롱을 예방, 감지 및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의 모든 노력에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확하고 공정하게 필요한 전문 어휘를 사용하여 수용적이고 표현적으로.
- (c) 부서는 효과적인 통역사를 확보하는 데 오랜 지연이 수감자의 안전, 40 RCNY에 따른 최초 대응 의무의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수감자 통역사, 수감자 독자 또는 기타 유형의 수감자 보조자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 [5-26](#) 또는 재소자의 주장에 대한 조사.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08 고용 및 승진 결정.

- (a) 부서는 재소자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재소자와 접촉할 수 있는 계약자의 서비스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 (1) 교도소, 감옥, 감금, 지역사회 감금 시설, 청소년 시설 또는 기타 기관(42 USC § 1997에 정의됨)에서 성적 학대에 가담한 적이 있습니다.
- (2) 무력,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무력 위협 또는 강압에 의해 조장된 커뮤니티에서 성행위에 참여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 또는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3) 이 섹션의 단락 (a)(2)에 설명된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민사 또는 행정적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 (b) 부서는 수감자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 또는 승진시키거나 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성희롱 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 (c) 재소자와 접촉할 수 있는 새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부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1) 범죄경력 조회를 수행한다. 그리고
- (2) 연방,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입증된 성적 학대 혐의 또는 사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이전 기관 고용주에게 연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d) 부서는 또한 재소자와 접촉할 수 있는 계약자 또는 자원 봉사자의 서비스를 모집하기 전에 범죄 배경 기록 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 (e) 부서와 CHA는 재소자와 접촉할 수 있는 현재 직원 및 계약자에 대해 최소 5년마다 범죄 배경 기록 확인을 실시하거나 현 직원에 대해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f) 부서는 채용 또는 승진을 위한 서면 지원서 또는 인터뷰, 그리고 다음과 같이 수행된 인터뷰 또는 서면 자체 평가에서 이 섹션의 하위 항목 (a)에 설명된 이전 위법 행위에 대해 재소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지원자 및 직원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현재 직원 리뷰의 일부입니다. 부서는 또한 직원들에게 그러한 위법 행위를 공개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g) 그러한 위법 행위에 관한 중대한 누락 또는 중대한 허위 정보 제공은 해고 사유가 됩니다.

(h) 법으로 금지되지 않고 뉴욕 민권법 § 50-a에 따라 부서 직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부서는 요청을 받는 즉시 전 직원과 관련된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에 대한 입증된 주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지원한 기관 고용주로부터.

(i)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CHA는 해당 직원이 지원한 기관 고용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전 직원과 관련된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의 입증된 주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09 시설 및 기술 업그레이드.

(a) 새로운 시설을 설계 또는 인수할 때 그리고 기존 시설의 실질적인 확장 또는 수정을 계획할 때 부서는 성적 학대로부터 수감자를 보호하는 부서의 능력에 대한 설계, 인수, 확장 또는 수정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b)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전자 감시 시스템 또는 기타 모니터링 기술을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부서는 그러한 기술이 성적 학대로부터 수감자를 보호하는 부서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하위 챕터 C: 대응 계획

§ 5-10 증거 프로토콜 및 법의학 검사.

(a) 부서는 행정 절차 및 형사 기소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리적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통일된 증거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b) 의정서는 해당되는 경우 청소년에게 발달적으로 적절해야 하며, 적절할 경우 미국 법무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사무소 간행물 “A National Protocol for Sexual 폭행 의 료 법의학 검사, 성인/청소년” 또는 2011년 이후에 개발된 유사하게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c) 부서는 증거로나 의학적으로 적절한 경우 모든 성적 학대 피해자에게 재정적 비용 없이 현장 또는 외부 시설에서 법의학 검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가능한 경우 SAFE(Sexual Assault Forensic Examiners) 또는 SANE(Sexual Assault Nurse Examiners)가 수행해야 합니다. SAFE 또는 SAN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자격을 갖춘 의료 종사자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SAFE 또는 SANE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d) 강간 위기 개입 및 상담 서비스는 수용 시설("이니셔티브")에서 재소자에게 제공 및 전달되어야 합니다. CHA는 자격을 갖춘 피해자 옹호자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적절한 피해자 옹호자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지 심사를 받았고 일반적으로 성폭행 및 법의학 시험 문제에 관한 교육을 받은 개인입니다.

(e)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자격을 갖춘 피해자 옹호자가 법의학 건강 진단 절차 및 조사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를 동행 및 지원하고 정서적 지원, 위기 개입, 정보 및 추천을 제공해야 합니다.

(f) 자격을 갖춘 피해자 옹호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재소자들에게 상담사와 재소자 간의 모든 의사 소통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확신시켜야 합니다. 40 RCNY § 5-21 (b)에 따라 옹호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수감자와의 의사 소통이 모니터링되는 범위와 성적 학대 보고서가 당국에 전달되는 범위에 대해서도 알려야 합니다. 의무 보고법에 의거.

(g) 이 이니셔티브에 따른 서비스는 성학대 혐의 사건이 보고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어야 하지만, 부서 또는 CHA에 보고가 접수된 후 1주일 이내에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h) CHA는 2018년 6월 1일까지 이 이니셔티브를 구현해야 합니다. 2017년 6월 1일까지 CHA는 다음을 설명하는 서면 계획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1) 제공할 서비스
- (2)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적절한 피해자 옹호자의 자격 증명;
- (3) 자격을 갖춘 피해자 옹호자에 대한 재소자의 접근;
- (4) 재소자와 자격을 갖춘 피해자 옹호자 간의 대면, 서면 및 전화 통신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그리고
- (5)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수용자에게 전달합니다.

(i) CHA는 이 이니셔티브의 구현을 위해 취한 단계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CHA는 이전 3개월(즉,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에 대한 2017년 7월 5일 및 종료 다음 달의 세 번째 영업일에 첫 번째 분기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분기별, CHA는 이니셔티브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러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j) 이 이니셔티브를 시행한 후, CHA는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해 동안 그러한 서비스를 받은 수감자의 수를 포함하여 이니셔티브의 효과를 평가하는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매년 제공해야 합니다. CHA는 전년도에 대해 2019년 7월 2일(즉,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6월 1일까지) 및 그 이후 매년 말의 30일 이내에 첫 번째 연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11 조사를 위한 혐의 회부 보장 정책.

(a) 부서는 모든 성적 학대 및 성희롱 혐의에 대해 행정적 또는 형사적 조사가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b) 부서는 혐의가 잠재적 범죄 행위와 관련되지 않는 한, 성추행 또는 성희롱 혐의가 수사를 위해 범죄 수사를 수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에 회부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서 는 해당 정책을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부서는 그러한 모든 추천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c) 별도의 기관이 범죄 수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러한 출판물은 부서와 수사 기관 모두의 책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하위 장 D: 훈련 및 교육

§ 5-12 직원 교육.

(a) 부서와 CHA는 재소자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

- (1) 성적 학대 및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정책;
- (2) 부서 및 CHA 성추행 및 성희롱 예방, 탐지, 보고, 대응 정책 및 절차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
- (3) 성적 학대 및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감자의 권리;
- (4) 성적 학대 및 성희롱 보고에 대한 보복을 받지 않을 수감자와 직원의 권리;
- (5) 수감된 성적 학대 및 성희롱의 역학;
- (6) 성적 학대 및 성희롱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
- (7) 위협적이거나 실제적인 성적 학대의 징후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방법;
- (8) 재소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피하는 방법;
- (9)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또는 성별 비순응 재소자를 포함한 재소자와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의사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 (10) 외부 기관에 대한 성폭력 신고 의무화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방법.

(b) 그러한 훈련은 직원 시설에서 수감자의 성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남성 수감자만 있는 시설에서 여성 수감자만 있는 시설로 재배치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직원은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c)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은 모든 현재 직원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와 CHA는 모든 직원이 부서 및 CHA의 현재 성적 학대 및 성희롱 정책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2년마다 각 직원에게 재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해에 부서와 CHA는 현재의 성적 학대 및 성희롱 정책에 대한 보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d) 부서와 CHA는 직원 서명 또는 전자 확인을 통해 직원이 받은 교육을 이해했음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e) 모든 CHA 직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f) 모든 부서 직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1)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서 전체 직원의 20%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 2018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부서 직원의 40%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3)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부서 직원의 60%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4)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부서 직원의 80%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g) 부서와 CHA는 이 섹션에 따라 해당 분기 동안 교육을 받은 해당 직원의 수를 분기별로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서와 CHA는 이전 3개월(즉,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에 대해 2017년 5월 1일에 이사회에 첫 분기 보고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각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교육이 완료될 때까지.

(h) 부서 및 CHA 직원이 트랜스젠더 또는 인터섹스인 수감자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교육에는 구금 중인 이들의 심리사회적 및 안전 요구 사항과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사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서와 CHA는 2018년 1월 2일까지 이러한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i) 부서와 CHA는 이 섹션에 따라 전년도인 2017년 3월 1일부터 첫 영업일에 교육 일정, 교육 커리큘럼 및 강사 자격 증명을 매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 이후 매년 말의 다음 3월.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13 자원 봉사 및 계약자 교육.

(a) 부서 및 CHA는 재소자와 접촉하는 자원봉사자 및 계약자 각각이 부서 및 CHA의 성적 학대 및 성희롱 예방, 탐지, 대응 정책 및 절차에 따른 책임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b) 자원봉사자 및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수준과 유형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재소자와의 접촉 수준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재소자와 접촉하는 모든 자원봉사자 및 계약자는 부서 및 CHA의 0을 통보 받아야 합니다. - 성적 학대 및 성희롱에 대한 관용 정책 및 그러한 사건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c) 부서와 CHA는 자원봉사자와 계약자가 받은 교육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d) 부서와 CHA는 2017년 7월 31일까지 자원 봉사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e) 부서와 CHA는 2019년 7월 31일까지 계약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f) 부서와 CHA는 이 섹션에 따라 전년도인 2017년 3월 1일부터 첫 영업일에 교육 일정, 교육 커리큘럼 및 강사 자격 증명을 매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 이후 매년 말의 다음 3월.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14 수감자 교육.

(a) 수용 과정에서 수감자들은 성적 학대 및 성희롱에 관한 부서의 무관용 정책과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의 사건 또는 의심을 보고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b) 접수 후 30일 이내에 부서는 성적 학대 및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그러한 사건을 보고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부서 정책에 관해 재소자에게 직접 또는 비디오를 통해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c) 부서 는 제한된 영어 능력,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자 또는 기타 장애가 있는 사람과 읽기 능력이 제한된 수감자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가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수감자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d) 부서는 이러한 교육 세션에 대한 재소자의 참여에 대한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e)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부서는 주요 정보가 포스터, 수감자 핸드북 또는 기타 서면 형식을 통해 수감자가 지속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거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f) 부서는 충분한 자원과 필요한 인력이 있는 경우 2017년 4월 3일부터 이 섹션의 하위 항목 (a)에서 (e)에 설명된 수감자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g) 부서는 전년도인 2018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이 섹션에 따라 수감자 교육 일정, 교육 커리큘럼 및 이러한 교육을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 증명을 매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 이후 매년 말의 다음 3월 첫째 영업일.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15 전문 교육: 조사.

- (a) [40 RCNY § 5-12](#) 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일반 교육 외에도 부서는 수사관이 감금 환경에서 성적 학대 조사를 수행하는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b) 전문 교육에는 성적 학대 피해자 인터뷰 기술, Miranda 및 Garrity 경고의 적절한 사용, 구금 환경에서의 성적 학대 증거 수집, 행정 조치 또는 기소 의뢰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증거가 포함됩니다.
- (c) 부서는 부서 수사관이 성적 학대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교육을 완료했다는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 (d) 부서는 2017년 4월 3일까지 수사관의 전문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 (e) 부서는 전년도에 대해 2017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3월 첫 번째 영업일에 이 섹션에 따라 교육 일정, 교육 커리큘럼 및 강사 자격 증명을 매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 후 매년 말 이후.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16 전문 교육: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 (a) CHA는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모든 정규직 및 시간제 의료 종사자 및 정신 건강 관리 종사자가 다음과 같은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1) 성적 학대 및 성희롱의 징후를 감지하고 평가하는 방법;
 - (2) 성적 학대의 물리적 증거를 보존하는 방법;
 - (3) 성적 학대 및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 (4) 성적 학대 및 성희롱 혐의 또는 혐의를 보고하는 방법 및 대상.
- (b) CHA는 의료 및 정신 건강 종사자가 CHA 또는 다른 곳에서 이 섹션에 언급된 교육을 받았다는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 (c)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종사자는 CHA에서의 개업의 상태에 따라 [40 RCNY § 5-12 미만의 직원 또는 40 RCNY § 5-13](#) 미만의 계약자 및 자원 봉사자 에게 의무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d) CHA의 정규 및 시간제 의료 및 정신 건강 종사자의 전문 교육은 2017년 4월 3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e) CHA는 이 섹션에 따라 전년도의 경우 2017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첫 번째 영업일에 교육 일정, 교육 과정 및 강사 자격 증명을 매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매년 말.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하위 챕터 E: 성희롱 및 학대의 위험에 대한 선별

§ 5-17 피해자 및 학대 위험에 대한 심사.

- (a) 모든 수감자는 수용 심사 중 그리고 다른 시설로 이송 시 다른 수감자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다른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의 위험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b) 섭취 심사는 일반적으로 시설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c) 그러한 평가는 객관적인 선별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선별 도구는 이사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d) 수용 심사는 최소한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수감자들을 성희롱 위험에 대해 평가해야 합니다.
- (1) 수감자가 정신적, 신체적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지 여부;
 - (2) 수감자의 나이;
 - (3) 수감자의 신체적 체격;
 - (4) 수감자가 이전에 투옥되었는지 여부;
 - (5) 재소자의 범죄 기록이 전적으로 비폭력적인지 여부;
 - (6) 수감자가 성인 또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전과가 있는지 여부;
 - (7) 수감자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또는 성 비순응자인지 여부;
 - (8) 수감자가 이전에 성희롱을 경험했는지 여부; 그리고
 - (9) 취약성에 대한 수용자의 자신의 인식.
- (e) 초기 심사는 성적 학대의 위험에 대해 재소자를 평가할 때 부서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전의 성적 학대 행위, 폭력 범죄에 대한 이전 유죄 판결, 이전 기관 폭력 또는 성적 학대의 이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 (f) 수감자가 시설에 도착한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부서는 수용 심사 이후 부서에서 받은 추가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수감자의 희생 또는 학대 위험을 재평가합니다.
- (g) 수용자의 위험 수준은 추천, 요청, 성적 학대 사건 또는 수용자의 성적 희생 또는 학대 위험과 관련된 추가 정보 수신으로 인해 정당한 경우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 (h) 수감자는 (d)(1), (d)(7), (d)(8)항에 따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완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섹션의 (d)(9).
- (i) 부서는 직원이나 다른 수감자가 민감한 정보를 악용하여 수감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 섹션에 따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시설 내 배포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구현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18 스크리닝 정보의 사용.

- (a) 부서는 [40 RCNY § 5-17](#) 에서 요구하는 위험 선별 정보를 사용하여 성희롱 위험이 높은 재소자를 주거, 침대, 직장, 교육 및 프로그램 배정에 알립니다. 성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 (b) 부서는 각 재소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개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c) 트랜스젠더 또는 인터섹스 수감자를 남성 또는 여성 수감자를 위한 시설에 배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리고 기타 주거 및 프로그래밍 배정을 할 때 부서는 배치가 수감자의 건강과 안전, 배치로 인해 관리 또는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 (d) 부서는 수감자의 외부 생식기 해부학에만 근거하여 남성 또는 여성 시설에 트랜스젠더 또는 간성 수감자를 배정해서는 안 됩니다.
- (e) 트랜스젠더 또는 인터섹스 수감자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f) 각 트랜스젠더 또는 인터섹스 수감자에 대한 배치 및 프로그래밍 할당은 수감자가 경험하는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최소 두 번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g) 트랜스젠더 및 간성 수감자는 다른 수감자와 별도로 샤워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h) 부서는 트랜스젠더 또는 인터섹스 수감자의 배치, 결정을 내리는 데 고려된 모든 정보 및 주택 결정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서는 2017년 1월 5일(이전 2주 기간에 대해, 즉 2016년 12월 19일 - 2016년 12월 31일)에 시작하여 종료 후 2영업일 이내에 이러한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2주마다.

(i) 부서는 충분한 자원과 필요한 인력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발효일까지 이 섹션을 구현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19 보호 보호.

(a) 성희롱의 위험이 높은 수감자는 가능한 모든 대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가능한 학대자와 분리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비자발적 격리 주택에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서가 그러한 평가를 즉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서는 평가를 완료하는 동안 재소자를 비자발적 격리 주택에 24시간 미만 동안 수용할 수 있습니다.

(b) 이러한 목적을 위해 격리된 주택에 배치된 수감자는 가능한 한 프로그램, 특권, 교육 및 취업 기회에 접근해야 합니다. 부서가 프로그램, 특권, 교육 또는 취업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시설은 다음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1) 제한된 기회;
- (2) 제한 기간; 그리고
- (3) 그러한 제한의 이유.

이 섹션의 (b)호에 따른 문서화는 2017년 7월 1일에 시작됩니다.

(c) 교육부는 그러한 수감자들을 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분리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비자발적 격리 주택에 배정해야 하며, 이러한 배정은 일반적으로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 비자발적 분리 주택 할당이 이 표준의 (a)호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부서는 다음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 (1) 수감자의 안전에 대한 부서의 관심에 대한 근거; 그리고
- (2) 대체 분리 수단을 마련할 수 없는 이유.

이 섹션의 하위 항목(d)에 따른 문서화는 2017년 7월 1일에 시작됩니다.

(e) 부서는 매 30일마다 그러한 수감자에게 일반 인구와 분리되어야 할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f) 부서는 이 섹션의 하위 조항 (a), (b), (c), (d) 및 (e)를 통합하는 직원에게 서면 지침을 발행하고 이 지침을 2017년 7월 1일까지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g) 부서는 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1) 성희롱 위험이 높은 수감자를 비자발적 격리 주택에 배치한 근거와 대안적 격리 수단을 마련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 (2) 비자발적 격리 주택에 30일 이상 머무르는 수감자 수.

(h) 2017년 11월 1일을 시작으로, 부서는 지난 3개월(즉,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에 대한 첫 분기별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후 매 분기.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서브챕터 F: 보고

§ 5-20 수감자 보고.

- (a) 부서는 수감자가 성적 학대 및 성희롱, 성적 학대 및 성희롱 보고에 대한 다른 수감자 또는 직원의 보복, 직원 태만 또는 그러한 사건에 기여했을 수 있는 책임 위반을 개인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다양한 내부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 (b) 부서는 또한 수감자들이 부서에 속하지 않고 성적 학대 및 성적 학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즉시 전달할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 단체 또는 사무실에 학대 또는 희롱을 보고할 수 있는 최소한 한 가지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소자가 요청 시 익명을 유지하도록 허용하여 부서 관리에 대한 괴롭힘 .
- (c) 부서 직원은 구두, 서면, 익명 및 제3자의 보고를 수락하고 구두 보고를 즉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 (d) 부서는 모든 주택, 수용 및 프로그램 구역, 진료소 및 식당 홀, 수용자 핸드북 및 방문자 핸드북, 부서의 공개 웹사이트에 있는 포스터에 수감자가 성적 학대 및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 (e) 부서는 직원이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성희롱을 개인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 (f) 부서는 직원이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성희롱을 개인적으로 보고하는 방법과 수감자가 성적 학대 및 성희롱 사건을 보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설명하는 서면 지시서를 모든 직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지침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g) 부서는 2017년 4월 3일까지 이 섹션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부서의 수감자 핸드북과 방문자 핸드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업데이트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21 외부 기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감자의 액세스.

- (a) 부서는 지역, 주 또는 전국 피해자 옹호 기관의 우편 주소와 전화번호(가능한 경우 무료 핫라인 번호 포함)를 제공함으로써 성적 학대와 관련된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외부 피해자 옹호자에게 재소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강간 위기 조직. 부서는 가능한 한 기밀로 수감자와 이러한 조직 및 기관 간의 합리적인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 (b) 부서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그러한 통신이 모니터링되는 범위와 학대 보고서가 의무 보고법에 따라 당국에 전달되는 범위를 재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c) 부서는 성적 학대와 관련된 기밀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재소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자와의 양해 각서 또는 기타 계약을 유지하거나 체결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부서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계약 또는 문서의 사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 (d) 부서는 2017년 4월 3일까지 이 섹션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22 제3자 보고.

- (a) 부서는 성적 학대 및 성희롱에 대한 제3자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을 수립하고 수감자를 대신하여 성적 학대 및 성희롱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 (b) 부서는 방문자 핸드북에 제3자가 수감자를 대신하여 성적 학대 및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Subchapter G: 재소자 보고에 따른 공식 대응

§ 5-23 직원 및 기관 보고 의무.

- (a) 부서는 모든 직원이 시설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 사건에 관한 지식, 의심 또는 정보를 부서 정책에 따라 즉시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건을 보고한 수감자 또는 직원에 대한 보복 그리고 사건이나 보복에 기여했을 수 있는 모든 직원 태만 또는 책임 위반.
- (b) 직원은 지정된 감독자 또는 공무원에게 보고하는 것 외에, 치료, 조사, 기타 보안 및 관리를 위해 부서 정책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성적 학대 보고와 관련된 정보를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
- (c) 1996년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뉴욕 정신 위생법 § 33.13(10) 및 뉴욕 공중 보건법 § 18, 의료 및 정신 건강 종사자는 이 섹션의 하위 항목 (a)에 따라 성적 학대를 보고하고 서비스 시작 시 해당 종사자의 보고 의무와 기밀 유지의 한계를 재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d)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거나 주 또는 지역 취약자 법령에 따라 취약한 성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부서와 CHA는 해당 의무 보고법에 따라 지정된 주 또는 지역 서비스 기관에 주장을 보고해야 합니다.
- (e) 부서는 제3자 및 익명의 보고를 포함하여 성적 학대 및 성희롱에 대한 모든 주장을 이러한 주장을 조사하도록 지정된 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24 기관 보호 의무.

부서는 재소자가 임박한 성적 학대의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면 재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25 기타 격리 시설에 보고.

- (a) 수용자가 다른 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받은 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장에게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b) 그러한 통지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주장을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c) 그러한 주장을 처음 접수한 시설은 그러한 통지를 제공했음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d) 그러한 통지를 받은 시설 장은 이 규칙에 따라 혐의가 조사되도록 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26 직원 최초 대응 의무.

- (a) 수감자가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알게 된 경우, 보고에 응답하는 첫 번째 보안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1)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합니다.
 - (2) 증거 수집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범죄 현장을 보존하고 보호합니다.
 - (3) 학대가 여전히 물리적 증거 수집을 허용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경우 씻기, 양치질, 옷 갈아입기, 소변 보기 등 물리적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요청하십시오. , 배변, 흡연, 음주 또는 식사; 그리고
 - (4) 학대가 여전히 물리적 증거 수집을 허용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학대 혐의자가 적절한 경우 씻기, 양치질, 옷 갈아입기, 배뇨, 배변, 흡연, 음주 또는 식사.
- (b) 최초 대응 직원이 보안 직원이 아닌 경우, 대응 직원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물리적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보안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27 조정된 응답.

2017년 4월 3일까지 부서는 직원 최초 대응자, 의료 및 정신 건강 종사자, DOI 또는 ID 조사자, 시설 리더 간의 성적 학대 사건에 대응하여 취한 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서면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28 보복에 대한 기관 보호.

(a) 부서는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을 보고하거나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 조사에 협력하는 모든 재소자와 직원을 다른 재소자 또는 직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직원 또는 부서를 담당할지 지정해야 합니다. 보복 감시.

(b) 부서는 재소자 피해자 또는 학대자를 위한 주택 변경 또는 이전, 피해자와의 접촉에서 의심되는 직원 또는 재소자 학대자의 제거, 성적 학대 보고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는 재소자 또는 직원을 위한 정서적 지원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는 성희롱 또는 조사 협력.

(c) 성적 학대가 보고된 후 최소 90일 동안 부서는 성적 학대를 보고한 재소자 또는 직원과 성적 학대를 겪은 것으로 보고된 재소자의 행동과 처우를 모니터링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감자 또는 직원에 의한 보복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복을 시정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서에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항목에는 모든 수감자 징계 보고서, 주택 또는 프로그램 변경, 부정적인 성과 검토 또는 직원 재배치가 포함됩니다. 초기 모니터링이 지속적인 필요를 나타내는 경우 부서는 90일 이상 이러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늦어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서는 성적 학대 사건을 보고한 수감자와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d) 재소자의 경우 그러한 모니터링에는 정기적인 상태 확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 조사에 협력하는 다른 개인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경우 부서는 보복으로부터 해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 해당 부서의 모니터링 의무는 해당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료됩니다.

(g) 2017년 4월 3일까지 부서는 이 섹션의 조항을 통합하는 모든 직원에게 서면 지침을 발행하고 이 지침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29 주장 후 보호 양육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되는 수감자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40 RCNY § 5-19 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서브챕터 H: 조사

§ 5-30 형사 및 행정 기관 조사.

(a) 부서는 성적 학대 및 성희롱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를 수행할 때 제3자 및 익명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며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b) 성적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부서는 40 RCNY § 5-15 에 따라 성적 학대 조사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은 조사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

(c) 조사관은 이용 가능한 물리적 및 DNA 증거와 이용 가능한 전자 모니터링 데이터를 포함하여 직접적 및 정황적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 용의자 및 증인을 인터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가해자와 관련된 이전의 불만 사항 및 성적 학대 보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d) 증거의 질이 형사 기소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부서 는 강제 인터뷰가 후속 형사 기소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DOI 및/또는 검사와 협의한 후에만 강제 인터뷰를 수행해야 합니다.

(e) 추정되는 피해자, 용의자 또는 증인의 신뢰성은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 사람의 재소자 또는 직원 상태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서 는 성적 학대를 주장하는 수감자가 그러한 주장의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 또는 기타 진실을 말하는 장치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f) 모든 조사:

- (1) 직원의 행동이나 행동 실패가 학대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 (2) 물리적, 증언 및 문서 증거, 신뢰성 평가의 근거, 조사 사실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 (g) 범죄 조사는 물리적, 증언 및 문서 증거에 대한 철저한 설명이 포함된 서면 보고서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모든 문서 증거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h) 범죄로 보이는 행위에 대한 입증된 주장은 기소를 위해 회부되어야 합니다.
- (i) 부서는 주장된 학대자가 부서 또는 CHA에 수감되거나 고용되는 한 이 섹션에 언급된 모든 서면 보고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j) 의심되는 학대자 또는 피해자가 부서의 고용이나 통제 또는 CHA의 고용에서 떠나는 것은 조사 종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k) 외부 기관이 성적 학대를 조사할 때 부서는 외부 조사관과 협력하고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l) 부서는 관련 직원이 정학, 근무 변경, 재소자 비접촉 직위로 재배치 또는 제한 재소자에 재배치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초기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 혐의가 부서에 보고된 후 영업일 기준 삼(3) 일 이내에 조사 서류 중인 연락처 게시물("추천 날짜"). 성적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부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고소인의 안전과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DOI와 협의한 후 그러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m) 부서는 이 마감일(문서화되어야 함)의 연장을 정당화하는 부서의 통제를 벗어나는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성적 학대 및 성희롱 혐의에 대한 모든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서는 부서에 충분한 자원과 필요한 인력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발효일까지 이 하위 섹션을 구현해야 합니다.
- (n) 성학대 혐의 사건이 조사 또는 면제 결정을 위해 DOI 또는 DA에 회부된 경우, 성적 학대 조사 완료 시간은 다른 기관이 해당 문제를 조사하거나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동안 계산됩니다. 면역.
- (o)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 혐의를 받는 수감자는 특별한 상황(문서화되어야 함)을 제외하고 추천 날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인터뷰해야 합니다.
- (p)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모든 인터뷰는 예외적인 상황(문서화해야 함)을 제외하고 면책 부여 후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q) 수감자의 진술이나 인터뷰를 요청할 때 수감자는 성추행 또는 성희롱 혐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받지 않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진술 또는 인터뷰 요청은 거주 단위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에 관련된 다른 수감자 또는 직원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수감자 인터뷰는 사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 (r) 성학대 또는 성희롱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부서는 조사 결과를 요약한 마무리 메모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료 각서가 완료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부서는 위원회에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s) 모든 종결 메모는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 혐의 가해자가 부서 또는 CHA에 수감되거나 고용되는 한, 5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 (t) 부서는 이 섹션의 조항을 통합하는 모든 ID 직원에게 서면 지침을 발행하고 이 지침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31 행정 조사에 대한 증거 기준.

부서는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 혐의가 입증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증거의 우위보다 더 높은 기준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32 재소자에 대한 보고.

- (a) 수용자가 시설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 후, 부서는 주장이 입증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는지 또는 근거가 없는지 여부를 재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b) 부서 에서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수감자에게 알리기 위해 수사 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 (c) 부서 또는 CHA 직원이 재소자에게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재소자의 주장에 따라 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소자에게 후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국에서 해당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 (1) 교직원은 더 이상 재소자의 단위 내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 (2) 직원이 시설에서 더 이상 고용되지 않습니다.
 - (3) 부서는 직원이 시설 내 성적 학대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는
 - (4) 부서는 직원이 시설 내 성적 학대와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d)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후, 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1) 부서는 학대 혐의자가 시설 내 성적 학대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는
 - (2) 부서는 학대 혐의자가 시설 내 성적 학대와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e) 그러한 모든 통지 또는 시도된 통지는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제1장: 규율

§ 5-33 직원에 대한 징계 제재.

- (a) 부서 및 CHA 직원은 기관의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 정책을 위반한 경우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b) 해고는 성적 학대에 연루된 부서 및 CHA 직원에 대한 추정 징계 제재입니다.
- (c)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실제로 성희롱에 가담한 경우는 제외)과 관련된 부서 및 CHA 정책 위반에 대한 징계 제재는 행한 행위의 성격과 상황, 직원의 징계 이력 및 제재에 상응해야 합니다. 유사한 이력을 가진 다른 직원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과됩니다.

(d) 부서 및 CHA의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 정책 위반으로 인한 모든 해고 또는 사직이 아니었다면 해고되었을 직원의 사임은 해당 활동이 명백하게 범죄적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련 라이선스 기관에.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34 계약자 및 자원 봉사자에 대한 시정 조치.

- (a) 성적 학대에 가담하는 계약자 또는 자원 봉사자는 재소자와의 접촉이 금지되고 해당 행위가 명백하게 범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집행 기관과 관련 허가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b) 부서는 적절한 교정 조치를 취하고 계약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부서의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재소자와의 추가 접촉을 금지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35 재소자에 대한 징계 제재.

- (a) 수감자는 수감자가 수감자 간 성적 학대에 관여했다는 행정적 발견 또는 수형자 간 성적 학대에 대한 유죄 판결에 따라 공식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 (b) 제재는 저지른 학대의 성격과 상황, 재소자의 징계 이력, 유사한 이력을 가진 다른 재소자가 유사한 범죄에 대해 부과한 제재에 상응해야 합니다.
- (c) 징계 절차는 어떤 유형의 제재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때 재소자의 정신 장애 또는 정신 질환이 그의 행동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d) 부서는 직원이 그러한 접촉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만 직원과의 성적 접촉에 대해 수감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 (e) 징계 조치의 목적을 위해,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에 근거하여 선의로 작성된 성적 학대에 대한 보고는 조사가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립하지 못하더라도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혐의.
- (f) 부서는 재량에 따라 수감자 간의 모든 성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 수감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 는 그러한 활동이 강요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활동을 성적 학대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Subchapter J: 의료 및 정신 치료

§ 5-36 의료 및 정신 건강 검진; 성적 학대의 역사.

- (a) 40 RCNY § [5-17](#) 에 따른 심사 결과 수감자가 이전에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기관 환경에서 발생했든 지역사회에서 발생했든 관계없이 부서는 재소자에게 후속 회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섭취 선별 검사 후 14일 이내에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 (b) 시설 환경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학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의료 및 정신 건강 종사자 및 기타 직원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필요한 경우 주거, 침대, 직장을 포함한 치료 계획 및 보안 및 관리 결정을 알리는 데 필요합니다. , 교육 및 프로그램 할당, 또는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 (c) 의료 및 정신 건강 종사자는 수감자가 18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환경에서 발생하지 않은 이전의 성희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37 응급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

- (a) 성적 학대의 수감자 피해자는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의료 및 정신 건강 종사자가 그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는 응급 의료 및 위기 개입 서비스에 적시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b) 최근 학대가 보고된 시점에 자격을 갖춘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 보안 직원의 최초 대응자는 40 RCNY § [5-24](#) 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비 조치를 취하고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의료 및 정신 건강 종사자.
- (c) 수감 중 성적 학대의 수감자 피해자는 의학적으로 적절한 경우 전문적으로 허용되는 치료 표준에 따라 응급 피임 및 성병 예방에 대한 적시 정보와 접근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 (d)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명하거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사에 협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정적 비용 없이 피해자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38 성적 학대 피해자를 위한 지속적인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 (a) CHA는 모든 교도소, 교도소, 수용소 또는 청소년 시설에서 성적 학대의 피해를 입은 모든 수감자에게 의료 및 정신 건강 평가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b)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평가 및 치료에는 적절한 경우 후속 서비스, 치료 계획,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로 이송 또는 배치되거나 구금에서 석방된 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의뢰가 포함됩니다. .
- (c) CHA는 그러한 피해자에게 지역사회 수준의 치료와 일치하는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d) 수감된 동안 성적으로 질내 삽입을 한 수감자 피해자에게 임신 테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 (e) 이 섹션의 하위 항목 (d)에 설명된 행위로 인해 임신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피해자는 모든 합법적인 임신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시에 종합적인 정보를 받고 접근해야 합니다.
- (f) 수감 중 성적 학대의 피해자는 의학적으로 적절한 경우 성병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g)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명하거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사에 협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정적 비용 없이 피해자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하위 챕터 K: 데이터 수집 및 검토 감사

§ 5-39 성적 학대 사건 검토.

- (a) 해당 부서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성적 학대 조사가 끝날 때 성적 학대 사건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 (b) 그러한 검토는 일반적으로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c) 검토 팀에는 상급 관리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라인 감독자, 조사관,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종사자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 (d) 검토팀은:

- (1) 혐의 또는 조사가 성적 학대를 더 잘 예방, 감지 또는 대응하기 위해 정책이나 관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지 고려하십시오.
- (2) 사건이나 주장이 인종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는지 고려하십시오. 민족성; 성 정체성;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또는 간성 식별, 지위 또는 인지된 지위; 또는 갱 소속; 또는 동기가 부여되거나 시설의 다른 그룹 역학에 의해 유발되었습니다.
- (3) 해당 지역의 물리적 장벽이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의 지역을 조사합니다.
- (4) 다른 교대 근무 중에 해당 지역의 직원 배치 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 (5) 직원의 감독을 보완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술을 배포하거나 확대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 (6) 이 표준의 단락 (d)(1) - (d)(5)에 따라 내린 결정과 개선을 위한 권장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결과 보고서를 준비하고 해당 보고서를 시설에 제출합니다. 책임자 및 PEA 규정 준수 관리자.
- (e) 부서는 개선 권고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f) 부서는 분기별로 모든 성적 학대 사건 검토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40 데이터 수집 및 검토.

(a) 부서는 표준화된 도구 및 정의를 사용하여 시설(및 수감자를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수송 차량)에서 의심되는 각각의 성적 학대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균일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는 40 RCNY §의 (a), (b), (c) 및 (d)호에 명시된 재소자 대 재소자 및 교직원 간 성적 학대의 정의 및 관련을 사용해야 합니다. [5-02](#) . 부서는 이 섹션의 하위 항목(d)에 지정된 사건 데이터를 위원회에 처음 제공하기 최소 30일 전에 검토를 위해 그러한 표준화된 도구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b) 부서는 보고서, 조사 파일 및 성적 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사건 기반 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섹션의 하위 항목 (a), (d), (f) 및 (g)에 따라 데이터를 유지, 검토 및 수집해야 합니다. 학대 사건 검토.

(c) 이 규칙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는 이 섹션에 열거된 데이터가 부서와 CHA가 이 장에 구체화된 규칙을 준수하는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를 재평가합니다.

(d) 부서는 성적 학대의 각 사건에 관한 다음 데이터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1)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 및 장소
 - (2) 주장되는 성적 학대의 성격(예: 수감자 간, CHA 직원-수감자, 계약자 또는 자원봉사자, 수감자 대 수감자 등);
 - (3) 주장되는 성적 학대 유형(40 RCNY § [5-02](#) 의 (a), (b), (c) 및 (d)에 정의된 대로);
 - (4) 인구 통계
 - (i) 피해자로 추정되는 성별(즉, 남성 또는 여성)
 - (ii) 의심되는 가해자의 성별(즉, 남성 또는 여성);
 - (iii) 피해자로 추정되는 연령(즉, 18세 미만, 18-21세 또는 21세 이상);
 - (iv) 의심되는 가해자의 나이(수감자의 경우)(즉, 18세 미만, 18~21세 또는 21세 이상)
 - (v)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종/민족(즉,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 히스패닉이 아닌 흑인,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기타),
 - (vi) 주장된 피해자가 트랜스젠더 또는 인터섹스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
 - (vii) 주장된 피해자가 레즈비언, 게이 또는 양성애자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
 - (viii) 주장된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
 - (5) 알려진 경우 사건을 보고한 사람(예: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피해자가 아닌 재소자, 부서 또는 CHA 직원 등);
 - (6) 보고 방법(예: 핫라인, 구두 또는 서면, 311 등);
 - (7) 비디오 카메라 감시 가능(예/아니오);
 - (8) 이용 가능한 DNA 증거(예/아니오);
 - (9) 이용 가능한 기타 물리적 증거(예/아니오);
 - (10) 강간 키트 투여, 거부 또는 적용 불가;
 - (11) 조사가 시작된 날짜;
 - (12) 조사가 종료된 날짜(예: 종료 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 (13) 사건이 입증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는지 또는 근거가 없는지 여부;
 - (14) 조사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었는지 여부
 - (15) 의심되는 가해자가 직원인 경우 수사 중이든 폐쇄된 후이든 직원은 정직, 근무 변경, 비수용자 접촉 위치, 제한된 수감자 접촉에 할당 직위 또는 행정 휴가
 - (16) 주장된 가해자가 직원인 경우 이전에 성적 학대 또는 성희롱 혐의가 그 사람에게 대해 제기되었는지 여부;
 - (17)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직원인 경우 시장의 행정명령 제16호에 따라 사용면제 제안을 거부했는지 여부, 그렇다면 그 결과 징계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
 - (18) DOI가 조사를 맡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조사 상태(예: 계류 중, 검찰청에 회부, 부서로 회부 등);
 - (19) 직원 간 또는 수감자 간의 성적 학대에 대한 주장이 검찰청에 회부되었는지 여부, 해당 검찰청이 기소를 거부했는지 여부, 직원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 결과,
 - (20) 다음을 포함한 혐의가 징계 조치를 위해 회부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b) 혐의를 받는 직원 가해자가 혐의 대신에 사임했는지 또는 협상된 항변의 일부로 사임했는지 여부.
- (e) 법에서 달리 금지하지 않는 한, CHA는 이 섹션의 (d)호에 열거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서를 지원할 것입니다.
- (f) 부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작하여(2017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이 섹션의 하위 항목 (d)에 열거된 데이터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6개월마다. 부서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심되는 각 사건에 관한 이 보고서의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 (g) 부서는 성적 학대 및 성희롱 예방, 탐지, 대응 정책, 관행 및 교육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데이터를 검토해야 합니다.

- (1) 문제 영역 및 경향 식별;
- (2)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 (3) 위원회에 대한 반기 평가 보고서에 각 시설 및 부서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를 포함합니다.
- (h) 이러한 반기별 평가 보고서에는 현재 6개월 간의 데이터 및 시정 조치를 이전 6개월 간의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며, 성적 학대 및 성적 학대를 다루는 부서의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괴롭힘.
- (i) 이러한 반기 평가 보고서는 부서 국장의 승인을 받고 위원회에 제출되며 부서 웹사이트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j) 부서는 출판이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위협을 제시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 또는 기타 법적 고려 사항을 제시할 경우 반기 평가 보고서에서 특정 자료를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된 자료의 성격을 나타내야 합니다.
- (k) 부서는 2017년 8월 1일(2017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기간 동안) 및 이후 각 6개월 기간이 종료된 후 45일 이내에 첫 반기 평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l)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수집된 모든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해야 합니다.
- (m) 이 섹션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부서는 모든 개인 식별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 (n) 부서는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률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최초 수집일로부터 최소 10년 동안 이 섹션에 따라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 5-41 감사

부서는 모든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응답, 감사 수정 조치 계획, 감사 결과에 대한 항소, 항소에 대한 결정의 사본을 PRE 표준 § 115.93 및 PRA 표준 §에 따라 PREA 인증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15.401~115.405. 부서는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그러한 자료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하위 챕터 L: 분산

§ 5-42 차이.

부서 또는 CHA는 40 RCNY § 1-15 에 명시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이러한 40 RCNY 5장 규칙의 특정 하위 부문 또는 섹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11월 25일 도시 기록 추가, 2017년 1월 2일 발효)

면책 조항: 면책 조항: 이 사이트에 나타나는 강령 및 기타 문서는 시에서 채택한 최신 법률 또는 규칙을 아직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American Legal에 제공되고 이 웹사이트가 생성된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로 인해 특정 텍스트 오류 및 누락이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 및 누락이 수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오류를 발견한 사용자는 NYC.editor@amlegal.com 또는 800-445-5588로 게시자에게 연락하거나 NYCCodeRulesCharter@law로 뉴욕 시 법률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yc.gov.

주최: American Legal Publishing Corporation

제6장 교도소 내 주거 제한

하위 챕터 A: 핵심 원칙

§ 6-01 목적.

(a) 이 40개 RCNY [6장](#) 규칙은 다음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촉진합니다.

(1) 구금자와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의 안전 보호:

(i) 구금된 모든 사람과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도록 보장합니다.

(ii) 구금된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거나 비하하는 제한을 금지합니다.

(iii) 제한이 부과되는 적절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한으로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 그리고

(iv) 구금된 사람들을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직원, 구금 중인 다른 사람들 및 대중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최소한의 제한 환경에 구금합니다. .

(2) 다음을 통해 적법 절차와 절차적 및 회복적 정의 원칙에 따라 구금자를 제한 주택에 배치합니다.

(i) 사람들이 부서에 처음 구금되었을 때 징계 규칙 및 위반에 대한 제재를 설명합니다.

(ii) 저지른 범죄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

(iii) 징계 규칙을 적용하고 공정하고 일관되게 제재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iv) 구금된 사람들이 제한적 주택에 배치되는 근거를 이해하고 그러한 주택에 배치되는 것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개별 제한의 근거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3) 다음을 통해 구금된 사람들의 재활 및 지역사회로의 재통합 촉진:

(i) 좋은 행동을 장려합니다.

(ii)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면서 수용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외출 시간과 프로그래밍 참여를 제한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iii) 필요한 프로그래밍 및 리소스 제공.

(4) [이 40 RCNY Chapter 6](#) 규칙 및 그 기반이 되는 핵심 원칙에 대한 준수 모니터링 및 추적 :

(i) 성과 측정 개발 그리고

(ii) 성과 결과를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하위 장 B: 정의

§ 6-02 일반 정의.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 **위원회** "는 뉴욕시 교정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b) " **CHA** "는 뉴욕시에서 담당 부서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 교정 보건 당국을 의미합니다.

(c) " **부서** "는 뉴욕시 교정국을 의미합니다.

(d) " **시설** "은 부서에서 개인을 감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소, 기관, 건물(또는 그 일부), 건물 집합, 구조 또는 영역(건물 또는 건물 집합을 둘러싸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의미합니다.

(e) " **보건 직원** "은 교육, 자격 증명 및 경험을 통해 법률에 의해 전문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하도록 허용된 CHA에 고용된 의료 보건 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f) " **구금된 사람** "은 시설에 감금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g) " **보안 직원** "은 시설의 주택, 레크리에이션 구역, 식당 및 기타 프로그램 구역에서 구금된 사람들의 감독 및 통제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직원을 의미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03 주택 제한 및 관련 용어의 정의.

(a) 이 장의 목적을 위해 " **제한적 주택** "은 부서가 일반 인구에 수용되는 사람들과 별도로 구금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1) 단위에서 하루에 제공되는 셀 밖 시간이 십사(14) 시간 미만입니다. 또는

(2) 단위의 사람들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됩니다.

(i) 최소 기준의 다른 장에 따라 의무화된 서비스는 일반 인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보다 더 제한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시설법 도서관 이외의 법률 도서관 서비스 또는 시설 예배당 이외의 종교 서비스 제공이 포함됩니다.

(ii) 사람이 유닛에 혼자 거주합니다.

(iii) 시설의 물리적 설계는 4명 이상의 구금자가 데이룸에 모이는 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b) 이 장의 목적상 제한적 주택과 관련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징계 청문회** "는 구금된 사람이 기소된 위반에 대한 청문회를 의미합니다.

(2) " **일반 인구** " 또는 " **일반 인구 주택** "은 이 섹션에 정의된 제한적 주택 단위, 전문 의료 단위 또는 전문 정신 건강 단위가 아닌 모든 주택 단위를 의미합니다.

(3) " **I, II 또는 III 등급 범죄** "는 39 RCNY § [1-03](#) , 교도부 수감자 규정집에 정의된 범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1등급은 가장 심각한 범죄 등급입니다.

(4) " **청문심판관** "이라 함은 구금자의 징계청문회 또는 배치심의청문회를 주재하는 대위 이상의 부서직원을 말한다.

- (5) "주거 지역" 또는 "주택 단위"는 구금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동 구역을 포함한 시설 주택을 의미합니다.
- (6) "위반"은 부서 규칙의 위반을 의미합니다.
- (7) "취수" 또는 "취수 지역"은 적절한 주거 배치에 대한 추가 평가를 기다리는 동안 구금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서 지정한 지역입니다.
- (8)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의 감독하에 일하는 변호사 또는 일반인을 말합니다.
- (9) "'M'" 지정 "은 *Brad H. v. City of New York*의 합의에 따라 할당된 지정입니다. 한 사람이 수감된 사건 중에 정신 건강 시스템에 최소 세 번(3) 횟수, 특정 종류의 약물을 처방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가 정신 건강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건 당국에 의해 평가되었습니다.
- (10) "필수 서비스"는 부서가 위원회의 최소 기준에 따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11) "심리 전 구금"은 징계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RMAS 레벨 1에 구금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2) "PSEG" 또는 "징벌적 분리"는 징계 청문회 후에 부과된 징계 제재에 따라 일반 대중과 분리되어 장기간 격리된 구금 상태를 의미합니다.
- (13) "구속"은 다음 장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수갑, 플렉스 커프, 허리 보호 장치(손을 사슬로 묶거나 수갑을 채울 수 있는 허리 둘레의 벨트 또는 사슬로 구성), 다리 보호 장치(발목 부위에 결쇠를 가함), 수갑 안전 커버(수갑의 잠금 장치를 덮고 조작을 방지하는 보호 장치), 보호 병어리장갑(손을 덮고 수갑으로 고정되는 보호관 모양의 병어리장갑), 거니(바퀴가 달린 들것), 4점 구속(고정하는 구속) 팔과 다리 모두), 5점 구속(4점 구속과 함께 구속 의자 및 WRAP 구속 장치와 같은 추가 구속 적용) 및 구속 책상(학교형 책상 표면 및 발목이 있는 의자 구속).
- (14) 40 RCNY § 6-27 에 의거하여 "회복 재활 단위" 또는 "RRU"는 퇴임하는 사람들을 위해 향상된 프로그래밍, 보안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하는 15명 이하의 일반 인구 주택 지역입니다. RMAS에서.
- (15) "제한적 지위"는 부서에서 안전 및 보안 목적을 위해 강화된 식별, 추적 및/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구금자에게 부여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 (16) "위험 관리 책임 시스템" 또는 "RMAS"는 40 RCNY § 6-08 ~ § 6-26 에 의거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들을 일반 인구와 분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진행 모델입니다. 신속하고 확실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RMAS는 개인의 필요에 맞춘 사례 관리 서비스, 행동 지원 계획, 증거 기반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RMAS에는 레벨 1과 레벨 2가 포함되며 레벨 1이 가장 제한적입니다.
- (17) "전문 의료 주택"은 의무실 및 전염병 병동(CDU)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위한 주택입니다. 전문 의료 주택의 입,퇴원은 임상 기준에 따라 CHA에서 결정합니다.
- (18) "전문화된 정신 건강 주택"은 임상 효과 가속화를 위한 프로그램(PACE) 단위 및 징벌적 분리에 대한 임상적 대안(CAPS) 단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한 주거 단위입니다. 입원 및 퇴원은 임상 기준에 따라 CHA에서 결정합니다. 정신 관찰(MO) 시설은 이 규칙의 목적을 위한 전문 정신 건강 주택이 아닙니다.
- (19) "정직" 직원은 동일한 직위에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임원입니다.
- (20) "청년"은 18세에서 21세 사이의 구금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하위 챕터 C: 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배치 대응

§ 6-04 청문회 전 구금.*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6-04: 심리 전 구금	
(a) PHD에 RMAS 레벨 1 사용	11월 1일
(e) (예비 구금에 대한 반기 보고서)	7월 1일부터 6개월마다

- (a) 법무부는 구금된 사람이 위반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혐의를 받고 있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RMAS 레벨 1에 따라 사전 청문회 구금을 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사람이 지난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등급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교육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 (2) 다음을 위해 일반 인구에서 해당 개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 (i) 청문회 전에 직원이나 구금된 다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또는
- (ii) 자신의 위반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도록 구금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b) 청문회 전 구금 자격이 있고 구금된 구금자는 청문회 전 구금된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징계 청문회를 받아야 합니다. 청문회 전에 그러한 구금에 소요된 시간은 RMAS 레벨 1에 대한 형량에 포함됩니다.
- (c) 부서에서 영업일 7일 이내에 위반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해당 부서는 사전 청문회 구금을 석방해야 합니다.
- (d) 청문회 전 구금에 구금된 사람이 그 사람 또는 구금된 직원 및 기타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보안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부서가 결정하는 경우, 부서는 청문회 전 구금에서 그 사람을 석방해야 합니다.
- (e) 부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전 심리 구금 사용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반기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배치에서 청문회까지의 시간, (4) 청문회 전 구금된 사람들이 RMAS 레벨 1에 계속 배치되도록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5) 청문회 전 구금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서 또는 위원회가 판단하는 기타 정보. 보고서에는 월별로 세분화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f) 위원회와 부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40 RCNY § 6-04(e)에서 요구 하는 보고서에 대한 보고 템플릿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05 단계적 축소를 위한 감금.*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6-05: 단계적 축소 격리	
(g) (경감 시간(6시간), 재승인(3시간), 감금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에 통지)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
(c) (매 15분마다 축소 감금소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 및 청각 관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i) (단계적 축소에 대한 분기 보고서)	발효일로부터 8개월 이내

- (a) 부서는 단계적 완화 목적으로 구금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진행 중인 부서 활동을 크게 방해하는 행동을 진정시키도록 사람을 돕습니다. 부서는 덜 제한적인 다른 조치가 소진되었거나 효과가 없었거나 비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 목적을 위해 감금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 (2) 구금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희생된 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람을 일시적으로 구금합니다.
- (3) 화학 스프레이에 노출된 후 구금된 사람들의 오염 제거를 용이하게 합니다.
- (b) 부서는 구금자의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와 약물에 대한 접근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금자의 초기 및 후속 위치를 포함하여 단계적 감금에 배치되었음을 즉시 CHA에 알려야 합니다.
- (c) 부서는 15분마다 축소 격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시각 및 청각 관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 (d) 부서는 축소 감금 목적으로만 개별 셀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포는 섭취 구역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 단계적 축소 격리에 사용되는 셀은 40 RCNY § 1-03 및 40 RCNY § 1-04에 명시된 개인 위생 및 공간 요구 사항에 지정된 기능을 갖고 이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 (f) 부서는 단계적 완화 격리 기간 동안 구금된 사람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식사와 거의 같은 시간에 제공해야 하며, 동일한 품질 및 양의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 (g) 부서는 평가를 수행하고 개인의 차기 배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누군가를 단계적 감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음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 (1) 부서는 사람을 6시간 이상 단계적 감금에 가둘 수 없습니다. 부서는 이 목적을 위해 설계된 양식에 모든 배치를 문서화해야 하며 배치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2) 사람을 3시간 동안 단계적 감금 상태로 유지한 후, 부서는 부서의 보안 명령 계통에 대한 서면 승인을 통해 감금을 다시 승인해야 합니다. 재승인 승인은 3시간 후 감금 해제 감금에서 구금된 사람을 옮기기 위해 부서에서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포함하여 그 이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 (3) 부서는 사람을 최대 6시간 이상 단계적 축소 감금에 가둘 때마다 40 RCNY § 1-15 (b)(3)에 따라 비상 변동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한 선언에는 누군가가 총체적으로 축소 감금에 구금된 기간과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두지 않은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이 선언에 40 RCNY §§ 6-05 (g)(1) 및 (2)에 명시된 초기 승인 및 재승인 양식과 승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 (4) 이 절의 시간 제한을 준수할 목적으로 구금자의 단계적 축소 감금 기간은 단계적 축소 감방 또는 구역에 처음 배치된 시간부터 개인이 이송될 때까지 계산되어야 합니다. 새로 할당된 주거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이 다시 거주하기 전에 차후 단계적 완화 격리 감금소 또는 지역에서 보낸 시간이 포함됩니다.
- (h) 부서는 각 시설에서 단계적 축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된 특정 영역의 업데이트된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목록을 이사회와 공유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이사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공개보고서의 측정항목은 총계 및 시설별로 보고하고 월별로 세분화한다.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는 개별 배치 수준에서 추적되고 이사회에서 전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사회에 제공됩니다.
- (j) 위원회와 부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40 RCNY § 6-05 (i)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에 대한 보고 템플릿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 (k) 부서는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40 RCNY § 6-05 (d)에서 요구하는 대로 섭취 구역 외부의 개별 셀 사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보류 중인 구현:
- (1) 부서는 이 섹션에 명시된 다른 모든 요구 사항에 따라 단계적 축소 격리에 사용되는 흡입 구역을 운영해야 합니다.
- (2) 흡입 구역의 단계적 축소 격리에는 적절한 수의 수세식 변기, 온수 및 냉수를 포함한 식수가 있는 세면대, 거기에 수감된 수감자의 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앉고 기대는 적절한 가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역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06 비상 잠금.*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6-06: 비상 잠금	
(e) (긴급 격리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하는 이유 및 목표에 대한 문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g) (6시간 이상 비상 격리가 적용된 주택 지역의 CHS 의료 및 정신 건강 반올림)	
(i) 및 (j) (긴급 잠금의 영향을 받는 서비스 추적)	

(l) (이 섹션의 요구 사항 준수에 관한 DOC 및 CHS 지침)	
(m) (CHS 분기별 보고서 re: 비상 잠금)	
(o) (긴급 잠금에 대한 DOC 데이터 보고)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a) 비상 폐쇄는 직원이 심각한 사건을 조사 또는 방지하고, 수색을 수행하거나, 질서나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 (b) 부서는 비상 폐쇄의 범위를 제한하여 폐쇄되어야 하는 주택 지역만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c) 부서는 비상 폐쇄가 시작되거나, 폐쇄가 정기적으로 예정된 폐쇄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거나, 폐쇄가 6시간을 초과하는 즉시 이사회와 CHA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 특정 주택 지역 위치 및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부서는 부서의 사고 보고 시스템 또는 실시간 운영 보고를 위해 마련된 유사한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d) 부서에서 비상 폐쇄로 인해 방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즉시 부서는 웹사이트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방문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 (e) 부서는 각 비상 폐쇄의 위치와 이유(예: 싸움, बे기, 무력 사용, 면도기 분실) 및 이러한 이유와 관련하여 폐쇄 동안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문서화해야 합니다(예: 위원회에서 전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력 사용 조사, 밀수품 회수 검색 수행).
- (f) 정기적으로 예정된 폐쇄 기간을 넘어 비상 폐쇄의 연장을 승인할 때, 부서는 폐쇄에 대해 명시된 이유와 목적을 재평가하고 폐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예: 수색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주거 지역을 잠글 수 있는 직원이 충분하지 않음).
- (g) 비상 격리가 연속 6시간 이상 지속된 모든 주거 지역에서 CHA 직원은 의료 및 정신 건강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라운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DOC는 모든 격리 기간 동안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특히 응급 또는 긴급 의료 및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적시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비상 격리 후 가능한 한 빨리 지연되거나 놓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h) 24시간 이상 계속되는 폐쇄의 경우, 부서는 비상 사태를 해결하고 폐쇄를 해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i) 다음 서비스의 경우, 부서는 위원회가 전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비상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즉, 취소, 지연 또는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추적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주택 지역 및 사람들의 수:
- (1) 레크리에이션
 - (2) 법률 도서관
 - (3) 방문
 - (4) 종교 서비스
 - (5) 교육 서비스
 - (6) 병가
 - (7) 기타 클리닉 서비스
 - (8) 의약품/약국
 - (9) 예정된 의료 및 정신 건강 진료 예약(섬 내외 전문 진료 예약 포함)
 - (10) 임상 라운드
 - (11) 프로그래밍
- (j)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 부서는 비상 폐쇄의 영향을 받는 각 주택 지역에 대해 각 서비스가 제공된 시간을 추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k) 부서는 비상 잠금 및 잠금 확장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 대한 직접 액세스 권한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l) 부서와 CHA는 이 섹션의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서면 지침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CHA가 필요한 치료의 분류를 용이하게 하고, 환자 치료에 대한 중단을 최소화하고, 의료/정신 건강 약속의 일정 재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 폐쇄 동안 및 후에 부서와 CHA 간의 의사 소통 및 조정 프로토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m) CHA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고된 긴급 폐쇄 및 폐쇄 연장에 대한 다음 데이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분기별 보고서를 월별로 분류하여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1) 부서에서 CHA에 보고한 긴급 잠금 및 잠금 확장의 총 수 및 시설별로 분류됨.
 - (2) 비상 폐쇄 중 병원 폐쇄 횟수 및 폐쇄 사유(예: 직원 부상에 대한 진료소 방문, 시설 이동 금지) 총계 및 시설별 분류
 - (3) 이전에 예정된 약속을 놓친 횟수와 긴급 폐쇄로 인해 다시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이전 일정의 총 횟수를 시설 및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합니다.
 - (4) 비상 폐쇄로 인해 놓쳤거나 지연된 예정되지 않은 CHA 서비스(상처 치료 등)의 총 수를 시설 및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합니다.
 - (5) 총 누락된 필수 임상 라운드 수 및 영향을 받는 시설 및 제한적 주택 단위별로 세분화됨.
 - (6) 병가를 요청했지만 요청 시 병가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총 수 및 시설별로 분류됨.
 - (7) 긴급 폐쇄로 인해 투약 서비스를 놓쳤거나 지연된 환자의 총 수 및 시설별로 세분화
 - (8) 총 6시간이 넘는 예정되지 않은 연속 비상 폐쇄가 있는 주택 지역에서 실시한 라운드 수이며 시설별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 (9) 비상 폐쇄 및 건강 및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와 관련하여 CHA 또는 위원회가 판단하는 기타 정보.
- (n) 위원회와 CHA는 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40 RCNY § 6-06 (m)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의 보고 템플릿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
- (o) 부서는 최소한 분기별로 부서에서 추적한 모든 비상 잠금 및 잠금 확장 사고 수준 데이터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회와 부서는 이사회 승인을 위해 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보고 템플릿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하위 챕터 D: 징벌적 분리 사용 금지

§ 6-07 정책.*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6-07: 징벌적 분리 사용 금지 (a) 40 RCNY § 6-03(b)(12)에 정의된 모든 형태의 징벌적 분리 사용은 기존 및 미래의 모든 DOC 시설에서 금지됩니다. (b) 부서에서 징벌적 분리를 제거하면 DOC 시설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형태의 제한적 주택은 40 RCNY § 6-08 ~ § 6-26에 따라 RMAS 주택이 될 것입니다.	2021년 11월 1일 2021년 11월 1일

(a) PSEG 또는 독방 감금으로도 알려진 징벌적 분리는 구금된 사람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기존의 정신 질환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과 젊은 성인에게 더 심해집니다. 자해 및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자해의 위험은 독방 감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독방 감금의 특징인 사회적 박탈과 강제된 게으름은 이러한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며 사회 통합 및 긍정적인 행동 변화의 목표와 상반됩니다.

(b)* 2021년 11월 1일까지 40 RCNY § 6-03 (b)(12)에 정의된 모든 형태의 징벌적 분리 사용이 모든 기존 및 미래 DOC 시설에서 금지됩니다.

* 편집자 주: 이 섹션을 제정한 규칙의 섹션 10에 따라 이 하위 섹션 (c)는 2021년 11월 1일에 시행됩니다.

(c)* 부서에서 징벌적 분리를 철폐하고 2021년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제한적 주택은 40 RCNY § 6-08 ~ § 6-26 에 따라 RMAS 주택입니다.

* 편집자 주: 이 섹션을 제정한 규칙의 섹션 10에 따라 이 하위 섹션 (c)는 2021년 11월 1일에 시행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하위 챕터 E: 위험 관리 및 책임 시스템(RMAS)

§ 6-08 목적.

(a) RMAS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구금된 다른 사람과 직원의 안전과 보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최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대응으로 구금된 사람을 일반 대중과 분리합니다.
- (2) 신속하고 확실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비행에 대해 수감된 개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 (3) 긍정적인 인센티브, 사례 관리 서비스, 개별 행동 지원 계획 및 개별화된 증거 기반 프로그래밍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 및 일반 인구로의 복귀를 촉진합니다.
- (4) 구금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09 제외.

(a) 다음 범주의 구금자는 RMAS에서 제외됩니다.

- (1) 심각한 정신 질환에 해당하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
- (2)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 (3) 임신한 사람, 임신 결과로부터 8주 이내의 사람, 부서 보육 프로그램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

(b) CHA는 구금된 사람이 40 RCNY § 6-09 (a)(1)부터 (3) 에 있는 위의 배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지 결정합니다 .

(c) CHA는 40 RCNY § 6-09 (a)(1) 의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RMAS에 배치된 사람을 전문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주택으로 이송해야 하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3)을 통해 또는 주택이 의학적으로 금기이기 때문입니다.

(d) 40 RCNY § 6-09 (a)(1)부터 (3)에 따라 건강 상태로 인한 위반 시 RMAS 레벨 1 또는 레벨 2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RMAS 레벨 1 또는 레벨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2 건강 상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나중에 동일한 위반에 대해.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10 배치 기준.*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6-10: 배치 기준 서면 패널티 그리드	2021년 10월 1일까지

(a) 40 RCNY § 6-04에 명시된 사전 청문회 구금을 제외하고 , 부서는 지난 삼십(30)일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발견된 후에만 사람을 RMAS 레벨 1로 구금할 수 있습니다. 1급 폭력 범죄.

(b) 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람을 RMAS 레벨 2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그 사람은 방금 레벨 1을 종료했습니다. 또는

- (2) 지난 삼십(30)일 이내에 그 사람이 1급 비폭력 범죄 또는 2급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 (c) 징계 청문회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형량은 위반 혐의에 비례해야 합니다.
- (d) 규칙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서는 위원회에 서면 패널티 그리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1) RMAS 레벨 1에 배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각 등급 I 폭력 범죄를 설명합니다.
 - (2) RMAS 레벨 2에 배치할 자격이 있는 1등급 비폭력 범죄 및 2등급 범죄에 대해 설명합니다.
 - (3) 각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
- (e) 부서는 패널티 그리드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11 사례 관리.

- (a) 부서는 구금자가 RMAS에 배치되면 구금된 각 사람에게 사례 관리자를 할당해야 합니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당된 케이스 관리자는 RMAS에 머무는 동안 RRU로 내려갈 때 해당 개인의 케이스 관리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b) 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합을 가진 사례 관리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1) 바람직하게는 인적 서비스 또는 보건 분야에서, 그리고/또는 바람직하게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관련된 개인에게 사건 관리, 상담 또는 지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 및/또는
 - (2) 교육, 훈련 및/또는 현장 작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바람직하게는 교정 환경에서):
 - (i) 인간의 행동과 성과;
 - (ii) 능력, 성격, 관심, 학습 및 동기의 개인차;
 - (iii) 행동 장애의 평가 및 치료; 그리고
 - (iv) 그룹 행동과 역학, 사회적 경향 및 영향; 및/또는
 - (3)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교정 환경에서 개인과 공감적으로 참여하고, 치료 또는 행동 지원 계획을 개발 및 모니터링하는 데 협력하고, 프로그램 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보여줍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12 개별 행동 지원 계획.

- (a) 부서는 RMAS에 배치된 각 구금자에 대한 개별 행동 지원 계획(IBSP)을 서면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 (1) 계획은 증거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알려지고 일반 인구의 주택으로의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RMAS에 있는 동안 해당 개인을 위한 특정 서비스 및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명해야 합니다.
 - (2) 계획의 목표는 개인의 연령, 문해력, 교육 수준 및 프로그램 완료 능력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 (3) 계획은 40 RCNY § 6-14 에 따라 요구되는 정기 검토에 근접한 행동을 반영하여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
 - (4)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i)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에 가담하게 된 원인에 대한 자세한 평가
 - (ii)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여부;
 - (iii) 그 사람의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이유를 다루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 및/또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 (iv) 부서가 그 사람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 직원을 배치할지 여부; 그리고
 - (v) 해당 부서가 가족 구성원, 형사 변호인단, 지역사회 자원을 참여시켜 개인의 IBSP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여부.
 - (b) RMAS에 사람을 배치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례 관리자는 해당 사람과 함께 IBSP를 검토해야 합니다. 40 RCNY § 6-14 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정기 검토 에서 부서는 해당 개인의 IBSP를 검토 및 업데이트해야 하며 검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c) 부서는 구금자에 대한 최초 및 후속 정기 검토 날짜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IBSP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 (d) 구금된 사람이 RMAS에 있는 동안 1등급 위반을 범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1) 부서는 그 사람의 IBSP를 검토하고 해당 사람이 더 이상의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에 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에서 채택할 전략을 포함하도록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부서는 RMAS에 있는 동안 1등급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이 검토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2) 부서장은 그 사람의 업데이트된 IBSP를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장은 계획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승인 또는 비승인해야 합니다.
 - (3)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업데이트된 모든 IBSP는 부서장의 승인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CHS, 이사회 및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전송됩니다.
 - (4) IBSP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업데이트된 후, 그 사람의 사례 관리자는 업데이트된 IBSP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계획을 추가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일주일에 최소 5일 그 사람과 만나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업데이트 후 이십사(24) 시간 이내에 부서는 영향을 받는 사람과 IBSP를 공유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13 진행.

- (a) 시설 책임자와 부서장이 각각 40 RCNY § 6-15 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제한된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레벨 1의 모든 사람은 십오(15)일 후에 레벨 2로 진행해야 합니다 .
 - (b) RMAS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시설 책임자와 부서장이 각각 제한적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총 30일 동안 RMAS에 있었던 후 회복 재활 단위(RRU)로 내려가야 합니다. 40 RCNY § 6-15 에 따른 레벨 2 .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14 개별 행동 지원 계획의 정기 검토.

- (a) 부서는 최소 15일마다 RMAS에 수감된 구금자의 개별 행동 지원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 (b) 부서는 정기 검토 최소 24시간 전에 구금자에게 다가오는 정기 검토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는 검토를 위해 서면 진술을 제출할 권리와 검토에 참여할 권리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서는 그러한 통지를 읽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서면 진술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c) 개인의 개별 행동 지원 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는 부서 프로그램 직원과 해당 개인의 사례 관리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학문 팀이 수행하고 다음을 고려합니다.
- (1) 특권에 대한 각 개인 제한의 지속적인 적절성과 특권에 대한 그러한 개별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2) RMAS 배치가 시작된 이후 개인의 후속 행동 및 태도에 관한 정보;
 - (3) 심의를 위해 제출된 사람의 서면 진술 또는 정기 검토에서 한 사람의 구두 진술;
 - (4) 개인이 추가 재활 목표를 달성하고 개인 제한 해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착수할 수 있는 모든 행동 또는 행동 변화; 그리고
 - (5) 현재 그 사람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래밍 및 치료 옵션이 긍정적인 행동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이 개별 행동 지원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데 더 성공적일 수 있는 다른 사용 가능한 프로그래밍 및 치료 옵션 .
- (d) 개별 프로그램 및 치료 옵션에 대한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 다학문 팀의 정기 검토에서 도달한 결론은 서면 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사본은 검토 후 1영업일 이내에 구금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15 확장.*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6-15: 확장	2021년 11월 1일

- (a) 해당 부서는 40 RCNY § 6-13 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RMAS 레벨 1 또는 레벨 2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 그 사람이 그 수준에서 벗어나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지능 또는 정보가 있는 시간. 이러한 연장 결정은 한 번에 칠(7) 일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 (b) 시설 장이 40 RCNY § 6-15 (a) 의 기준에 따라 레벨 1 또는 레벨 2의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시설 장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부서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
- (c) 부서장은 시설 장의 연장 결정을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합니다. 국장의 결정은 모든 증빙자료 및 물적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 후 1영업일 이내에 피구금자, 법정대리인, 위원회 및 CHA에 송부한다.
- (d) 부서가 국장의 결정 및 뒷받침하는 서면 자료를 구금자와 그들의 법적 대리인에게 보낼 때 부서는 보안 문제에 따라 다음 민감한 정보만 보류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1) 기밀 정보 제공자 또는 취약한 증인의 신원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 (2) 결정에 중요하지 않은 개인 식별 정보
 - (3) 보안 유지에 중요한 구금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운영 정보.
- (e) 부서는 40 RCNY § 6-15 (d)(1) ~ (d)(3)에 의거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 또는 법적 대리인의 물질적 또는 물리적 증거를 수정하거나 보류할 수 없습니다. 시설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녹음, 또는 그것이 증인을 식별하기 때문에 부서가 해당 섹션에 설명된 정당화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한.
- (f) 40 RCNY § 6-15 (d)(1)부터 (d)(3)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수정 또는 보류에는 일반적으로 수정되거나 보류된 정보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정당화 일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 그러한 정당화 기록의 사본은 영향을 받는 사람과 그들의 법적 대리인에게 보내는 동시에 교정 위원회에도 보내야 합니다.
- (g) 영향을 받은 사람은 수령의 증거로 국장의 결정 통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통지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통지서를 제공하는 직원은 통지서에 그 사람의 거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 (h) 부서는 단일 청문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러 범죄에 대해 연속적인 체류 기간을 부과하여 RMAS에서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i) 30일 동안 RMAS에 있었던 사람은 부서장이 40 RCNY §에 따라 RMAS에서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부서의 법률 고문에게 행정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15 (다). 부서는 사람들이 이 행정 항소를 위해 법적 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항소 관리에 대한 통지는 30일 이상 RMAS에 보관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j) 40 RCNY § 6-15 (i)에 따라 행정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구금된 사람들은 항소를 제기하기로 한 부서장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삼(3)일이 소요되며, 부서의 법률 고문은 항소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16 필수 셀 외부 시간.

RMAS에 수감되어 있는 모든 구금자는 하루에 다음과 같은 외출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 (a) 레벨 1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 10시간의 외출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 (b) 레벨 2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 12시간의 감방 밖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17 기타 조건.

- (a) 보안 직원은 RMAS에 수용된 모든 사람이 감방에 갇힌 경우 15분마다 육안 관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찰 동안 보안 직원은 생명의 징후를 찾고 확인해야 합니다.
- (b) 각 투어가 시작될 때 RMAS 단위의 보안 직원은 40 RCNY § 6-21 (a)에 설명된 대로 해당 단위의 어떤 사람이 심각한 의학적 상태인지 확인했음을 주택 지역 일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c) 부서는 RMAS 레벨 1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시각적 및 청각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소한 한 명의 다른 구금자와 동시에 잠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잠금 설정은 개인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쉽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d) 부서는 RMAS 레벨 2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개인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소 3명의 다른 구금된 사람들과 동시에 잠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잠금 설정은 개인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쉽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4명 미만이 RMAS 레벨 2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부서는 대신 RMAS 레벨 2에 구금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시에 최소한 한 명을 가둘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쉽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양육권을 갖습니다.

(e) 많은 부서는 RMAS에 수감된 사람에 대해 일반 인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과 다른 개별 제한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 제한이 그 사람이 제기하는 특정 안전 및 보안 위협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f) 부서가 RMAS에 수감되어 있는 구금자의 접촉 방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범위 내에서 40 RCNY § 6-24 (d)에서 요구하는 대로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하며, 이는 기준을 설명해야 합니다. 40 RCNY § 1-09 (h)에 수감된 사람과 부서에서 접촉을 제한하고자 하는 개별 방문자 모두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g) 법률 도서관 서비스는 법률 도서관 대신 RMAS 레벨 1 및 레벨 2 단위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1) 각 레벨 1 및 레벨 2 단위의 사람들은 전자 법률 연구 및 타이핑 장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2) 매주 최소 5회 RMAS 단위 2개마다 1명의 도서관 코디네이터가 배치됩니다. 그리고
- (3) 법률 도서관 코디네이터는 사용 가능한 법률 연구 도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법률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구금자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 (h) 부서가 RMAS 레크리에이션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야외 레크리에이션 우리나라 빈 방을 제공하는 한, 부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감방에 딥 바, 하이 바 또는 풀업 바와 같은 운동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i) 모든 RMAS 장치는 무더위 기간 동안 에어컨을 가동해야 합니다.
- (j) RMAS에서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셀은 자연광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18 인력 충원.*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6-18: 인력 충원	
(a) (제한적 주택 인력에 대한 반기 보고서)	2022년 5월 1일 이후 6개월마다
(b) (인력 충원 계획)	2021년 10월 1일

- (a) 고정 포스트. 부서는 각 순회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안정적인 장교를 RMAS 부대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서는 RMAS 부서로 들어오고 나가는 보안 직원에 대한 정확하고 균일한 데이터와 이러한 부서에 배치되고 근무하는 보안 직원의 수년간의 경험과 교육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정보를 월별로 분류하여 이 정보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b) 인력 충원 계획. 부서는 RMAS를 위해 개발된 부서의 인력 배치 계획을 이사회에 제공하고 그러한 계획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19 교육.*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6-19: 교육	
(c) (심판관 및 선고 및 배치 결정에 관련된 직원 교육)	2021년 10월 1일
(d) (이사회에 대한 정보: 교육)	

- (a) RMAS 부대에 배치된 보안 직원은 이러한 부대와 이 부대에 수용된 구금자의 고유한 특성과 운영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훈련에는 정신 질환 및 고통에 대한 인식 및 이해, 효과적인 의사 소통 기술, 갈등 완화 기술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b) 젊은 성인을 수용하는 RMAS 단위에 배치된 보안 직원은 위기 개입, 갈등 해결 및 외상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젊은 성인 인구를 관리하고 이해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c) 부서는 선고 및 배치 결정을 안내하기 위해 절차 및 회복적 사법 원칙 및 서면 정책에 대한 교육을 RMAS 배치 결정에 관여하는 심리 심판관 및 기타 직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d) 부서는 최소한 연간 기준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각 유형의 교육 기간, 교육 일정 및 커리큘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공될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20 프로그래밍.*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

§ 6-20: 프로그래밍 (j) (분기별 공개 보고서)	2022년 2월 1일
--	-------------

(a) 부서는 RMAS에 있는 사람들과 RMAS에서 RRU로 내려오는 사람들(40 RCNY § 6-27 에 명시된 대로)에게 셀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프로그래밍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연구 증거에 의해 알려지고 연령에 적합해야 하며 각 개인의 개별 행동 지원 계획에 맞춰져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또한 재활을 촉진하고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며 게으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RMAS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감방 안팎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b) 부서는 RMAS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일일 레크리에이션 1시간 외에 최소 5시간의 일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식사, 샤워 및 병가는 5시간 일일 프로그래밍 요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 부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래밍은 부서 외부의 단체 또는 개인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d) RMAS 레벨 1에서 부서는 세포에 인접하지 않은 별도의 공유 공간에서 치료 프로그래밍 직원이 이끄는 1일 최소 1시간의 대면 치료 프로그래밍을 각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 RMAS 레벨 2에서 부서는 정기적인 폐쇄에 사용되지 않는 별도의 공유 공간에서 치료 프로그래밍 직원이 이끄는 1일 최소 2시간의 대면 치료 프로그래밍을 각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f) 대면 치료 프로그램은 참여하지 않는 직원 및 구금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물리적 공간에서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g) RMAS에 수감된 청년의 경우, 5시간의 일일 프로그램에는 교육부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학교 시간에 제공하는 활동 및/또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NY 교육법 3202(7) 및 시행 주 규정에 따라 뉴욕시 교육청("DOE")이 제공하거나 이를 통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RMAS의 젊은 성인의 경우 교육부는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10개월 학년도(또는 학생의 특수 교육 계획에 명시된 경우 연장 학년도) 동안 DOE의 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각 수업일에 DOE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단, 청년 성인이 원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참석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입증합니다.

(h) 부서는 RMA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RMAS에서 RRU로 물려난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부서는 각 RMAS 및 RRU 단위에서 정확한 최신 프로그래밍 일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i) 부서는 제공된 각 프로그램 세션에 대한 각 개인의 참여와 RMAS 프로그램 참여 거부 및 그 이유를 날짜별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j) 부서는 RMAS 수준 또는 RRU 상태에 따라 성인 및 청년을 위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RMAS에서 RRU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RMAS 프로그래밍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분기별 공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월별 분류:

- (1)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이름, 설명 및 유형과 제공되는 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원;
- (2) 제공되는 각 프로그램의 세션 수;
- (3) 각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어떻게 제공되었는지(예: 태블릿으로 셀 내 또는 거실, 직원이 이끄는 별도의 프로그래밍 공간에서 셀 외부 등);
- (4) 제공되는 각 프로그램이 개인 또는 단체인지 여부;
- (5) 보고 기간 동안 세션당 평균 참가자 수, RMAS 전체의 고유한 개인 수 및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유한 개인 수
- (6) 보고 기간 동안 RMAS의 개인이 하루에 받은 프로그래밍 시간(최소, 최대, 평균, 중앙값)
- (7) 보고 기간 동안 RMAS의 개인이 셀에 인접하지 않은 별도의 프로그래밍 공간에서 하루에 받은 프로그래밍 시간(최소, 최대, 평균, 중앙값)
- (8) 부서 또는 위원회가 RMAS의 프로그래밍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정보.
- (k) 부서는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개별적으로 식별된 데이터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l) 위원회와 부서는 40 RCNY § 6-20 (j)에서 요구하는 공개 보고서를 위한 보고 템플릿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며, 이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21 의료 서비스 이용.*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6-21 의료 서비스 이용 (f) CHS 월간 공개 보고서	2022년 1월 1일부터

(a) 섭취 시 및 후속 임상 만남에서 CHA는 CHA가 정의한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가진 개인을 식별해야 합니다. 특정 진단을 공개하지 않고 CHA는 DOC에 보관된 모든 개인의 현재 목록을 유지하고 해당 목록을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부서는 RMAS 부서의 직원이 CHA에 의해 심각한 의학적 상태가 있는 것으로 식별된 부서의 모든 사람들을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b) CHA는 의료 및 정신 건강을 평가하기 위해 RMAS에 구금된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임상 라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라운드는 서면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c) 부서는 구금된 사람이 RMAS에 배치될 때마다 CHA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d) 임상 치료는 세포 측에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부서는 RMAS에 배치된 모든 사람이 참석하고자 하는 모든 예정된 약속을 위해 시설 클리닉으로 데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부서는 클리닉 방문을 강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 CHA가 사람을 RMAS에서 대체 주택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할 때마다 CHA는 결정과 관련된 상황(예: 의료 문제, 정신 건강 문제, 장애)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f) CHA는 위원회에 매월 공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1) 보고 기간 동안 CHA가 수신한 RMAS 배치 통지의 총 수 및 제한적 주택 및 시설 유형별로 세분화됨.
- (2) 보고 기간 동안 CHA가 받은 단계적 축소 격리에 대한 전체 통지 수 및 시설별로 분류됨.
- (3) 보고 기간 동안 RMAS에서 대체 주택으로의 이전에 대한 CHA 결정의 총계이며 RMAS 수준 및 시설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 (4) 보고 기간 동안 RMAS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유형 및 결과별 예정된 서비스의 수 및 백분율(RMAS 수준 및 시설별로 세분화) 그리고
- (5) CHA 또는 위원회가 RMAS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 (g) CHA는 40 RCNY § 6-21 (f)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와 CHA 또는 위원회가 RMAS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h) 위원회와 CHA는 위원회 의 승인에 따라 40 RCNY § 6-21 (f)에서 요구하는 공개 보고서용 보고 템플릿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22 벌금.

부서는 모든 유죄 위반에 대해 금전적 벌금을 자동으로 할당하지 않습니다. 부서는 재산 파괴에 대한 배상 옵션으로 재정적 벌금만 포함해야 합니다. 벌금 부과는 개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23 징계 시스템 계획.*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6-23: 징계 시스템 계획	2021년 10월 1일

- (a) 발효일로부터 삼(3) 개월 이내에 부서는 징계 절차에 대한 서면 계획("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등급 III 위반("위반") 및
- (2) 40 RCNY § 6-09 의 제외 대상자 .
- (b) 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 RMAS 배치 또는 개인의 움직임이나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제한에 의존하지 않고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 그러한 메커니즘은 예를 들어 긍정적인 행동 인센티브 및 특권, 문제가 있는 행동을 다루기 위한 표적 프로그래밍; 교도소 내 대인 갈등에 대한 갈등 해결 접근법;
- (2) 행동에 따라 특권을 제한하거나 제공하는 기준(예: commissary);
- (3) 부서 직원이 위반 사항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프로세스;
- (4) 행동 규칙, 규칙 위반에 대한 부서의 대응 및 적법 절차 절차를 구금된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접촉하는 제복을 입지 않은 직원을 포함한 모든 부서 직원에게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계획 보관.
- (5) 징계 절차 및 절차에 대한 교복 및 교복을 입지 않은 직원을 위한 교육 과정.
- (6) 부서는 구금된 사람들이 그에 따른 권리를 포함하여 징계 절차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구금자가 영어가 아니거나 영어가 능숙하지 않거나, 문맹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귀머거리 또는 난청, 시각 장애인 또는 저신력자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부서에서 따라야 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시각 장애가 있거나 지적, 정신 장애 또는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 (7) 계획 개발에 부서 직원을 참여시키는 프로세스.
- (8) RMAS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한 잠재적인 주택 옵션.
- (c)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계획을 검토한 후 위원회와 부서는 부서의 징계 시스템에 대한 공개 보고 템플릿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템플릿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24 적법 절차 및 절차적 정의.*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6-24 적법 절차 및 절차적 정의 (c)(6) (위반 통지서 서명 거부 비디오 녹화) (d)(5) (청문회 참석 거부 녹음) (i)(1) 적법 절차 요구 사항 및 문서를 추적하는 시스템 (i)(2) 반기 공개 보고서	2021년 11월 1일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이후 6개월마다

- (a) 목적.
- (1) 이 섹션의 다음 최소 기준은 구금된 사람들이 적법 절차 및 절차적 정의 원칙에 따라 RMAS에 배치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은 부서 규칙 위반으로 기소된 구금자에게 적용되며 이러한 규칙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RMAS 레벨 1 또는 RMAS 레벨 2에 직접 배치될 수 있습니다.
- (b) 조사.

(1) 부서는 구금된 사람의 부서 규칙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때 신속하고 철저하며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2) 해당 행위를 보고, 가담 또는 목격한 부서 직원 또는 대위 이하의 부서 직원은 조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문제의 규칙 위반이 후속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부서는 부서의 조사가 형사 소송 절차에 따르지 않는 동안 인터뷰 대상자에게 해당 개인이 한 진술이 개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어지는 형사재판. 또한 그 사람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이 그 사람에 대해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4) 모든 조사는 물리적, 증언적, 문서적 증거뿐만 아니라 조사 사실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5) 조사는 부서가 사건을 통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6) 부서는 구금된 사람이 기소된 위반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구금된 사람에 대한 기소 판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c) *위반 통지.*

(1) 40 RCNY § 6-24 (d) 에 제공된 징계 청문회 전에 구금자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자세히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는 읽기 쉽고 상세하며 구체적이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i) 규칙 위반이 부과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

(ii) 위반 혐의를 야기한 개인의 행동 및 행동에 대한 설명;

(2) 부서는 통지를 읽거나 이해할 수 없는 구금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부서는 사람을 심리 전 구금할 때마다 24시간 이내에 위반 통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참작 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이 기간 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서는 가능한 한 빨리 통지를 전달하고 지연에 대한 각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4) 부서에서 위반자로 기소된 사람을 심리 전 구금하지 않은 경우 부서는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늦어도 2영업일 이전에 위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청문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서가 문서를 통해 부서에서 통제할 수 없는 참작 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적시 서비스를 방해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해고를 정당화하는 적법 절차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5) DOC 직원은 사건에 가담한 사람을 제외하고 위반 통지 책임자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령 증명으로 통지서에 서명하고 심리에 법정 대리인을 원하는지 여부를 구두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통지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통지서를 송달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직원이 통지서에 그 사람의 거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통지서를 송달하는 직원은 통지서에 자신의 이름과 방패 번호를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6) 위반 통지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법적 대리인을 포기하는 것은 비디오로 녹화되어야 합니다. 부서에서 누군가가 서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서는 거부하는 비디오를 녹화하여 청문회 기록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고를 정당화하는 적법 절차 위반이 됩니다.

(d) *징계 청문회.*

(1) *청문회 심사관.* 위반 청문회는 대위 이상의 DOC 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심리 심판관은 처음에 그 사람을 판결하도록 추천한 DOC 직원이 아니거나 구금자의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청문회 시간.* 피고인에 대한 위반 통지가 송달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부서는 심판 청문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삼(3)일 이내에 청문회를 시작해야 하는 부서의 의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상충되는 법원 출두를 위해 시설에 부재 중인 경우입니다. 입원; 중요한 가족 행사; 긴급 상황; 진료 예약; 또는 변호사 방문. 그러한 경우, 부서는 그 사람이 시설에 돌아온 직후 청문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3) *적법 절차 위반.* 기소된 사람을 심리에 호출하기 전에 심리 심판관은 위반 통지를 검토하여 위반 기각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 절차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녹음.* 모든 징계 청문회는 음성으로 녹음되어야 합니다.

(5) *참석 또는 참여 거부.* 구금된 사람들이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비디오 또는 오디오로 녹화되어야 하며 청문회 기록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6) *피의자의 권리.* 심리 심판관은 심리에서 다음 권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조언해야 하며, 이는 위반 통지서에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i) 법적 대리인에 대한 권리: RMAS 레벨 1 또는 2에 배치될 수 있는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징계 청문회에서 법적 대리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리인 없이 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부서는 법정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심리를 연기할 권리가 있음을 해당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ii) 출두할 권리: 피고인은 서면으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지 않는 한 직접 출두할 권리가 있습니다.

(iii) 진술할 권리: 피고인은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의 위반이 후속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심리 심판관은 해당 절차가 형사 소송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진술이 후속 형사 소송에서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해당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심판관은 또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iv)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호출할 권리: 피고인은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호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v) 부서의 증거를 검토할 권리:

(A) 기소된 사람과 그들의 법적 대리인은 위반 청문회 전에 부서가 신뢰하는 증거를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문서화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공개가 특정 개인에게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방부가 결정하는 제한된 경우에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서는 특정 보안 위험으로 인해 정보가 수정되고 있음을 해당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부서는 수정된 증거와 수정되지 않은 증거 모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B) 부서가 청문회에서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부서는 청문회에 참석한 개인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청문회를 연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그들이 자신의 변호를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vi) 통역사에 대한 권리. 부서는 기소된 모든 사람이 영어로 청문회를 진행하기에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영어로 의사 소통할 수 없는 경우 모국어로 통역사를 요청할 자격이 있음을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vii) 항소에 대한 권리. 징계 청문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40 RCNY § 6-24 (h)에 규정된 불리한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7) *증거 부담.* 부서는 모든 징계 절차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RMAS 배치를 정당화하는 증거가 우세하여 사람의 유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8) *청문회 시간 프레임.*

(i) 청문회가 시작되면 청문회 심판관은 청문회를 한 세션으로 끝내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ii) 피고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증인을 찾고, 통역사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인을 준비하기 위해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연기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iii) 청문회 심판관은 청문회 당시 이용할 수 없는 추가 증인을 심문하거나, 추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피고인을 정신 건강 담당 직원에게 회부하거나, 문제가 제기된 경우 추가 조사 또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

(iv) 연기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9) *법적 대리인.* RMAS 레벨 1 또는 2의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징계 청문회 및 관련 항소에서 법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 결정.

- (1)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경우, 징계 청문회 종료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피고인과 법정 대리인에게 결정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 (2) 결정은 서면으로 읽고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i) 위반의 각 혐의에 대해 "유죄", "무죄" 또는 "기각"의 결과
 - (ii) 청문회 심판관이 그러한 발견에 도달하는 데 사용한 증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 (iii) 부과된 제재(있는 경우)
- (3) 각 증인의 증언에 대한 요약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증언의 인정 여부를 포함합니다. 증인의 증언에 문서화된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특정 개인에게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서가 결정하는 경우 구금자와 그들의 대리인에게 제공된 결정 사본에 대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서는 특정 보안상의 위험으로 인해 해당 정보를 수정함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부서는 수정된 결정과 수정되지 않은 결정 모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4) 징계 청문회 또는 항소 후 개인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명된 징계 청문회에 따라 생성된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의 프로그램 액세스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또는 39 RCNY § 1-03 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수형자에 대한 "좋은 시간" 크레딧을 부여하거나 보류 합니다.
- (f) 심리 심판관은 유죄로 판명된 위반에 공정하고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해야 합니다.
- (g) 구금된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삼십(30)일 이내에 RMAS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부서에서 이 삼십(30)일 기간 내에 사람을 RMAS에 배치하지 않으면 해당 부서는 나중에 해당 위반에 대해 해당 사람을 RMAS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h) 항소.

- (1) 징계 청문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항소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 항소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2) 구금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며, 부서는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3) RMAS 레벨 1 및 2에 배치될 수 있는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항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법적 대리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4) 적법 절차 위반, 유죄 판결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청문회 심판관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5) 항소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며 항소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을 읽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6) 이의 제기는 대위 이상의 부서 직원이 결정합니다. 항소는 다음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 (i)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건을 보고, 목격 또는 조사한 직원
 - (ii) 제한적 주택에 대한 초기 배치를 추천한 직원;
 - (iii) 개인에 대한 개별 제한을 권고한 직원;
 - (iv) 징계 청문회에서 청문회 심판관을 주재한 직원.
- (i) 징계 적법 절차 보고.
 - (1)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서는 40 RCNY § 6-24 의 적법 절차 요구 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균일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문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중앙에 저장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전자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2) 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월별로 분류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성인 및 청년 성인 인구에 대한 징계 적법 절차에 관한 공개 반기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i) 최고 위반 혐의의 등급(예: 폭력 I 등급, 비폭력 등급 I, II 등급, III 등급)에 따른 위반 통지의 수 및 백분율을 포함한 위반 통지(피고인의 서명 또는 거부 여부) 위반 통지에 서명하고 거부가 기록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기소된 사람이 그 사람의 위반 통지를 읽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요청했는지 여부와 그 사람이 그러한 지원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ii) 최고 위반 혐의(즉, 폭력 I 등급, 비폭력 등급 I, II 등급, III 등급)가 제공한 위반 횟수 및 백분율을 포함한 청문회 및 청문회 결정 청문회에서의 법정 대리인 및 청문회 결과(유죄, 무죄, 기각, 예: 적법 절차 위반).
 - (iii) 최고 위반 혐의(즉, 폭력 1등급, 1등급 비폭력, 2등급, 3등급)에 따른 청문회 횟수 및 백분율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는지 여부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 거절이 비디오로 문서화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법정 대리인 및/또는 통역사를 요청했는지 여부와 그러한 요청이 승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iv) 최고 위반 혐의(즉, 폭력 1등급, 비폭력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른 유죄 판결의 수 및 백분율을 포함한 징계 제재. RMAS 및 배치되지 않은 사유(예: 구금에서 석방, 건강상의 금기로 인해 제외 또는 판결 후 30일 이내에 배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v) 최고 위반 혐의(즉, 폭력 1등급, 비폭력 1등급, 2등급, 3등급)가 항소한 유죄 판결의 수와 백분율을 포함한 항소, 항소를 위한 법적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 그리고 항소 결과에 따라(예: 결정이 유지됨, 결정이 번복됨, 적법 절차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기소를 다시 취하기 위해 환송됨, 구금 해제로 인해 기각됨).
 - (vi) 부서 또는 위원회가 RMAS 적법 절차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정보.
- (3) 부서는 이 섹션에서 요구되는 공개 보고서와 모든 적법 절차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개별적으로 식별된 데이터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4) 위원회와 부서는 40 RCNY § 6-24 (i)(2)에서 요구하는 공개 보고서를 위한 보고 템플릿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며, 이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25 RMAS 데이터 수집 및 검토.*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6-25: RMAS 데이터 수집 및 검토	
(b) (RMAS 배치 및 RMAS 문서를 추적하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시스템)	
(c) (월간 공개 데이터 보고서)	2022년 1월 1일
(d) (월간 공개 보고서)	

- (a) 부서는 모든 RMAS 단위의 유형 및 특정 위치 목록을 필요에 따라 유지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그러한 모든 단위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이 목록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사회에 제공하고 새로운 RMAS 단위가 열리거나 닫히거나 레벨이 변경될 때 서면으로 이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 (b) 부서는 RMAS 및 40 RCNY [Subchapter E](#) 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균일한 데이터를 수집 하고 위원회에서 전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 문서를 중앙에서 저장 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유지 및 개발해야 합니다. .
- (c) 부서는 성인 및 청년 인구에 대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RMAS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월간 공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1) 상위 범죄(규칙 위반 등급 수준, 규칙 번호, 규칙 설명) 및 형량에 따른 RMAS에 대한 형량;
 - (2) 보고 기간 동안 RMAS의 모든 배치에 대한 적격 사건 또는 위반에서 배치까지 그리고 판결에서 배치까지의 평균, 중앙값, 최소 및 최대 시간.
 - (3) 보고 기간 동안 배치된 총 배치 수 및 고유한 사람 수; 배치 당시 연령, 인종, 민족, 성별 및 "M" 지정 상태, 보안 위험 그룹, 레드 ID 및 강화된 구속 상태에 따라 배치된 사람들의 수 및 비율 평균 일일 인구; 보고 기간 말일 현재 RMAS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및 청년의 수
 - (4) 보고 기간 동안 40 RCNY § 6-15 (a)에 따라 RMAS 레벨 1 또는 레벨 2에 있는 사람의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횟수는 연장이 승인되었는지 여부와 항소 여부, 연장 및 항소가 승인된 사람, 전체 및 접수된 연장 및 항소 횟수,
 - (5) 보고 기간 동안 RMAS를 이탈한 사람들의 수와 현재 투옥 중 RMAS에 있는 누적 및 연속 일수(즉, 최소, 최대, 평균, 중앙값 일수) 및 각 퇴장 날짜에 대한 퇴장 사유 퇴원 (예: 복역 기간, 구금 해제, 의료 이송, 정신 건강 이송 등) 및 퇴장 전과 퇴실 시 그 사람이 수용되었던 시설, 주택 단위 및 주택 범주;
 - (6) 보고 기간 말일 현재 RMAS에 있는 사람들의 수와 RMAS의 누적 및 연속 일수(즉, 최소, 최대, 평균, 중앙값 일수);
 - (7) 사람들이 검토에 참석했는지 여부 및 개인의 개별 행동 지원 계획에 수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요구되고 수행되는 정기 검토 횟수.
 - (8) 하루에 받은 평균 세포 외 시간 수; 및 일일 레크리에이션 참여의 평균 비율.
 - (9) 일반 인구의 유사한 연령 그룹과 비교하여 수탁자 싸움, बे기/베기, 직원 폭행, 무력 사용에 대한 수탁자 수 및 비율;
 - (10) 각 RMAS 단위에 대한 시설 및 주택 단위 위치, RMAS 수준 및 단위가 청년 또는 성인을 수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11) 부서 또는 위원회가 부서의 RMAS 사용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정보.
- (d) 부서는 감방 밖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월간 공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셀에 인접하지 않은 별도의 프로그래밍 공간 또는 일반 잠금 공간에서 보낸 시간; 법률 도서관에 대한 액세스; 샤워 시설 이용; 레크리에이션 참여; RMAS의 각 개인을 위한 프로그래밍에 참여하는 데 소요된 시간. 보고서에는 RMAS 단위의 늦은 폐쇄 횟수, 기간 및 이유와 의무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및 참여 개선과 관련된 보고서 결과를 다루기 위해 취한 권장 사항 또는 시정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각 유형의 의무 서비스 또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액세스가 일상적인 스트립 검색이 필요한지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 수집은 시설이나 부서에 정기적으로 배정된 직원에 의해 수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 (e) 부서는 매월 40 RCNY §§ 6-25 (c) 및 (d)에서 요구하는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개별적으로 식별된 데이터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지원 문서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RMAS 배치, 검토 및 IBSP 문서.
- (f) 위원회와 부서는 40 RCNY § 6-25 (c) 및 (d)에서 요구하는 공개 보고서를 위한 보고 템플릿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한 템플릿은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0 RCNY § 6-23](#) 에 따라 제출된 부서의 징계 시스템 계획을 제출하고 검토하면 40 RCNY § 6-25 (c) 에 설명된 보고 조항 및 관련 템플릿이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수정됩니다.
- (g) 위원회는 부서에서 제공한 정보 및 RMAS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RMAS 시행 후 18개월 이내에 이사회는 RMAS의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논의는 RMAS의 수용 조건, 수용자의 정신 건강에 대한 영향, RMA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품질 및 효율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다루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26 전환.*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6-26: 전환	
(b) (종합적인 전환 계획)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c) (월간 공개 진행 보고서)	2021년 8월 1일

- (a) 부서는 뉴욕주 교정위원회(SCOC)에 제출하기 전에 RMAS 주택에 대한 건축 렌더링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SCOC 승인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SCOC가 승인한 이러한 유닛에 대한 건축 렌더링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b) 발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서는 징벌적 분리의 철폐 및 RMAS의 시행에 관한 다음 문서 및 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환 계획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1) RMAS를 구현하기 위한 서면 정책 목록;
 - (2) 구금된 여성을 위한 RMAS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 (3) RMAS에서 근무할 유니폼 및 비 유니폼 직원을 위한 인력 배치 계획;
 - (4) RMAS에서 근무할 유니폼 및 비 유니폼 직원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 (5) RMAS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될 프로그래밍 및 그러한 프로그래밍을 제공하는 방법, 장소 및 사람
 - (6) 청년 성인 RMAS 단위를 위한 청년 전용 인력 충원 및 프로그램 계획;
 - (7) RMAS 모델의 성공을 결정하기 위해 제안된 메트릭으로 프로세스 및 결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c) 2021년 8월의 첫 번째 영업일부터 시작하여 RMAS 구현이 완료될 때까지 부서는 다음을 포함하는 이전 달의 공개 진행 보고서를 월 단위로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을 달성하기 위한 부서의 진행 상황:

- (1) PSEG 인구 감소의 진전(즉, PSEG I/중양 징벌적 분리 단위(CPSU), PSEG II, 제한적 주거 단위(RHU));
 - (2) ESH(Enhanced Supervision Housing) 및 Secure를 포함하여 기타 제한적 주택 단위에 거주하는 인구 감소의 진전;
 - (3) 계획이 SCOC에 제출되고 승인된 시기와 예상치 못한 지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새로운 RMAS 주택의 건설, 개방 및 사용;
 - (4) 다음과 같이 개발 단계에 따라 세분화된 RMAS의 운영을 관장하는 부서 정책의 개발:
 - (i) 초안 작성 시작;
 - (ii) DOC가 서명하고 DOC의 공개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iii) DOC 직원 교육에 통합.
 - (5) 다음을 포함한 RMAS에 대한 교육 구현:
 - (i) 교육과정 개발 현황;
 - (ii) 훈련을 받을 예정인 직원의 수는 제복 및 불균일 상태로 분류됩니다.
 - (iii) 훈련을 받은 직원 수, 유니폼 및 비 균일 상태로 분류.
 - (6) RMAS에서 프로그래밍 구현.
 - (7) 40 RCNY [1장](#) 에 요약된 최소 기준의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일반 대중의 레크리에이션, 방문 및 특혜와 같은 서비스 제공 ;
 - (8) [40 RCNY § 6-26](#) (b) 에서 요구하는 계획에 명시된 세부 일정 및 벤치마크에서 벗어난 모든 것 ;
 - (9) RMAS 모델의 징벌적 분리 제거 및 구현을 향한 진행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서 또는 이사회가 판단하는 기타 정보.
-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하위 챕터 F: RMAS에서 퇴출

§ 6-27 회복 재활 장치(RRU).*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6-27: 회복 재활 시설 (f)(3) (월간 공개 보고서) (f)(4) (월간 공개 데이터 보고서)	2022년 1월 1일부터

- (a) **목적.** RRU의 목적은 표준 일반 인구 주택 단위에서 증가된 안전 위험을 제기하는 것으로 확인된 구금자에 대해 강화된 보안, 프로그래밍 및 치료 지원을 통해 부서가 일반 인구 환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RMAS에서 퇴원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b) **사례 관리, 개별 지원 계획 및 정기 검토.**
- (1) RMAS에서 RRU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RMAS에서 할당된 동일한 케이스 관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 (2) RMAS에서 RRU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RMAS에서 그들을 위해 설계된 동일한 개별 행동 지원 계획을 계속 사용해야 하며, 할당된 다학문 팀은 15마다 40 RCNY § 6-14에 명시된 정기적인 검토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15) 계획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하거나 프로그래밍 권장 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일.
- (3) 정기적인 검토 후, 다학문 팀은 누군가가 RRU에서 일반 인구 주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시설 책임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4) RMAS에서 사임한 사람을 RRU 외부로 옮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c) **조건.**
- (1) RRU는 나머지 일반 인구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와 셀 외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2) RRU는 표준 일반 인구 세포 주거 지역(예: 집단 데이룸)과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공유하는 세포 주택 단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 (3) 강화된 안전 및 감독을 촉진하기 위해 RRU는 한 번에 15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 (d) **인력 충원 및 훈련.**
- (1) 부서는 RRU에 가능한 한 많은 고정 임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서는 또한 표준 일반 인구 단위보다 RRU에서 훨씬 더 높은 직원 대 관리인 비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2) RRU에 배정된 보안 직원은 이러한 부대와 이 부대에 수용된 구금자의 고유한 특성과 운영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훈련에는 정신 질환 및 고통에 대한 인식 및 이해, 효과적인 의사 소통 기술, 갈등 완화 기술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3) 젊은 성인을 수용하는 RRU에 배정된 보안 직원은 위기 개입, 갈등 해결 및 외상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젊은 성인 인구를 관리하고 이해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e) **프로그래밍.**
- (1) 부서는 RMAS에서 RRU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매일 1시간의 레크리에이션 외에 매일 최소 6시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식사, 샤워 및 병가는 6시간 일일 프로그래밍 요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40 RCNY § 6-27 (e)(1)에 따라 요구되는 6시간의 일일 프로그램 중 최소 3시간은 회중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치료 또는 프로그램 직원이 인도해야 합니다.
- (f) **데이터 수집 및 검토.**
- (1) 부서는 RMAS에서 물려난 개인을 포함하는 RRU를 포함하여 모든 RRU 단위의 유형 및 특정 위치 목록을 필요에 따라 유지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그러한 모든 단위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이 목록을 최소 월 단위로 이사회에 제공하고 새로운 RRU 단위가 열리거나 닫힐 때 서면으로 이사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 (2) 부서는 위원회에서 전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RRU 및 40 RCNY Subchapter F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균일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문서를 중앙에서 저장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유지 및 개발해야 합니다.
- (3) 부서는 성인 및 청년 인구에 대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RRU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월간 공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i) 각 RRU 유닛의 시설 및 주택 유닛 위치
- (ii) 배치 이유(예: RMAS 퇴출, 기타 치료 이유 등)에 따라 RRU에 배치된 배치 수 및 고유한 사람
- (iii) 평균 일일 인구, 보고 기간 말일 현재 RRU에 거주하는 성인 및 청년 수
- (iv) 보고 기간 동안 운영되는 각 RRU 단위의 평균 구금 직원 대 개인 비율
- (v) 보고 기간 동안 RRU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수와 현재 투옥 기간 동안 RRU에서 누적 및 연속 일수(즉, 최소, 최대, 평균, 중앙값) 및 각 탈출에 대해
- (vi) 보고 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RRU에 있는 사람들의 수와 RRU에 있는 누적 및 연속 일수(즉, 최소, 최대, 평균, 중앙값 일수)
- (vii) 사람들이 검토에 참석했는지 여부와 개인의 개별 행동 지원 계획에 수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요구되고 수행되는 정기 검토 횟수;
- (viii) 부서 또는 위원회가 RMAS에서 물려난 사람들을 위한 부서의 RRU 사용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정보.
- (g) 부서는 40 RCNY § 6-27 (f)(3)에서 요구하는 월간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개별적으로 식별된 데이터와 RRU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지원 문서를 매월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배치, 검토 및 IBSP 문서.
- (h) 위원회와 부서는 40 RCNY § 6-27 (f)(3)에서 요구하는 공개 보고서를 위한 보고 템플릿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Subchapter G: 구속과 견치

§ 6-28 제한.*

* 편집자 주: 2021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1년 7월 9일에 발효된 규칙의 섹션 10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기준, 프로그램, 계획, 보고서 및 양식은 아래 지정된 날짜까지 개발, 승인 및 구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은 이 규칙의 발효일부터 계산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은 규칙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분	구현
§ 6-28: 제한 (m) (반기 공개 보고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이후 6개월마다

(a)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1) 적법한 임무를 수행하고, 체포하고, 저항을 극복하고, 도주를 방지하고, 구금된 사람을 통제하거나, 직원, 구금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의 총체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구속의 사용, 및 기타 부상;

(2) 구금된 사람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의 즉각적인 사용;

(3) 이동, 에스코트 및 운송 목적을 위한 구속의 일상적인 사용.

(b) 제한은 제한되지 않은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처리하는 데 더 적은 형태의 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만 부과됩니다.

(c) 구속 방법은 부과된 위험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 구금자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데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소한의 방해 방법이어야 합니다.

(d) 제한 없는 이동으로 인한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가능한 한 빨리 구속을 제거해야 합니다.

(e) 2021년 11월 1일부터 부서는 모든 시설 주택 단위에서 잠금 기간 동안 구속 데스크를 포함한 구속의 비개인적 사용을 제거해야 합니다. 개별화되지 않은 사용은 폐쇄의 조건으로 또는 제한적 주택 단위로의 이동을 기반으로 한 개인 또는 사람들의 그룹을 구속 데스크 또는 기타 구속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 규칙의 발효일로부터 2021년 11월 1일에 비개인적 구속에 대한 금지가 발효될 때까지, 부서는 개인 또는 사람들이 최근에 실제 또는 बे기 또는 찌르기 시도에 참여했거나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한 경우, 구속 데스크 또는 기타 구속의 사용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 옵션이어야 합니다.

(g) 규칙의 발효일로부터 2021년 11월 1일에 비개인적 구속에 대한 금지가 발효될 때까지 부서는 폐쇄 기간 동안 비개인적 구속에 구금된 사람들의 배치를 7일마다 검토해야 합니다. .

(1) 이러한 정기 검토 최소 24시간 전에 부서는 보류 중인 검토 및 검토를 위해 서면 진술을 제출하고 검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 구금된 사람들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그러한 통지를 읽거나 이해할 수 없는 구금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 폐쇄 기간 동안 개인의 비개별적 구속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검토 후 2일 이내에 해당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면 보고서에 결론을 기록해야 합니다.

(i) 잠금 동안 개인을 개별화되지 않은 구속에 계속 배치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ii) 잠금 중 개별화되지 않은 구속의 형태로 개인의 지속적인 적합성;

(iii) 잠금 동안 개인이 아닌 구속에 배치된 이후 개인의 후속 행동 및 태도에 관한 정보;

(iv) 심의를 위해 제출된 사람의 서면 진술 또는 그 사람의 정기 검토에서 한 사람의 구두 진술;

(v) 잠금 동안 개인을 유지하거나 개인이 구속되지 않은 구속에서 제거하는 데 유리할 수 있는 기타 요소 그리고

(vi) 잠금 동안 개인이 개별화되지 않은 구속 장치에 배치가 계속되는 경우, 재활 목표를 추가로 수행하고 폐쇄 중 개별화되지 않은 구속 해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인이 착수할 수 있는 모든 행동 또는 행동 변화.

(3) 각 정기 검토에서 부서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잠금 동안 개인을 개별화되지 않은 구속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i) 그 사람은 지난 7일 동안 폭력적인 행동에 가담했습니다. 또는

(ii) 그 사람이 덜 제한적인 수준이나 주택 단위에서 폭력에 가담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4) 부서는 개인의 정기 검토 후 24시간 이내에 그 사람이 구속 데스크 또는 기타 형태의 비개인적 구속에서 나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서가 폐쇄 기간 동안 구금된 사람을 구속 데스크 또는 기타 형태의 비개인적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구속의 사용은 그러한 결정 후 48시간 이내에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한 사용이 48시간 이내에 중단되지 않으면 부서는 결정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부서가 그 사람을 구속 데스크 또는 기타 형태의 비개인적 구속 밖으로 옮기지 않은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h) 제한은 다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 처벌 또는 보복으로 적용되는 경우

(2) 머리카락 목에 바르거나 혈액 순환이나 호흡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3) 구금된 사람을 끌어 당기거나 인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4)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5) 감방이 두 명 이상의 사람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한 감방 내부에서 사용되며 구속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i) CHA는 하나 이상의 허용된 제한을 부과할 수 없는 기능적 필요 또는 장애가 있는 구금자에 대해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개인이 구속된 상태로 에스코트되거나 구속된 상태로 운송되거나 기타 구속의 대상이 되기 전에 이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j)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시각장애인은 앞에서만 수갑을 채울 수 있다.

(k) 청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또는 언어 장애 및 손짓으로 의사 소통하는 사람들은 통제된 조건 하에서만 제지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의사 소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l) 4점 및 5점 구속 은 정신 또는 감정 장애로 관찰 또는 치료를 받는 구금자의 신체적 구속을 규정하는 40 RCNY § 2-06 에 의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m) 부서는 부서의 제한적 지위 사용에 대한 반기별 공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월별로 분류된 각 제한 상태(즉, 강화된 구속, Red ID, CMC)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제한적 지위가 추천된 사람의 연령, 인종, 민족, 성별 및 "M" 지정 지위에 따른 제한적 지위 배치 추천 건수 및 비율

- (2) 의학적 또는 정신 건강상의 금기로 인해 그러한 지위에 배치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수와 비율;
- (3) 보고기간 동안 제한적 지위에 놓인 고유 개인의 수 및 보고기간 말일 현재 제한적 지위에 분류된 사람의 수
- (4) 전체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세분화된(즉, 계속 또는 제거된) 정기 검토의 횟수 및 비율;
- (5) 제한적 지위에 대한 항소의 수와 비율(항소 결과에 따라 세분화)
- (6) 부서 또는 위원회가 부서의 제한적 지위 사용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정보.

(n) 위원회와 부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40 RCNY § 6-28 (m)에서 요구하는 공개 보고서용 보고 템플릿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 6-29 송곳니.

- (a) 부서는 수색을 위해서만 시설의 보안 경계 내에서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b) 부서는 감방에서 구금된 사람을 구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송곳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 송곳니는 구금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통제하는 데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d) 송곳니는 RMAS에 주둔할 수 없습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하위 챕터 H: 분산

§ 6-30 차이.

부서 또는 CHA는 40 RCNY § 1-15 에 명시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이 40 RCNY 6장 규칙의 특정 하위 부문 또는 섹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6월 9일 도시 기록 추가, 2021년 7월 9일 발효)

면책 조항: 면책 조항: 이 사이트에 나타나는 강령 및 기타 문서는 시에서 채택한 최신 법률 또는 규칙을 아직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American Legal에 제공되고 이 웹사이트가 생성된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로 인해 특정 텍스트 오류 및 누락이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 및 누락이 수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오류를 발견한 사용자는 NYC.editor@amlegal.com 또는 800-445-5588로 게시자에게 연락하거나 NYCCodeRulesCharter@law로 뉴욕 시 법률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yc.gov.

주최: American Legal Publishing Corporation